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법학석사학위논문

조선 초기 告身 追奪 및
還給에 관한 연구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한국법제사 전공
이 승 현

조선 초기 告身 追奪 및
還給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 궁 식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한국법제사전공
이 승 현

이승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논문초록

조선시대 문무관원에게 품계에 따라 수여한 임명장인 告身은, 追奪·還給 등의 처분을 통해 죄를 지은 관원을 징계하여 자격을 박탈하거나, 사면하여 회복시키는 과정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告身の 유래는 唐代까지 거슬러 살펴 볼 수 있는데, 唐代의 법전인 《唐律疏議》·《唐六典》에서 이미 告身を 거두는 규정이 발견된다. 明代에는 《大明律》〈名例〉의 [文武官犯私罪] 條를 중심으로 私罪에 대해 告身を 差等的으로 거두도록 하였으며, 이 체계는 조선의 《經國大典》의 〈刑典〉[推斷] 條로 이어졌다. 실록에서의 追奪·還給 사례를 분석하면, 告身を 거두는 처분은 본래의 형벌에 대한 附加刑으로서의 성격과 관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강등하는 징계벌·명예형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징계벌의 경우 告身이 거둬진 관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명예형은 특히 死者에 대한 告身 追奪 및 還給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

관원의 범죄 및 非違에 대해 이뤄진 告身 追奪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태종조에는 노비변정도감을 통해 노비 신분 및 소유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奴婢訟事와 관련하여 관원들이 저지른 부정행위 및 誤決을 징벌하기 위해 告身 追奪 등을 포함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었다. 한편 贓汚罪는 백성을 침탈하는 重罪로 무겁게 처벌되었으며, 그 와중에 告身を 贓物의 정도에 따라 거두어 징계하였다. 유교 이념이 주축을 이루었던 조선 사회의 특성상 不孝·不忠과 같은 綱常罪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하면서 告身を 거두었는데, 관원·종친의 濫刑 등으로 인한 살인의 경우에도 유교사회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반영하여 告身を 거두는 선에서 그치기도 하였다. 誣告 역시 告身 追奪의 유형으로 등장한다. 한편 私罪에 국한하여 告身を 거둘 것을 천명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에는 공무상 과실 등의 公罪에 대해서도 告身を 거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는 《大明律》체계가 국초부터 완전히 조선 사회에 확립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정착되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는 告身 追奪 대상이지만 면책되는 예외도 존재하였다. 공신·종친 등의 신분에 있거나, 非違가 사면 시행 이전에 있어 赦宥가 적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告身 追奪을 면하기도 하였다. 한편 告身 追奪의 특수한 사례로는 관원의 남편인 관원의 告身に 종속되어 거둬진 관원 부인의 爵牒, 변방에 근무하여 署經에 필요한 告身を 제때 제출하지 못한 軍士의 告身を 거두는 문제도 살펴볼 수 있다.

告身 還給은 크게 정기적 還給과 사면에 의한 還給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록에서는 告身を 追奪당한 인원의 명단을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례화된 告身 還給 조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부 예외사례에도 불구하고, 告身이 追奪된 관원은 2년 뒤에 敍用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還給 역시 원칙적으로는 그에 준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왕실의 각종 경조사 및 자연재해로 인한 대사면의 일환으로 告身を 대거 還給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비정기적인 告身 還給이 還給 수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실무적 판단에 따라 단기간에 告身を 돌려주기도 하였다.

사면으로 인한 대규모 告身 還給의 빈도와 인원이 國初부터 성종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贓汚·綱常罪와 같은 重罪를 告身 還給의 배제사유로 삼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告身 還給 그 자체에 대한 의문 제기도 이어졌다. 전통적인 災異觀 및 恤刑 개념에 따라 告身 還給 등 죄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했음에도, 그러한 처분이 철저한 법 집행을 가로막아 처벌 효과를 감퇴시킨다는 반론 역시 제기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 告身 還給이 정치적 안정성 및 화합 도모라는 정치적·현실적인 필요성과, 엄정한 법질서 구현이라는 명분론의 지속적인 긴장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

주요어 : 告身, 追奪, 還給, 懲戒, 赦免, 附加刑, 名譽刑

학 번 : 2015-22992

목 차

제1장 序論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2장 告身の 의의와 법적 성격	9
제1절 告身の 의의와 연혁	9
1. 告身の 의의	9
2. 唐·明의 告身 관련 규정	13
3. 조선의 告身 관련 규정	19
제2절 告身の 追奪과 還給의 성격	25
1. 부가형적 성격	25
2. 징계벌적 성격	26
3. 명예형적 성격	30
제3절 告身 追奪과 還給의 절차	36
제3장 告身の 追奪	41
제1절 告身 追奪의 유형	41
1. 노비·토지 관련 범죄	41
2. 贓汚罪	46
3. 綱常罪 및 儒教倫理 違背	49
4. 官員·宗親 등의 殺人	54
5. 誣告	57
6. 직무상 과실·태만·기강해이 등	59
7. 기타	63
제2절 告身 追奪의 예외사례	65
1. 신분에 따른 免責	65
2. 사면 이전 犯罪에 대한 免責	69
제3절 告身 追奪의 특수사례	73
1. 관원 夫人의 爵牒 追奪	73

2. 署經의 未備에 따른 告身 追奪	75
제4절 告身 追奪의 추이와 분석	78
제4장 告身の 還給	83
제1절 告身 還給의 유형	83
1. 정기적 還給과 유효기간 문제	83
2. 사면에 의한 還給	86
1) 王室 一員의 慶弔事	88
2) 자연재해에 따른 민심 수습책	90
3) 정치적 고려에 따른 還給	93
4) 실무적 고려에 따른 還給	95
제2절 告身 還給에 대한 논의	98
1. 告身 還給 배제사유의 변동	98
2. 贓汚·綱常罪에 대한 告身 還給 배제 논의	104
3. 告身 還給의 필요성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異論	107
제3절 告身 還給의 추이와 분석	111
제4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7
부록	123
Abstract	139

표 목 차

【표 1】 世祖朝 告身 追奪 방식의 변화 양상	22
【표 2】 《經國大典》의 告身 관련 특별규정 형성 과정	25
【표 3】 世宗朝 死者 告身 追奪에 대한 실록 기록 비교	32
【표 4】 조선 太祖朝-成宗朝 노비·토지 관련 告身 追奪 기사	44
【표 5】 조선 太祖朝-成宗朝 贓汚罪 관련 告身 追奪 기사	48
【표 6】 조선 太祖朝-成宗朝 綱常罪 및 儒教倫理 관련 告身 追奪 기사	52
【표 7】 조선 太祖朝-成宗朝 殺人 관련 告身 追奪 기사	55
【표 8】 조선 太祖朝-成宗朝 誣告 관련 告身 追奪 기사	58
【표 9】 조선 太祖朝-成宗朝 직무상 과실 등 관련 告身 追奪 기사	62
【표 10】 조선 太祖朝-成宗朝 身分에 따른 告身 追奪 면책 기사	66
【표 11】 조선 太祖朝-成宗朝 赦宥 이전 범행에 대한 告身 追奪 면책 기사 ..	68
【표 12】 조선 太祖朝-成宗朝 告身 追奪 관련 기사 통계	77
【표 13】 조선 太祖朝-成宗朝 告身 追奪 면제 관련 기사 통계	79
【표 14】 왕실 慶弔事에 따른 太祖朝-成宗朝 告身 還給 관련 실록 기사·인원	87
【표 15】 자연재해에 따른 太祖朝-成宗朝 告身 還給 관련 실록 기사·인원	90
【표 16】 정치적 목적에 따른 太祖朝-成宗朝 告身 還給 관련 기사	94
【표 17】 조선 초기 告身 還給 배제사유 범위 관련 주요 실록 기사	98
【표 18】 조선 초기 告身 還給 관련 실록 기사 횟수 및 還給 인원 통계 ..	111

그 립 목 차

【그림 1】 《經國大典》의 告身 양식 및 실제 告身 원본 문서	10
【그림 2】 조선 太祖朝-成宗朝 告身 追奪 관련 기사 그래프	78
【그림 3】 조선 太祖朝-成宗朝 告身 追奪 면제 관련 기사 그래프	79
【그림 4】 조선 초기 연간 告身 還給 관련 실록기사 횟수 그래프	111
【그림 5】 조선 초기 告身 還給 인원 그래프	112

凡例

1. 각주에서 별도의 표시를 거치지 않은 설명의 경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http://encykorea.aks.ac.kr/>) 또는 두산대백과사전(<http://www.doopedia.co.kr/>)를 참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목록 외에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2. 《太祖實錄》부터 《成宗實錄》에 이르는 《朝鮮王朝實錄》의 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http://sillok.history.go.kr/>)를 인용하였다. 다만 본문에서는 같은 날짜에 기록된 각각의 기사의 경우 ‘①, ②, ③’ 과 같이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는 ‘《太祖實錄》 권1, 太祖 1년 7월 28일 정미 3번째 기사’로 기록된 것을, 본 논문에서는 ‘《太祖實錄》 권1, 太祖 1년 7월 28일 정미 ③’로 표시하였다. 한편 부록에서는 ‘태종 1.7.28.’과 같은 방식으로 간소하게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본문에서 인용한 기사 및 조문에 대한 번역은 가급적 중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였고, 나머지는 원문만 삽입하거나 출처만 밝히었다. 한편 각주 및 본문의 인용문에서 생략한 원문 및 번역문의 부분은 ‘……’ 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인용 내용 중 () 안의 부분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맥락을 헤아려 보충한 부분이다.

4. 부록에서는 告身 追奪·還給의 유형별 분류에 맞추어 기사를 개별적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항목별로도 受敎와 실제 사례를 재차 구별하여 通時的으로 정리하였다. 부록에서의 실록 기사 표기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5. 근대 이전 法書에 대해서는 書名은 《 》, 篇目名은 〈 〉, 條文名은 []로 각각 표시하여, 그 외의 2차 문헌인 단행본(『 』) 및 연구논문(「 」)과 구분하였다.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명장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19조(인사기록) 및 제19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에서 대통령령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해 규정 제25조에서는 신규채용 및 승진되는 공무원에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임용권자의 명의로 수여토록 하고 있다. 비록 공무원 임명장이 그 자체로 非違에 따라 박탈·몰수되는 등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적어도 공직자로서의 명예의 상징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¹⁾

조선시대 관원에 대한 임명장 내지 辭令狀의 기능을 한 告身²⁾의 경우 단순한 임명장이나 후손의 조상 行績 입증을 위한 근거로서의 가치 외에도, 관원 자격을 보증하는 일종의 자격증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관원의 죄질에 따라 이를 거두는 등의 징계처분을 가하여 관원 자격을 박탈하였으며, 사면에 의하여 告身을 다시 還給함으로써 관원 자격도 되돌려주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告身은 吏曹와 兵曹의 屬司인 文選司와 武選司에서 管掌하였으며³⁾, 구체적으로는 吏·兵曹의 正郎·佐郎

1) 2009년 11월부터는 3~5급 공무원에게도 대통령 직인·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는 명예 내지 위신의 차원에서는 임명장이 지니는 사회적 무게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이상연, 「5급 사무관도 대통령 임명장을」, 『법률저널』 2009. 10. 1.(<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3>).

2) 告身을 비롯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는 조선전기 관원·종친·내관 등에 대한 임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예컨대 조선 초기 실록 기록에서 임명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告身'이나 '職牒'이 주로 쓰이곤 하지만, 드물게는 謝牒·官敎·敎牒·牒紙 등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經國大典》〈禮典〉의 관원의 임명장 양식을 다룬 규정에서는 '告身式'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관원에 대한 임명문서 명칭을 告身으로 통일하여 서술토록 한다.

3) 《太宗實錄》 권9, 태종 5년 3월 1일 병신 ②에 따르면, “…… 文選司, 掌文官階品、告身、祿賜之事, 正郎一人, 佐郎一人 …… 武選司, 掌武官階品、告身、武舉、府衛、軍戎之事, 正郎一人, 佐郎一人.”라 하여, 태종조 즈음에 官制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告身 관련 업무 分掌도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經國大典》〈吏典〉[京官職]條에서도 “【吏曹】…【文選司】 掌宗親、文官、雜職、贈職 除授, 告身、祿牌、文科生員進士

이 관련 사무를 담당하였다.⁴⁾ 특히 조선의 告身에 집중하는 이유는, 조선시대의 원문서가 상당수 존재하여 이 시기의 告身の 형식상의 변화와 유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존하는 最古의 告身으로 고려 景宗 즉위년(975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金傳에게 지급한 金傳告身이 있지만⁵⁾, 이는 《三國遺事》에 옮겨 적혀진 것(傳寫)이며 다른 고려 시대의 告身을 모두 합쳐도 3점에 불과하다.⁶⁾

告身 자체에 대해서는 武平 6년(575년) 軍功을 세운 北齊의 傅伏이라는 사람에 대해 武鄉郡 開國公에 除授하고 告身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나⁷⁾, 본격적인 告身 제도의 정착은 唐代에 들어서서야 이루어졌다. 《新唐書》卷50 志35 〈選舉志〉下에서는 인재 선발의 네 가지 기준으로 身言書判을 각기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告身을 流品官에게 지급하는 符信으로 보았다.⁸⁾ 唐에서의 告身은 관원의 품계 및 직책 종류에 따라 冊授·制授·勅授告身⁹⁾ 등 다양하였다.

、賜牌、差定、取才、改名及贓汚敗常人 錄案等事。……【兵曹】…【武選司】掌武官、軍士、雜職 除授，告身、祿牌、附過、給假及武科等事。”로 吏、兵曹의 告身 관련 업무 분장에 대해 규정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 4) 六曹의 하부 조직으로는 각각 3~4개의 屬司가 존재하여 各曹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屬司와 정랑·좌랑의 수가 兵曹를 제외하고는 일치한다. 때문에 정랑·좌랑이 屬司의 실무 책임자로서 업무를 맡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충희, 『조선헌기 육조와 통치체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8, 97-104면.
- 5) 金傳告身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심영환이 2007년 논문에서 唐의 勅授告身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다룬 바 있다. 여기서 심영환은 勅授告身과 달리 金傳告身이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관제의 영향은 받되, 발급 절차에 있어서는 고려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논문은 심영환, 「高麗 景宗元年(975) 金傳告身分析」, 『서지학보』 제31호, 한국서지학회, 2007. 12, 87-113면.
- 6) 앞서 설명한 金傳告身을 제외하고 현재 남은 고려시대 告身은 고종 3년(1216년) 승려 蕙謙에게 수여된 蕙謙告身과 고려 후기인 충목왕 즉위년(1344년)의 申佑告身뿐이다. 박성호, 『고려말 조선초 왕명문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7, 84-88면.
- 7) 《北齊書》列傳33, “武平六年，除東雍州刺史，會周兵來逼，伏出戰，卻之。周克晉州，執獲行台尉相貴，以之招伏，伏不從。後主親救晉州，以伏爲行台右仆射。周軍來掠，伏擊走之。周克並州，遣韋孝寬與其子世寬來招伏曰：“並州已平，故遣公兒來報，便宜急下。”授上大將軍、武鄉郡開國公，即給告身，以金馬二酒鍾爲信。”
- 8) 《新唐書》卷50 志35 選舉志 下, “凡擇人之法有四：一曰身，體貌豐偉 …… 主者受旨而奉行焉，謂之‘奏受’，視品及流外，則判補。皆給以符，謂之‘告身’。”
- 9) 唐의 告身은 시대에 따라 혼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3품 이상의 高官은 冊授告身, 4~5품관은 制書를 통한 制授告身, 6품 이하는 奏授告身, 품계가 6품이던 서도 職事는 5품 이상인 守職에 대해서는 勅授告身을 지급하였다. 심영환, 앞의 논문, 92-94면. 한편 勅授告身에 대해서는 역시 심영환, 「古代 東아시아 任命文書의 性格」, 『泰東古典研究』 제35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5. 12, 69-76면에서 일본 및

唐의 告身체계는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이어졌으며, 조선 역시 대체로 官職을 授與할 때 品階에 따라 告身을 지급하였다. 조선에서는 4품 이상 관원에게는 署經을 거치지 않고 官敎를 지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관원에 대해서는 署經을 거쳐 告身을 발급하였다. 《經國大典》〈禮典〉에서는 전자를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후자는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告身 관련 선행연구는 告身 원문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다만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告身の 追奪 및 還給의 성격에 집중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대개는 告身の 변천과정 및 형식상의 특이점에 초점을 맞춰 세부적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告身 전반에 대한 나름의 정리는 정구복의 1996년 논문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에서 이루어졌다. 이 글은 告身の 성격과 종류, 그리고 人選 과정에서의 署經 절차 및 回收 과정, 문서의 형식까지 아우르고 있다. 여기서는 《經國大典》〈刑典〉[推斷]條를 인용하여 差等的인 告身 回收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回收된 告身の 還給이 대체로 追奪된 지 2년 뒤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¹⁰⁾ 다만 해당 소논문은 告身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정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告身の 追奪·還給을 法制史的 관점에서 다루진 않았고, 《經國大典》의 差等的 追奪 구조에 영향을 미친 《大明律》의 관련 조문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한 한계도 있다.

2003년 동일 저자에 의한 「고문서 용어풀이 : 告身(告身牒·職牒·官敎·牒紙·空名告身牒·空名帖·敎旨·王旨·敎命·故牒)」은 告身 용어의 語原과 用例, 그리고 告身の 同義語 및 類似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바탕으로 朝鮮에서 告身 및 관련 용어가 실제로 활용된 사례를 인용하였으며, 職牒·謝貼 등 다양한 용어가 告身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음을 정리하였다.¹¹⁾

고려의 임명문서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10)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 9집, 한국고문서학회, 1996. 10., 53-65면.

11) 정구복, 「고문서 용어풀이 : 告身(告身牒·職牒·官敎·牒紙·空名告身牒·空名帖·敎旨·王旨·敎命·故牒)」, 『고문서연구』 22집, 한국고문서학회, 2003. 2., 297-300면.

告身 등 인사행정 관련 고문서와 관련하여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는 쟁점은 (朝)謝牒과 告身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였다. 박재우는 謝牒을 告身 문서와는 별개로 署經 통과를 입증하는 인증서로 보았다.¹²⁾ 이에 대해 박준호·심영환 등은 朝謝문서가 중국에서 도입되어 미리 선별된 후보자들 중 국왕에게 선택권만을 부여한 告身제도와 달리, 국왕이 署經을 거쳐 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하는 문서로 보았다. 그리고 그 朝謝 문서 및 署經제도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告身 및 署經제도로 이어졌다고 보았다.¹³⁾ 다만 朝謝문서의 유래 및 성질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2014년 유지영의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¹⁴⁾는 조선시대의 각종 임명문서를 임명 방식의 직·간접성에 따라 四品以上告身·五品以下告身·口傳差帖·奉敎差帖·官長差帖·任命傳令 등으로 나누었다.¹⁵⁾

다만 기존의 임명문서 연구 대부분은 문서 자체의 성격과 형식적 특징에 집중하였으므로, 告身の 追奪 및 還給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방식과 사례,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당대의 법리 및 법이념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살펴보면, 上述한 정구복의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에서는 ‘Ⅴ. 사령장의 회수조처’ 항목에 한 단락을 割愛하여 告身の 回收 및 還給을 언급하고 있다. 정구복은 告身の 差等的인 追奪과 그러한 조치가 官員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정리하였으나, 告身 追奪 여부에 있어서 公罪와 私罪를 구분하여 차별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은 다소

12) 이른바 認證書 설에 대해서는 박재우의 다음의 두 논문에서 자세히 드러나 있다. 박재우, 「15세기 인사문서의 양식과 성격」, 『역사와 현실』 59, 한국역사연구회, 2006. 3., 31-68면 ; 박재우, 「고려 후기 인사행정과 인사문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2013. 9., 253-291면.

13) 박준호,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1, 한국고문서학회, 2007. 8., 107-127면 ; 심영환, 「변화와 정착 - 麗末鮮初の 朝謝文書」, 『한국고문서자료총서1 : 변화와 정착 - 麗末鮮初の 朝謝文書』, 민속원, 2011. 10, 18-28면.

14)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박사학위논문, 2014, 112-168면.

15) 유지영은 朝鮮時代의 임명문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왕이 직접 임명하는 문서로 四品以上告身, 왕의 裁可를 받아 吏·兵曹 및 기타 衙門의 長이 임명하는 문서인 五品以下告身·口傳差帖·奉敎差帖, 그 밖에 왕을 거치지 않고 官衙의 長에게 수여할 권한이 있는 官長差帖·任命傳令이 그것이다.

부족하였다. 물론 해당 논문은 告身 전반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위한 차원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追奪 및 還給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살펴보기 어려웠던 점은 참작해야 한다.

告身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朝鮮의 刑事法 체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職牒의 回收 기준 변화에 대한 정리가 이뤄진 연구도 존재한다. 조지만은 官員에 대한 처벌이 《大明律》에 羈束되는 사례 중 하나로 ‘職牒회수기준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 항목은 職牒, 즉 官員의 告身을 거두는 기준이 《大明律》규정의 영향을 받아 확정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이전 정구복의 논문에서 아쉬웠던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¹⁶⁾

김영석은 推鞠의 人的 범위에 대한 설명에서, 조선 전기 의금부의 單獨推鞠 과정에서 官원의 告身을 거두지 않게 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태종조까지는 杖100에 해당하는 경우 公·私罪를 불문하고 告身을 빼앗아 의금부의 조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세종 7년 이후에는 私罪로 告身을 거둔 官원을 제외하고는 의금부가 관할하였다. 이후 문종-단종조에 걸쳐 조사 단계에서 告身을 거두지 않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 官원을 처벌할 때에야 追奪토록 하였다. 김영석은 이러한 과정에 주목하여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해당 官원의 告身이 殘存한 상태이므로 官원의 자격이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금부가 모든 官원에 대해 推鞠하게 되었다고 보았다.¹⁷⁾

같은 시기 전개된 이상현의 「대역죄인 告身の 殘存事由에 대한 일고찰 - 김종직·정인홍 고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¹⁸⁾은 大逆罪라는 重罪에도 불구하고 告身이 追奪되지 않은 예외사례인 김종직·정인홍의 경우를 바탕으로 告身 追奪의 성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김종직·정인홍 모두 그 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의 처분과는 달리 告身 追奪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이상현은 이를 정치적 諸般事情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¹⁹⁾ 이상현의 연구는 告身 追奪이 항상 法制에 따라 엄정

16)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 경인문화사, 2007, 92-94면.

17) 김영석, 『의금부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3. 8, 163-181면.

18) 이상현, 「대역죄인 告身の 殘存事由에 대한 일고찰 - 김종직·정인홍 고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43호, 한국고문서학회, 2013. 8., 101-129면.

하게 집행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논문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告身 追奪 및 還給 집행에 있어서 예외 사례 및 그 원인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告身 追奪 및 還給이 이뤄진 경우와 사례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선행연구로부터 제기할 수 있는 의문점들을 재차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官員에 대한 임명장으로서만 인식되어 있는 告身에 대해, 官員에 대한 ‘형벌·징계 등 제재 수단’으로서의 다른 면모를 발굴해내는 것이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목적은 追奪된 官員의 告身을 還給한 사례를 바탕으로 일종의 ‘赦免 수단’으로서의 告身の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며,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告身の 복합적인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19) 이상현은, 김종직의 경우 연루된 戊午士禍가 연산군의 왕권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던 점이, 정인홍은 지역적 기반에 따른 서인 집권층의 정치적 부담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논문에서는 朝鮮 建國 직후부터 《經國大典》이 최종적으로 頒布된 시점인 成宗朝까지의 기간에 追奪·還給된 官員의 告身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기간을 成宗朝까지로 한정 한 이유는, 《大明律》의 差等的인 告身 追奪 체계가 《經國大典》을 통해 成宗朝에 비로소 안정적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太祖가 즉위교서에서 《大明律》에 따른 告身 追奪을 闡明 하였으나²⁰⁾,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世宗朝의 본격적인 검토와 成宗朝까지의 法典化 작업이 요구되었다. 때문에 적어도 成宗朝까지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告身の 追奪 및 還給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成宗朝에 이미 《大典續錄》이 편찬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續大典》·《大全通編》·《大典會通》 등의 법전에서도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告身の 追奪 및 還給에 관한 조문이 추가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大典通編》〈刑典〉[禁制]條에서는 陵·園·墓에서 나무를 불법으로 베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陵官에 대해 伐木된 나무의 크기와 수량에 따라 告身을 3등 거두도록 규정하였다(松雜大木 … 陵官五株以上罷職, 七株以上奪告身三等 … 中木 … 陵官五十株以上奪告身三等, 三十株以上罷二年, 陵官五十株以上奪告身三等). 이는 《經國大典》·《續大典》에는 없던 규정으로,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삽입된 것이다. 그 수효를 살펴보면, 《續大典》에는 총 8개, 《大典通編》과 《大典會通》에는 각각 1개씩의 告身 追奪 관련 특별 규정이 《經國大典》 이래로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방대한 분량을 본 논문에서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일의 추가적인 연구를 기

20) 《太祖實錄》 권1, 太祖 1년 7월 28일 정미 ③, “ … 一, 前朝之季, 律無定制, 刑曹·巡軍·街衢各執所見, 刑不得中. 自今刑曹, 掌刑法·聽訟·鞫詰, 巡軍掌巡綽·捕盜·禁亂. 其刑曹所決, 雖犯答罪, 必取謝貼罷職, 累及子孫, 非先王立法之意. 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追奪宣勅者, 乃收謝貼; 該資產沒官者, 乃沒家產. 其附過還職·收贖解任等事, 一依律文科斷, 毋蹈前弊; 街衢革去.”

21) 추가된 告身 追奪 관련 특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續大典》은 〈戶典〉[戶籍]·[倉庫]·[漕轉]·[徵債]條, 〈禮典〉[諸科]·[雜令]條, 〈兵典〉[教閱]條, 〈刑典〉[推斷]條까지 총 8개 규정이 추가되었다. 《大典通編》은 본문에서 소개한 〈刑典〉[禁制]條가, 《大典會通》에서는 〈戶典〉[倉庫]條에 재차 告身 追奪 관련 규정이 보완되었다.

대하며, 여기서는 조선 초기의 告身에 집중하고자 한다.

史料에 있어서는 시대적 배경을 조선 초기로 한정하였던 만큼 成宗朝까지의 《朝鮮王朝實錄》 및 《經國大典》을 기본 틀로 삼았으며, 점진적으로 조선의 형사법 체계에 적용되었던 《大明律》 역시 살펴보았다. 《高麗史》·《高麗史節要》에서도 告身 追奪 및 還給 사례를 발견하였으나²²⁾, 본논문의 시간적 배경을 고려하여 비중을 크게 두진 않았다. 그 밖에도 《唐律疏議》·《唐六典》 등의 法書에서 告身 追奪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구조상 《大明律》과 유사한 부류도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大明律》 규정과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서술구조를 요약하자면, 우선 제2장에서는 告身の 의의와 연혁을 종합하고 법적인 성격을 고찰하고자 했다. 먼저 告身の 유래 및 그 追奪과 관련된 중국·조선의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으며, 告身 追奪의 법적인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太祖-成宗朝 告身 追奪의 사례를 개별 범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예외적으로 追奪을 면한 경우도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告身 追奪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으며, 告身 追奪에 관한 전반적인 추이 및 분석을 통계로 정리·종합하였다. 제4장에서는 告身の 還給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告身の 정기적인 還給 기간에 대한 기존 학설의 타당성을 실제 사례와 관련 조문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왕실의 慶弔事, 자연재해에 따른 민심수습, 정치·행정적 필요 등 사면에 의한 비정기적인 告身 還給도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끝으로는 정치적 화합과 欽恤의 취지에서 成宗朝까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는 告身 還給의 추이를 분석하고, 엄정한 법질서 수호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된 지나친 告身 還給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였다.

22) 예를 들어 《高麗史》〈世家〉卷第35 충숙왕 1년 3월 6일 을해 기사에서는 김천우 등 13명을 杖刑에 처한 뒤 職牒을 追奪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高麗史》〈例傳〉卷第46 우왕 2년 9월 기사에서도 신돈과 결탁하여 뇌물을 授受하고 장인의 첩과 간통한 조사겸의 職牒을 回收하고 流刑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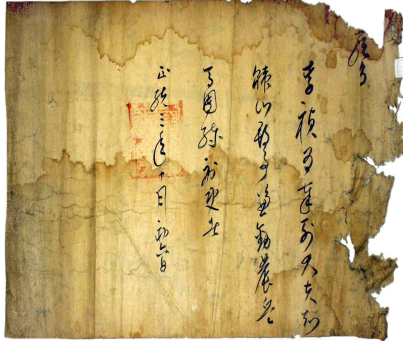
제2장 告身の 의의와 법적 성격

제1절 告身の 의의와 연혁

1. 告身の 의의

告身은 관원을 임명하는 용도로 쓰인 문서양식으로, 중국 唐代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新唐書》의 告身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밝혔듯이, 唐의 告身은 관원을 새로이 일정 관직에 임명하면서 그 증표로서 지급하는 符信을 일컫는 것이다. 약 500여년 뒤 조선에서 《經國大典》에 대한 유권해석을 목적으로 명종조(1554년)에 편찬된 《經國大典註解》에서도 告身の 유래를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도 《新唐書》〈選舉志〉의 告身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서 ‘관직을 제수하고 각각 符信을 지급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¹⁾ 한편 《新唐書》와 마찬가지로 宋代에 편찬된 《通鑑節要》〈唐紀〉에서도 告身に 대해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추가로 告身を 지급하는 일에 있어서 관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褒貶과 잘잘못을 가려 별하는 訓戒의 뜻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²⁾ 後述하겠으나 《通鑑節要》에서의 褒貶·訓戒에 대한 설명은 告身を 지급하거나 거두는 문제에 있어서 징계별적인 성격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
- 1) 정금식·田中俊光·김영석, 『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009, 147면. 원문 내용의 출처와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經國大典註解》〈吏典〉[告身]條, “告身 : 唐選舉志 授官而各給以符, 謂之告身.”
 - 2) 《通鑑節要》卷之42, 〈唐紀〉[肅宗], “唐選舉志, 視品及流外, 則判補. 皆給以符, 謂之‘告身’. 其中有褒貶、訓戒之辭.”
 - 3) 사진은 《經國大典》〈禮典〉[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條에 규정된 5품 이하 문무관원에 대한 告身 양식 규정이다.
 - 4) 세종 20년(1483년) 李禎 告身の 원본 사진은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

종류	원본문서	텍스트
① ³⁾		<p>某曹 某年某月某日 奉</p> <p>教具官某 爲某階某職者</p> <p>年「印」 月 日</p> <p>判書臣 某 參判臣 某</p> <p>參議臣 某</p> <p>正郎臣 某 佐郎臣 某</p>
② ⁴⁾		<p>教旨</p> <p>李禎爲奉列大夫知</p> <p>韓山郡事兼勸農兵</p> <p>馬團練副使者</p> <p>正統三年「寶」十月初六日</p>

【그림 1】 ① 《經國大典》〈禮典〉[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條 규정(5품 이하 문무 관리에 대한 告身) ② 세종 20년(1483년) 10월 李禎에게 수여된 告身(4품 이상 문무관리에 대한 告身)

告身은 통상적으로 관원의 품계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로 지급하였는데, 조선의 경우 4품 이상의 관원과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해 지급하는 告身 형식에 대해 각각 《經國大典》〈禮典〉에서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條에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앞서 【그림 1】

터베이스(<http://yoksa.aks.ac.kr/jsp/bb/VolView.jsp?mode=&page=&fcs=f&cd=ba1225&gb=1&bb10no=B00000008&bb20no=B00000008T&keywords=&rowcount=10>)에서 제공하는 조선 초기 告身 파일 중에서 특히 4품 이상 문무관원의 告身 형식을 잘 나타내는 사례를 선별하여 인용하였다.

에서 소개한 두 종류의 告身 양식을 살펴보면 형식상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4품 관원에게 수여하는 임명장은 官敎라 하여 5품 이하 관원에게 수여하는 敎牒과 구분하였는데, 이 두 유형을 구별하는 기준점은 임명하고자 하는 관원에 대한 臺諫의 심사과정인 署經이었다. 고려대에는 1품 이하 모든 관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署經이 이뤄진 반면,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국왕이 인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의도로 署經이 요구되는 관원의 범위를 축소시키려 하였다.⁵⁾ 이는 臺諫이 署經 권한을 바탕으로 왕권을 견제할 여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5품 이하 관원에 대해서만 署經을 적용하기로 확정되기까지는 署經 범위를 두고 君臣간의 갈등이 이어졌다.⁶⁾

上述하였듯이 《經國大典》〈吏典〉[京官職] 條의 六曹 업무분담 규정에서는 吏曹의 文選司와 兵曹의 武選司로 하여금 각각 文班과 武班의 告身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문반의 告身은 〈吏典〉[告身] 條에서, 무반의 告身은 〈兵典〉[告身] 條에서 발급요건·제출기한·분실시 재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經國大典》〈吏典〉[告身] 條

【告身】 관직을 받는 사람의 告身은 5품 이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署經을 거쳐 발급한다.<의정부·이조·병조·사헌부·사간원·장례원·홍문관·춘추관·지제교 및 종부시·세자시강원의 관료와 각도의 도사 수령은 父·祖·曾祖·外祖 등 内外4祖와 本人에게 흠결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署經한다. 도총부의 관료와 선전관 部將도 같다.>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有故라 하면서 50일이 지나도록 서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에게 보고한다. ○告身을 받기 전에 公務를 보다가 죽거나 혹은 파직된 者의 경우에는 그 告身을 받을 사람에게 대한 署經이 완료되어 그것이 吏曹에 접수되었으면 告身을 내준다. ○告身을 잃어버린 자는 이조에 보고하도록 하여 吏曹에서는 이를 조사한 후 확인서(立案)를 발급한다. 병조도 또한 같다.⁷⁾

5) 박준호, 앞의 논문, 110-116면.

6) 유지영, 앞의 논문, 11-17면.

7) 《經國大典》〈吏典〉[告身] 條, 『告身』凡受職者, 告身五品以下, 考司憲府·司諫院署經

《經國大典》〈兵典〉[告身] 條

【告身】 軍士가 5품 이하로서 遞兒職을 받은 경우에는 곧 告身을 만들어 각각 그 入直날에 兵曹의 입직 當上관이 전에 받은 告身과 대조한 뒤에 나눠 주며, 그가 녹봉을 받은 후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엄격히 조사하되 두 달이 되도록 전에 받은 告身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告身을 회수하고 녹봉도 추징한다. <彭排와 隊卒은 월급을 追徵한다. ○ 무릇 녹봉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엄격히 조사한 후 告身을 만들어 준다. ○ 兩界(평안도와 함경도) 軍士의 告身은 그 道에 보내어 관찰사가 전에 받은 告身과 대조하여 본 후 나누어 준다. 그 軍士가 녹봉을 받은 후 200일이 되도록 전에 받은 告身을 사간원에 提出하지 않아도 역시 告身을 도로 거두고 녹봉을 추징한다.>⁸⁾

규정을 살펴보면 文·武班 관원의 告身の 署經 및 발급 절차는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반 관원의 경우, 세종조에는 5품 이하 관원의 告身을 署經하는 과정에서 臺諫이 각종 결격사유를 내세워 발급을 지연하거나 제대로 이유를 보고하지 않는 폐단을 세종이 직접 제기하기까지 하였다.⁹⁾ 그 결과 《經國大典》〈吏典〉[告身] 條에 위와 같이 50일 내에 署經하지 못하면 국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무반의 경우 遞兒職을 받은 경우 두 달을 두고 이전 告身을 兵曹 當上관이 새로운 告身과 대조하도록 하였으며, 臺諫은 녹봉을 받은 이후에야 조사하였다. 변방에 근무하는 軍士의 이전 告身 제출 기한은 200일로 더욱 길었다. (제3장 제3절의 ‘2. 署經의 未備에 따른 告身 追奪’ 참조)

給之.<議政府·吏·兵曹·司憲府·司諫院·掌隸院·弘文館·春秋館·知製敎·宗簿寺·侍講院·都事·守令, 考內外四祖及己身, 右痕咎與否署經. ○都摠府·宣傳官·部將同.> ○司憲府·司諫院有故, 過五十日未署經者, 啓. ○未受告身前行公物故或罷職者, 其告身已署經到本曹, 則給之. ○失告身者, 告本曹考給立案. <兵曹同.>

8) 《經國大典》〈兵典〉[告身] 條【告身】《原》 軍士五品以下受遞兒職者即成告身, 各其入直日, 本曹入直堂上官考前受告身分給, 受祿後, 司憲府·司諫院檢覈, 滿二朔不納前受告身者, 收其告身并徵其祿. <彭排·隊卒, 徵月俸 ○ 凡無祿者, 司憲府·司諫院檢覈後, 成給 ○ 兩界軍士告身, 送于其道, 觀察使考前受告身分給, 受祿後, 滿二百日不納前受告身于司諫院者, 亦收告身徵祿.>

9) 《世宗實錄》卷69, 세종 17년 7월 29일 무술 ⑤.

실질적인 告身 발급은 吏·兵曹에 소속된 하급 구실아치인 政色書吏가 도맡았는데, 문무관원이 새로이 관직에 임명될 때 마다 이들이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告身을 작성하였다. 실제로 조선시대 告身 문서 일부의 뒷면에는 본인들이 해당 告身을 작성하였음을 표시하기 위해 서리들이 본인의 이름을 작은 글씨로 기록하였다.¹⁰⁾ 서리들은 단지 告身을 기계적으로 발급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았으며, ‘丹骨胥吏’로써 관원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인사행정 및 조치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관원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相扶相助의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¹¹⁾

2. 唐·明의 告身 관련 규정

告身제도가 唐制에서 비롯된 만큼 告身 관련 규정, 특히 告身 追奪 등에 관련된 규정 역시 《唐律疏議》·《大唐六典》과 같은 唐律에서 法源을 발견할 수 있다. 뒤이은 明代의《大明律》은 조선의 刑法典의 구실을 하였던 만큼 《經國大典》등 조선의 告身 追奪 체계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後述하겠지만 조선 초기 告身을 거두어들이는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도 《大明律》의 제반규정이 빈번히 인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唐 高宗 永徽 4년(653년)에 律文의 명확한 해석 및 적용을 위해 唐律의 해설서로서 편찬된¹²⁾ 《唐律疏議》에는 告身 追奪과 관련된 여러 규정이 존재하는데, 특히 〈名例〉編의 규정에서 상당수를 발견할 수 있다. [以理去官] 條에서는 범죄 이외의 사유로 해직된 관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예우할 것인가를 규정하였는데, 특별사항으로서 以理去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을 준용해야 할 대상에 대해 다루었다. 즉, 政情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해 해직된 경우 告身을 留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범죄를 저질러 해직된 관원과

10)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 케케묵은 고문서 한 장으로 추적하는 조선의 일상사』, 휴머니스트, 2013, 132-147면.

11) 전경목, 위의 책, 148-174면.

12) 張晉藩·李鐵·蒲堅·張希波, 『중국법제사』 (한기종 등 5인 共譯), 소나무, 2006, 360-366면.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예외로 삼아 명시한 것이다.¹³⁾

관원이 관직에 임명되지 않았을 때 저지른 죄가 관직 임명 이후에 발각된 경우 流罪 이하에 한정하여 贖罪金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 [無官犯罪 有官事發] 條에서도 告身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돈으로 처벌을 대신할 수 없는 기준으로 告身の 有無를 들고 있다. 예컨대 해당 관원이 除名·官當 등의 사유로 이미 告身이 없다면 관직 임명 이전의 죄라 하여도 속죄금으로 처벌을 대신할 수 없게 하였다.¹⁴⁾ 특히 ‘告身이 없는 경우에는 벼슬이 없는 경우의 법례와 같다(在身見無流內告身者, 亦同無官例)’고 규정한 부분은, 唐代에도 告身을 관원 자격의 표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관원이 지은 죄에 대해 관품을 差減하여 처벌을 대신하는 법식을 규정한 [官當] 條는 특히 告身に 대해 많이 다루고 있는데, 告身이 관품에 따라 지급되는 원칙과 관련이 있다. 앞선 [以理去官] 條에서 그러하였듯이 [官當] 條에서도 告身이 거뒀지지 않은 관원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관품부터 적용토록 하였다.¹⁵⁾ 나아가 官當할 품계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告身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¹⁶⁾, 이전에 역임하였던 관직 중 현직보다 관품이 낮은 告身に 한하여 官當하는 것도 허용되었다.¹⁷⁾

13) 《唐律疏議》第15條 名例15 以理去官, “…… [注1]解雖非理, 告身應留者, 亦同. [疏2]議曰, 解雖非理者, 謂責情及下考解官者, 或雖經當, 免. 降所不至者, 亦是告身應留者, 竝同見任官法.”

14) 《唐律疏議》第16條 名例16 無官犯罪 有官事發 “…… [律文1] 諸無官犯罪, 有官事發, 流罪以下以贖論. 謂從流外及庶人而任流內者, 不以官當·除·免. 犯十惡及五流者, 不用此律. [疏1] 議曰, 無官犯罪, 有官事發, 流罪以下, 皆依贖法. 謂從流外及庶人而任流內者, 其除名及當·免, 在身見無流內告身者, 亦同無官例 …”

15) 《唐律疏議》第17條 名例17 官當 “…… [律文6] 先以高者當, 若去官未敘, 亦準此. [疏6] 議曰, 先以高者當, 謂職事等三官內, 取最高者當之. 若去官未敘者, 謂以理去任及雖不以理去任, 告身不追者, 亦同. 竝準上例, 先以高者當 …… [問2]曰, 律云, 若去官未敘, 亦準此. 或有去官未敘之人而有事發, 或罪應官當以上, 或不至官當, 別令解, 其官當敘法若爲處分? [答2]曰, 若本罪官當以上, 別條云以理去官與見任同, 卽依以官當徒之法, 用官不盡, 一年聽敘, 降先品一等, 若用官盡者, 三載聽敘, 降先品二等. 若犯罪未至官當, 不追告身, 敘法依考解例, 期年聽敘, 不降其品. 從見任解者, 敘法在獄官令. 先去任, 本罪不至解官, 奉解者, 依刑部式, 敘限同考解例. 本犯應合官當者, 追毀告身.”

16) 《唐律疏議》第17條 名例17 官當 “…… [問4]曰, 先有正六品上散官, 上守職事五品, 或有從五品官, 下行正六品上, 犯徒當罪, 若爲追毀告身? [答4]曰, 律云, 行·守者, 各以本品當, 仍各解見任. 其正六品上散官守五品者, 五品所守, 別無告身, 既用六品官當, 卽與守官俱奪. 若五品行六品者, 以五品當罪, 直解六品職事, 其應當罪告身同階者, 悉合追毀.”

모든 官職을 삭탈하는 [除名] 條에서는 자손이 反·逆에 연좌된 死者에 대한 告身 追奪 면제 규정이 존재한다.¹⁸⁾ 여기서는 자손의 죄로 인해 부모의 告身을 거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死後 자손에 대한 혜택에 해당하는 陰庇 역시 부정하면서 명예는 살리고 실질적인 혜택은 거두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제2장 제2절 ‘2. 명예형적 성격’ 참조)

《唐律疏議》에서는 喪中에 出仕하거나 孝를 다하지 않는 등 유교적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를 유형별로 [免所居官] 條에 규정하여 관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에서는 父·祖父의 이름 字 일부가 들어간 관직에 부임하였던 전적이 있는 관원의 경우 역임하였던 해당 직책의 告身과 현직의 告身 모두를 거두도록 하였다.¹⁹⁾ 조선에서도 유교 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告身을 거두는 경우가 있었는데(제3장 제1절 ‘告身 追奪의 유형’ 참조),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이와 궤를 달리하지는 않음이 분명하다.

그 밖에도 《唐律疏議》에서는 절차법적 측면에서 告身을 다룬 규정도 존재한다. 타인의 告身을 사칭·위조하여 허위 관직을 취득한 경우 해당 告身을 追奪하여 바로잡도록 규정하였으며²⁰⁾, 除名·免官·官當의 처분으로 인해 告身을 追奪해야 하는데 지체한 경우 처벌토록 하여 신속한 追奪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²¹⁾

17) 《唐律疏議》第17條 名例17 官當 “…… [律文9] 若有餘罪及更犯者，聽以歷任之官當。歷任，謂降所不至者。 [疏9] 議曰，若有餘罪者，謂二官當罪之外，仍有餘徒，或當罪雖盡而更犯法，未經科斷者，聽以歷任降所不至告身，以次當之。”

18) 《唐律疏議》第18條 名例18 除名 “…… [問1]曰，帶官應合緣坐，其身先亡，子孫後犯反·逆，亦合除名以否? [答1]曰，緣坐之法，惟據生存。出養入道，尚不緣坐，無宜先死，到遣除名。理務弘通，告身不合追毀。告身雖不合追毀，亦不得以爲蔭。”

19) 《唐律疏議》第20條 名例20 免所居官 “…… [注2] 卽因冒榮遷任者，竝追所冒告身。 [疏7] 議曰，假有父祖名常，冒任太常之職，秩滿之後，遷任高官，事發論刑，先免所居高品，前得冒榮告身仍須追奪。”

20) 《唐律疏議》第370條 詐僞6 詐假官假與人官 “[律文1] 諸詐假官，假與人官及受假者，流二千里。謂僞奏擬及詐爲省司判補，或得他人告身施用之類。 [疏1] 議曰，詐假官，謂虛僞詐假以得官，若虛假授與人官及受詐假官者，竝流二千里。注云謂僞奏擬，但流內九品以上官，皆注詔奏擬。及詐爲省司判補，視品流內等官。或得他人正授告身，或同姓字，或改易己名，妄冒官司以居職任。稱「之類」者，亦有己之告身應合追毀，私自盜得而假詐之者。若詐申聞及增減重者，從重法。”

21) 《唐律疏議》第493條 斷獄25 輸備贖沒入物違限 “[律文] 諸應輸備·贖·沒·入之物，及欠負應徵，違限不送者，一日笞十，五日加一等，罪止杖一百。若除·免·官當，應追告身，違限不送者，亦如之……。”

唐 玄宗 開元 27년(739년) 《周禮》의 六典體制에 입각하여 六官의 職制로 구성된²²⁾ 《唐六典》은, 실질적으로 唐代에 적용된 律令格式은 아니지만 후대의 법률체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을 정도로 명료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²³⁾

《唐六典》에서도 告身 追奪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개중에는 《唐律疏議》와 비슷한 범주에 속하지만 보다 다른 특성을 드러내는 규정 역시 존재한다. 특히 주목할 규정은 관원에 대한 평가(考課) 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는 관원이 私罪로 인해 下中 이하를 받거나 公罪로 下下의 평가를 받으면 현임 관직에서 해임하고 그 해의 녹봉을 주지 않았으며, 告身도 追奪하되 1년이 지나면 敘任을 허용하였다.²⁴⁾

여기서 公罪는 관원이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착오로 잘못을 저지른 범죄이며, 私罪는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 및 관원이 공무집행 중 저질렀더라도 역시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포함한다.²⁵⁾ 罪質에 있어 양 범죄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唐律疏議》 및 위 《唐六典》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公罪보다 私罪가 보다 무겁게 처벌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같은 규정에서는 考課에 있어서 上中下의 평점을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下는 직무를 게을리 하며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 下下는 私利를 추구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으로 재물을 취

22) 張晉藩、李鐵、蒲堅、張希波, 앞의 책, 367-369면.

23) 김택민, 「《唐六典》의 성립과 서술체제 및 판본」, 『역주 唐六典(상)』, 신서원, 2003, 15-21면.

24) 《唐六典》卷第2 尚書吏部 考功郎中 員外郎 “…… 諸食祿之官, 考在中上已上, 每進一等, 加祿一季; 中下已下, 每退一等, 奪祿一季. 若私罪下中已下, 公罪下下, 並解見任, 奪當年祿, 追告身; 周年, 聽依本品叙.”

25) 한상권, 「公罪와 私罪」, 『법사학연구』 53호, 한국법사학회, 2016. 4, 10-14면.

26) 《唐律疏議》第17條 名例 17 官當에서는 私罪를 公事로 말미암지 않고 사사로이 직접 범한 죄 또는 公事로 말미암더라도 私利私慾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범한 죄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私罪, 謂不緣公事, 私自犯者, 雖緣公事, 意涉阿曲, 亦同私罪.”) 그 밖에 황제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청탁을 받고 誤決하는 경우(“…… 對制詐不以實者, 對制雖緣公事, 方便不吐實情, 心挾隱欺, 故同私罪. 受請枉法之類者, 謂受人囑請, 屈法申情, 縱不得財, 亦爲枉法. 此例既多, 故云之類也.”)도 私罪로 간주하였다. 반면 公罪는 公事를 처리함에 있어 사사로이 법을 왜곡한 정황이 없는 경우(“…… 公事與奪, 情無私曲, 雖違法式, 是爲公坐.”)에 해당한다.

특한 경우에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앞서 소개한 《唐律疏議》의 [以理去官] 條에서는 근무성적이 좋지 못해 해임되더라도 告身은 거두지 않고 유보시켰지만 《唐六典》에 들어서서는 告身을 거두게 하였던 점이 다르다. 특히 《唐六典》에서는 告身을 거두는 문제와 관련하여 公·私罪의 개념을 기준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후 明代의 《大明律》에 상당히 반영되었다.

그 밖의 《唐六典》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무 중인 군인이 3번 당직을 서지 않는 등 태만한 경우가 심하면 告身을 거두도록 규정하였다.²⁸⁾ 한편 死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전에 지은 잘못으로 인한 告身 追奪을 면하도록 하였으나, 그 죄가 일반사면을 받기 어려울 만큼²⁹⁾ 중대하다면 그대로 追奪하도록 하였다.³⁰⁾ (이와 관련된 조선의 사례는 제2장 제2절 ‘3. 告身 追奪의 명예형적 성격’, 제3장 제1절 ‘告身 追奪의 유형’ 참조)

明代의 법제는 이민족 정복왕조였던 元의 문물과의 단절 및 唐·宋으로의 복고, 특히 唐律을 기준으로 복고적인 양상을 보였다.³¹⁾ 때문에《大

27) 散在된 唐令을 재정리한 仁井田陞(니다 노보루)의 《唐令拾遺》에서는 上記한 《唐六典》 외에 北宋代王籀(922-982)가 편찬한 《唐會要》의 관련 부분 역시 인용하고 있다. (仁井田陞, 《當令拾遺》〈考課令第十四 - 復舊凡五十五條〉[二(開二五)], 도쿄대학출판부, 1964, 330-331면.) 한편 《當令拾遺》에서 간접적으로 명시한 《唐會要》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唐會要》卷八十二, “…… 又准考課令, 在中上以上, 每進一等, 加祿一季, 中中者守本祿, 中下以上, 〈上唐六典作下〉 每退一等, 奪祿一季, 准令, 以此勸懲. 事在必行.” 《唐六典》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唐六典》卷第2 尚書吏部 考功郎中 員外郎 “…… 不勤其職, 數有愆犯爲下; 背公向私, 貪濁有狀爲下下.”

28) 《唐六典》卷第5 尚書兵部 兵部郎中 員外郎 “…… 三衛違番者, 徵資一千五百文, 仍勒陪番. 有故者, 免徵資. 三番不到, 注甲毀奪告身, 有故者亦陪番 ……”

29) 여기서의 일반사면은 ‘常赦所不原’을 일컫는데, 《唐律疏議》卷30 〈斷獄律〉[赦前斷罪不當條疏] 條에서는 惡逆·謀反 등 十惡에 해당하는 중죄 및 친족살해·간음과 같이 강상윤리에 위배되는 죄, 그리고 贓汚罪를 예로 들어 규정하였다.

30) 《唐六典》卷第6 尚書刑部 刑部郎中 員外郎 “…… 凡犯流罪已下應除、免、官當未奏身死者, 免其追奪. 謂不奪告身. 若奏時不知身死, 奏後云先死者, 依奏定. 其常赦所不原者, 不在免限.”

31) 《明史》卷93 志第69 〈刑法1〉에서는 ‘元의 제도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시행된 例를 條格으로 삼은 것이다(元制, 取所行一時之例爲條格而已).’고 평가하였으며, 뒤이어 ‘律이 唐代에 비로소 집대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법제도 唐의 것을 따라야 한다(歷代之律, 皆以漢《九章》爲宗, 至唐始集其成. 今制宜遵唐舊).’고 明太祖 홍무제에게 주장한 당시 재상 이선장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明史》의 해당 부분에 대한 번역은 《明史》 원문도 물론 참조하였으나, 보다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영진, 「譯註: 『明

明律》의 告身 追奪 관련 규정 역시 이전 唐代의 《唐律疏議》·《唐六典》에서의 告身 관련 규정과 일정한 관련을 갖는다. 明太祖 洪武 30년(1397년) 최종적으로 《大明律》의 [文武官犯公罪]·[文武官犯私罪] 條는, 보다 직접적으로 조선의 告身 追奪 체계에 영향을 끼쳤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다.

《大明律》〈名例〉 제7조 문무관의 公罪

서울과 지방의 軍人·백성·관원·서리가 公罪를 지어 태형에 해당하면, 관원은 돈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며, 서리는 각 사계절의 마지막 달에 한꺼번에 논의한다. 죄명을 반드시 기록할 필요는 없다. (지은 죄가) 장형 이상이면 이를 적어두었다가 매년 한 차례 조사하여 죄명을 기록하고, 9년에 한 차례 범죄의 횟수와 경중을 모두 조사하여 파면과 승진의 자료로 삼는다.³²⁾

《大明律》〈名例〉 제8조 문무관의 私罪

문관이 私罪를 지었을 때, 태40 이하는 죄명을 기록하고 본직에 복귀시키며, 태50은 현직에서 해임하고 다른 관직에 임용한다. 장60은 1등, 장70은 2등, 장80은 3등, 장90은 4등을 강등하여 현직에서 해임하며, 流品官³³⁾은 잡직에, 잡직은 변방의 직책을 임명하며, 장100이면 파직하고 임용하지 않는다.

군관이 私罪를 지었을 때, 태형이면 죄명을 기록하고 돈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며, 장형이면 현직에서 해임하고 강등하여 임용한다. 파직하여 임용하지 않으면 강등하여 總旗에 충원한다. 도·유형에 해당하면 가깝고 먼 정도에 따라 각 위치에 보내 軍역을 지게하며, 공을 세우면 순서를 따르지 않고 뽑아 쓴다.

流品官에 들지 못하는 관원과 서리가 私罪를 지었을 때, 태40이면 죄명을 기록하고 본직에 복귀시키며, 태50이면 본 직역에서 파면하고 다른 직역에 임용한다. 장형이면 직역을 파면하고 임용하지 않는다.³⁴⁾

史』 刑法志 譯註 1 (『明史』 卷 93, 志 第69, 刑法1)』, 『중국사연구』 23권, 중국사학회, 2003. 4. 321-322면 역시 살펴보았다.)

32) 《大明律》〈名例〉 第7條 [文武官犯公罪] 條, “【文武官犯公罪】 凡內外大小軍民衙門官吏犯公罪, 該答者 官收贖 吏每季類決 不必附過. 杖罪以上, 明立文案 每年一考 紀錄罪名, 九年一次 通考所犯次數重輕 以憑黜陟.”

33) 流品官: 1품~9품의 품계가 있는 관원.

34) 《大明律》〈名例律〉 第8條 [文武官犯私罪] 條, “【文武官犯私罪】 凡文官犯私罪, 笞四以下 附過還職, 五十解見任別敘, 杖六十降一等, 七十降二等, 八十降三等, 九十降四等 俱解見任. 流官於雜職內敘用 雜職於邊遠敘用, 杖一百者 罷職不敘. 若軍官有犯私罪, 該

《大明律》의 해당 규정은 公·私罪 개념을 告身 追奪의 기준요건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唐六典》과 유사하지만, 公罪에 대해서는 아예 告身 追奪에서 배제하고 私罪에 대해서만 差等的으로 告身을 거두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大明律》의 다른 규정에서도 唐律의 영향을 읽어낼 수 있다. 《大明律》〈名例〉의 [以理去官] 條는 告身과 관련하여 앞서 살핀 《唐律疏議》의 [以理去官] 條와 마찬가지로 告身을 유지한 자를 현임 관원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하였다.³⁵⁾ 한편 [除命當差] 條에서는 告身을 追奪하여 제명하면 모든 관작을 없애도록 하여³⁶⁾, 告身 追奪을 통해 관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였다.

3. 조선의 告身 관련 규정

고려 역시 唐律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유사한 방식의 告身 追奪 및 還給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高麗史》·《高麗史節要》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史料의 부족으로 인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조선은 일찍이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관원의 公·私罪에 대해 《大明律》에 따라 謝牒을 거둘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追奪宣勅者, 乃收謝牒)³⁷⁾. 이에 따르면 건국 직후에는 앞서 소개한 《大明律》의 관련 규정에 따라 私罪에 한하여 杖刑이상의 죄에 대해 告身을 차등적으로 거두는 기준을 세웠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이 성종조 《經國大典》〈刑典〉[推斷] 條에 명시될 때까지

答者 附過收贖, 杖罪解見任 降等敘用. 該罷職不敘者 降充總旗. 該徒流者 照依地里遠近發各衛充軍, 若建立事功 不次擢用. 若未入流品官及吏典 有犯私罪, 笞四十者 附過各選職役, 五十罷見役別敘. 杖罪並罷職役不敘.”

35) 《大明律》〈名例律〉第12條 [以理去官] 條, “ … 謂不因犯罪而解任者, 若沙汰冗員·裁革衙門之類, 雖爲事解任降等 不追誥命者, 並與見任同 ….”

36) 《大明律》〈名例律〉第14條 [除命當差] 條, “ … 凡職官犯罪 罷職不敘, 追奪除名者, 官爵皆除 ….”

37) 《太祖實錄》卷1,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③.

지 변함없이 이어졌던 것은 아니며, 점진적인 수용과 변화를 거친 이후에야 가능해졌다.

태조 즉위교서 이후의 告身 追奪 기준 변천 과정을 요약하면, 《大明律》로부터 세종 초에 특례규정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大明律》기준으로 복귀하였다. 우선 태종조~세종 4년까지의 사례를 종합하면 즉위교서상의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태종 16년 5월에는 죄인에 대한 科田 還給을 논의하면서 ‘杖罪를 범하여 職牒이 거둬진 자들 가운데 私罪 이외에 公罪를 지은 사람으로서(犯杖罪, 收職牒內私罪外, 犯公罪人)’와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³⁸⁾ 이는 당시 公罪에도 職牒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세종 1년 3월에는 심문 중인 관원의 죄가 笞刑에 불과한데도 告身을 거두고 돌려주지 않는 폐단이 있다며 세종이 문제를 제기하였다.³⁹⁾ 이러한 사례들은 즉위교서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大明律》 기준 상 告身 追奪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追奪이 이뤄진 유형이다.

반대로 《大明律》에 따르면 응당 追奪되어야 할 告身을 보존한 사례도 이 시기에 발견할 수 있다. 세종 4년 8월에는 경미한 절차상의 실수를 범한 공조좌랑 윤환의 告身 追奪 여부에 대해서 세종은 ‘(만약 윤환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이 불충·불효죄가 아니면, 모두 告身을 거두지 않는다(罪雖大於此者, 若非不忠不孝, 則皆不奪告身)’고 하였다.⁴⁰⁾ 물론 사건 자체는 미미한 公罪를 범한 윤환에 대한 것이지만, 세종의 발언은 公·私罪를 막론하고 중죄가 아니라면 굳이 告身까지 追奪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역시 《大明律》이 명시하는 바와는 다르다.

세종 5년 1월에는 公罪에 대해서는 杖60부터 1등을, 私罪는 2등을 追奪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杖100에 이르면 告身을 모두 거두는 제도가 마련되었다.⁴¹⁾ 이후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 7년 12월 이전까지는 대체로 위

38) 《太宗實錄》卷31, 태종 16년 5월 14일 을사 ①.

39) 《世宗實錄》卷3, 세종 1년 3월 6일 경술 ⑤.

40) 《世宗實錄》卷17, 세종 4년 8월 19일 계묘 ⑥.

41) 《世宗實錄》卷19, 세종 5년 1월 27일 기유 ③.

도표의 ‘세종 5년 1월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²⁾ 적어도 세종 7년에 이르기까지는 단지 기준에 品階에 따라 告身을 거둔 것을 正從으로 差等を 두어 告身을 거두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만 있었다.⁴³⁾

세종 5년의 기준은 公罪에까지 告身 追奪을 가한다는 점에서 《大明律》의 방식과 다른 고유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세종 7년 12월 《大明律》 기준에 일치되도록 재차 수정되었다. 정리하자면, 公罪는 追奪하지 않고 私罪만 杖60에 1등, 杖70에 2등, 杖80에 3등, 杖90에 4등, 그리고 杖100에 이르면 告身을 모두 追奪하는 방식이 확정되었다.⁴⁴⁾ 이는 官員들이 公罪에 해당하는 사유로 빈번히 職牒을 박탈당하는 것이 欽恤하는 뜻에 부합하지 않으며, 《大明律》의 취지에도 어긋났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기준에 대해 세종은 처벌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으나⁴⁵⁾, 결국에는 《大明律》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이외에 세종조에는 輕罪가 먼저 발각되었는데 이 罪로는 職牒이 追奪되지는 않았다가, 이후 職牒을 追奪할 만한 重罪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差等的으로 職牒을 追奪토록 하였다.⁴⁶⁾ 이는 《大明律》의 [二罪俱發以重論]의 法理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⁴⁷⁾

성종조에 반포된 《經國大典》의 〈刑典〉 [推斷] 條는 《大明律》에 따른 告身 追奪 체계를 재확인하는 규정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私罪를 지어 杖60에 처한 관원은 왕에게 아뢰어 告身 1등을, 杖 70은 2등, 杖80은 3등, 杖90은 4등, 杖100은 모든 告身을 追奪하여 吏曹와 兵曹로 보낸다. 매 품계마다 正·從으로 나누어 등급을 정하며 자신의 품계보다 높은 직책을 받거나 지낸 적이 있는 자 및 범죄 이외의 사유로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 자 등도 모두 함께 처준다. 告身을 갖고 도망쳐서 숨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령이 있다

42) 《世宗實錄》 卷19, 세종 5년 2월 15일 병인 ④ ; 《世宗實錄》 卷19, 세종 5년 3월 12일 계사 ③ ; 《世宗實錄》 卷20,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⑨.

43) 《世宗實錄》 卷25, 세종 6년 7월 19일 임진 ③.

44) 《世宗實錄》 卷30, 세종 7년 12월 19일 갑신 ⑥.

45) 《世宗實錄》 卷52, 세종 13년 5월 22일 을유 ②.

46) 《世宗實錄》 卷53, 세종 13년 9월 5일 병인 ②.

47) 《大明律》〈名例〉第25條 [二罪俱發以重論] 條, “凡二罪以上俱發 以重者論, 罪各等者從一科斷. 若一罪先發 已經論決 餘罪後發, 其輕若等勿論, 重者更論之 通計前罪 以充後數. 其應入官·賠償·刺字·罷職·罪止者 各盡本法 ….”

라도 역시 追奪한다.⁴⁸⁾

[推斷] 條의 규정은 杖刑 이상의 私罪에 한정하여 告身을 追奪한다는 점에서 앞선 《大明律》의 [文武官犯私罪] 條와 동일하며, 결국 조선이 公罪까지도 告身을 거두도록 한 세종 5년의 특례규정으로부터 《大明律》로 2년 만에 회귀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杖數	세종 5년 1월 기준		세종 7년 12월 기준	《大明律》《經國大典》
	私罪	公罪	私罪 ⁴⁹⁾	私罪
杖60	2等 回收	1等 回收	1等 回收	1等 回收
杖70	3等 回收	2等 回收	2等 回收	2等 回收
杖80	4等 回收	3等 回收	3等 回收	3等 回收
杖90	5等 回收	4等 回收	4等 回收	4等 回收
杖100	職牒 모두 回收	職牒 모두 回收	職牒 모두 回收	職牒 모두 回收

【표 1】世宗朝 告身 追奪 방식의 변화 양상

한편 성종조에는 杖數와 追奪될 告身の 等數가 정확히 표기된 기록이 다수 등장한다. 예컨대 성종 2년 5월 13일 강원도 관찰사 이극기의 贓罪에 대해 “杖80에 告身3등을 거둘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啓聞은 杖刑의 數에 대응하는 告身の 追奪 체계를 의금부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성종 13년 9월 8일 유완의 妾이 妻를 때린 綱常罪 사건은 《大明律》기준에 부합한 《經國大典》[推斷] 條가 조선에 완전히 정착하였음을 보여준다. 본래 律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杖90·告身 4등 追奪인데, 사헌부는 사안의 심각함을 고려해 告身을 모두 거둘 것을 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律에 따라 贖杖 90·告身 4등 追奪을 고수 하자는 洪응·노사신의 의견이 관철되어 刑律의 적용과 그에 따

48) 《經國大典》〈刑典〉「推斷」條, “…… 犯私罪杖六十者, 啓聞, 追奪告身一等, <每品分正·從爲等, 越等守職者, 曾經守職者, 非因罪犯未出謝者皆並計> 七十, 二等, 八十, 三等, 九十, 四等, 一百, 盡行追奪送吏·兵曹, <持告身逃匿者, 經赦亦奪>.”

49) 《大明律》〈名例〉第7條 [文武官犯公罪] 條에서는 公罪에 대해 職牒을 거두지 않음.

른 告身 追奪이 이루어졌다.⁵⁰⁾

그러나 성종조에도 여전히 존재한 예외 사례는 제도의 정착이 완전무결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성종 4년 7월에는 중 설준이 사찰로 부녀자들을 들인 잘못을 논죄하는 과정에서 贖杖 80으로 징계하면서 정작 그에 상응하는 告身 3등의 追奪은 집행되지 않았다.⁵¹⁾ 당시 홍귀달은 《經國大典》〈刑典〉[推斷] 條의 告身 追奪 규정을 직접 언급하면서, 收贖된 杖刑에 대해서도 告身の 追奪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⁵²⁾

한편 告身 追奪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죄에 대해 追奪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아들을 강제로 혼인시킨 백성수 이원에 대해서 《大明律》의 해당 규정에는 笞 50에 해당하지만⁵³⁾, 強婚의 풍속이 만연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논의 끝에 告身을 거두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바로 그러하다.⁵⁴⁾ 성종 13년 3월에는 마땅히 적용할 律이 없어 笞刑에 해당하는 비슷한 내용의 조문을 대신 적용(引律比附)했음에도 告身을 거둔 사례가 있었다. 당시 강희맹·최철관 등이 賑恤使로 이동하던 중 인솔한 인원·馬匹의 수가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臺諫이 무리하게 탄핵한 잘못이 있었다.⁵⁵⁾ 그런데 부당한 탄핵을 잘못 감행한 이들에 대해 적용된 律은《大明律》〈吏律〉[上書奏事犯諱] 條에서의 ‘보고하는 데 착오가 있어 업무에 지장이 있는(申六部錯誤 有害於事者) 경우 笞 40에 처하는 등의 가벼운 처벌이었다.⁵⁶⁾ 제대로 된 律이 적용되었느냐는 성종의 질문에 우승지 이

50) 《成宗實錄》卷146, 성종 13년 9월 8일 계묘 ③.

51) 《成宗實錄》卷32, 성종 4년 7월 27일 병진 ③.

52) 《成宗實錄》卷33, 성종 4년 8월 8일 정묘 ⑦.

53) 《大明律》〈戶律〉第124條 [嫁娶違律主婚媒人罪] 條에서의 위법한 혼인을 성사시키려고 한 主婚者 등에 대한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其男女被主婚人威逼 事不由己 若男年二十歲以下及在室之女 亦獨坐主婚 男女俱不坐 … <定而未成婚者 卽笞五十之類> ….”

54) 《成宗實錄》卷161, 성종 14년 12월 14일 계유 ⑤.

55) 이에 대해서는 《成宗實錄》卷139, 성종 13년 3월 4일 임신 ①에서 알 수 있는데, 성종은 최철관 등의 잘못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논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반면, 무리한 탄핵을 감행한 대사헌 김승경 등에 대해 오히려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56) 《大明律》〈吏律〉第67條 [上書奏事犯諱] 條, “… 若上書及奏事錯誤 當言原免而言不免, 當言千石而言十石之類 有害於事者 杖六十, 申六部錯誤 有害於事者 笞四十, 其餘衙門文書錯誤者 笞二十. 若所申雖有錯誤 而文案可行 不害於事者 勿論 ….”

세좌는 ‘지은 죄가 律에 (완전히) 부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 아뢰는 실수를 한 경우는 해당 律 외에는 달리 적용할 律이 없습니다(罪狀似不合此律. 然以奏事錯誤照之, 則此外無他律)’고 답했다. 결국 성종은 해당 인원에 대해 職牒만 거두게 하였는데⁵⁷⁾, [上書奏事犯諱] 條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杖刑에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告身을 거둔 것이다. 위의 예외사례들은 명시적인 追奪 기준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 왕의 판단 결과 기준 외의 告身 追奪이 이뤄질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 밖에도 《經國大典》에서는 《大明律》의 告身 追奪 체계에 기초하여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告身을 追奪하도록 보완규정을 명시하였다. 앞선 [推斷] 條가 《大明律》[文武官犯私罪] 條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확인규정이었다면, 《經國大典》에서 별도로 규정한 보완규정들은 축적된 受敎를 토대로 특별히 告身 追奪을 명시한 것이다. 태종 9년 6월에는 농사 현황을 실수로 잘못 보고한 안노생의 職牒을 거두도록 하였는데⁵⁸⁾, 이후 성종조 《經國大典》〈戶典〉[收稅] 條에서도 守令이 허위로 凶作 신고한 것이 고의이면 罷黜에 그치지 않고 告身 追奪 및 영구히 서용치 않도록(永不敍用) 규정하였다.⁵⁹⁾ 武班의 署經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職을 받은 軍士가 이전의 告身을 適時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새로 받은 職의 告身을 거두었지만⁶⁰⁾, 兩界와 같이 변방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200일로 늘려서 편의를 제공하였다.⁶¹⁾ 한편 追奪·還給 절차에 관련된 규정도 《經國大典》에서 다루었다. 〈吏典〉[薦舉] 條에서는 告身 追奪者 명단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였는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 告身을 돌려줄 대상

57) 《成宗實錄》卷139, 성종 13년 3월 18일 병술 ②.

58) 제3장 제1절 ‘5. 직무상 과실·태만·기강해이 등’ 항목에 더욱 자세히 설명하였다. ; 《太宗實錄》卷17, 태종 9년 6월 3일 갑진 ①.

59) 《經國大典》〈戶典〉[收稅] 條, “…… 守令則十負以上罷黜, 其知情妄冒者, 追奪告身, 永不敍用.”

60) 《經國大典》〈兵典〉[告身] 條, “軍士五品以下受遞兒職者即成告身, 各其入直日, 本曹入直堂上官考前受告身分給, 受祿後, 司憲府·司諫院檢覈, 滿二朔不納前受告身者, 收其告身并徵其祿. …… <彭排·隊卒, 徵月俸 ○ 凡無祿者, 司憲府·司諫院檢覈後, 成給 ○ 兩界軍士告身, 送于其道, 觀察使考前受告身分給, 受祿後, 滿二百日不納前受告身于司諫院者, 亦收告身徵祿>.”

61) 제3장 제3절 ‘2. 署經의 未備에 따른 告身 追奪’ 항목에서 주로 다루었다.

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행과정을 규정한 것이다.⁶²⁾ [考課] 條에서는 근무 평정에서 下等을 맞거나 私罪로 罷職된 관원은 파직된 지 2년 뒤에, 중친 등은 1년 뒤에 敍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告身을 追奪당하였다가 돌려받은 경우에는 파직된 시기를 기점으로 계산하여 돌려주도록 하였다.⁶³⁾ 선행연구에서는 告身の 還給도 마찬가지로 追奪된 지 2년 뒤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았는데, 이 문제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敍用과 告身 還給의 관계를 아울러 제4장 제1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특별 규정	受教	條文
수령의 허위 凶作 신고에 대한 처벌	《太宗實錄》 卷17, 태종 9년 6월 3일 갑진 ①	《經國大典》〈戶典〉[收稅] 條
武臣의 告身 제출기한 연장	《成宗實錄》 卷47, 성종 5년 9월 17일 기사 ②	《經國大典》〈兵典〉[告身] 條
告身 還給 대상자 선별을 위한 보고	《太宗實錄》 卷16, 태종 8년 11월 27일 신미 ①	《經國大典》〈吏典〉[薦舉] 條
告身 追奪된 관원의 敍用 기한	《成宗實錄》 卷93, 성종 9년 6월 25일 을묘 ②	《經國大典》〈吏典〉[考課] 條

【표 2】 《經國大典》의 告身 관련 특별규정 형성 과정

제2절 告身の 追奪과 還給의 성격

1. 부가형적 성격

告身 追奪의 가장 두드러진 법적 성격은, 主刑을 보완하여 병행 적용되는 附加刑의 성격이다. 물론 현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刑의 종류 9가지 중에서는 몰수만을 부가형으로 볼 뿐, 告身 追奪에 대응할 수 있는

62) 제4장 제1절 ‘1. 징계의 유효기간’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 《經國大典》〈吏典〉「薦舉」條, “…… 凡收告身及罷職者, 每冬·夏季月 具罪名 啓聞<兵曹同>.”

63) 역시 마찬가지로 제4장 제1절 ‘1. 징계의 유효기간’ 항목에서 살펴보겠다. : 《經國大典》〈吏典〉「考課」條, “…… 褒貶居下等及犯私罪罷職者, 經二年乃敘 <議親·功臣居下等者, 經一年. 堂上官 不在此限. 收告身還受者 亦以罷職日始計. 兵曹同>.”

자격상실·자격정지는 부가형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물론 1948년 4월 법제편찬위원회에서 거주제한·자격상실을 부가형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검토 끝에 포함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⁶⁴⁾

반면 조선에서의 告身 追奪은 통상적으로 杖刑 이상의 私罪에 대해 杖·徒·流刑을 가하면서 병행하여 이뤄졌으므로 주된 형벌에 종속하여 이뤄진 부가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극히 드물게 告身만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⁶⁵⁾, 대부분은 主刑을 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告身の 差等的 追奪이 있었음은 앞선 제2장 제1절의 조선의 告身 관련 규정 논의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지극히 예외적인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杖60 이상의 主刑과 더불어 시행되는 징벌적인 성격을 갖는 처분으로서의 告身 追奪은 부가형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告身을 거두는 처분의 이러한 특성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告身の 追奪 및 還給과 관련된 설명 전반에 걸쳐서 내재되어 있다. 사실 《大明律》의 체계를 따른 《經國大典》〈刑典〉[推斷]條의 差等的 追奪 구조에서부터, 개별 사안에 대한 告身 追奪의 특별규정에 이르기까지 告身 追奪은 本刑과 더불어 言渡·집행되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이번 연구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告身 追奪의 부가형적인 성격이 존재함을 미리 밝히는 선에서 그치고, 그 구체적인 實例는 논문 전반에 걸쳐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징계별적 성격

告身을 거두거나 돌려주는 처분에는 관원의 자격을 상실·회복시키는 징계별적인 효력도 존재하였다. 뒤의 제3장의 유형별 追奪 항목에서도 다루겠지만, 조선에서도 기강 해이 및 업무 태만을 이유로 관원의 告身을 거둔 사례가 존재한다. 심지어 公罪인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간혹

64) 신동운·허일태(편저), 『효당 업상섭 형법논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53·212-213면.

65) 예컨대 문종 1년에는 어물을 함부로 징발한 贓吏 신진보에 대해서 杖100에 해당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告身만 거두는 선에서 그쳤다. 《文宗實錄》卷9, 문종 1년 8월 22일 정해 ③.

告身을 거두는 예외도 있었는바, 이러한 사례들은 조선의 告身 追奪이 관원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쓰였음을 입증한다.

한편 징계로서 告身이 거둬진 관원은 관원으로서의 자격을 빼앗겼다. 앞서 살펴본 《唐律疏議》[無官犯罪 有官事發]條에서도 告身이 없는 관원은 無官으로 간주하였는데, 조선에서도 告身이 追奪된 자는 이전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관원 대우를 하지 않았다.

세종 27년 1월 告身이 追奪된 이정녕을 국정 논의에 참여토록 한 아래 실록의 기사는 告身 追奪의 징계별적인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

세종 : “이정녕이 오래도록 陵室 관련 사무를 맡았지만 최근에 죄를 지어 告身을 거두었다. 지금 陵室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정녕을 참여시키기 위해) 告身을 돌려주면, 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告身을 돌려주는 것이니) 징계한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갓을 쓰고 참여하게 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도승지 이승손 : “벼슬이 없더라도 왕의 명령에 따라 일을 맡으면 임시로 사모 쓰고 각대를 두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세종이 예조에 명을 내려, 이정녕에게 임시로 사모와 각대를 차고 末席에 앉아서 의정부 대신들과 함께 능실 제도 논의에 참여하게 하였다.⁶⁶⁾

당시 이정녕은 실제로 陵室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상당하였으므로⁶⁷⁾, 告身이 거둬진 상태였음에도 논의에 참여시키고자 한 데에는 이정녕의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활용하고자 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런 이정녕을 陵室 관련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를 두고 세종과 신하들이 굳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66) 《世宗實錄》卷107, 세종 27년 1월 20일 갑오 ①, “… (진략) … 又曰: “李正寧曾掌陵室諸事, 近得罪收告身。 今方議陵室之制, 若還告身, 則受罪日淺, 有違於懲戒, 使之着笠與議, 亦未穩, 何以處之?” 都承旨李承孫曰: “大抵雖無職者, 若承命治事, 則權着紗帽角帶, 例也。” 上從之, 遂傳旨禮曹: 李正寧與議政府, 同議陵室制度, 權着紗帽角帶, 從未隨參。”

67)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정녕의 陵室 관련 업무 참여 기록은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卷93, 세종 23년 8월 25일 기축 ① ~ 8월 28일 임진 ①; 《世宗實錄》卷96, 세종 24년 5월 16일 을해 ② ~ 5월 27일 병술 ①; 《世宗實錄》卷99, 세종 25년 1월 22일 무인 ① ~ 4월 9일 갑오 ③.

심지어 세종은 ‘(이정녕에게) 告身을 돌려주면 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告身을 돌려주는 것이니) 징계하는 의미가 없다(若還告身, 則受罪日淺, 有違於懲戒)’고 우려하기까지 한다. 물론 도승지 이승손이 告身이 追奪됨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있으면 특별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결과 이정녕도 陵室 관련 논의에 참여하긴 하지만, 그나마도 ‘末席에 앉아야만 했으며(從末隨參)’, 정작 告身은 이로부터 4개월 뒤인 세종 27년 5월 가뭄으로 인한 대규모 告身 還給을 통해서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⁶⁸⁾ 심지어 이정녕 참여를 결정한 날로부터 바로 하루 뒤에 사헌부는 아래와 같이 극력 반대하기에 이른다.

사헌부 : “이정녕은 죄인이니 의정부 논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는 나라의 모범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상이라도 덕망이 높은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녕의 죄가 큰데도 그를 (의정부 논의에) 참여시키도록 하셨는데, 명령을 거둬주십시오.”

세종 : “이번 일만 예외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사헌부 : “잠시 동안이라도 의정부에 죄인을 참여시킬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의논하게 해야 합니다.”

세종 : “移御所는 길이 멀어서 대신들이 오고 다니기 불편하며, 또 이정녕이 이미 궐내에 출입하고 있으니, 의정부에서 잠깐 의논한들 무슨 문제이겠는가.”

사헌부 : “신하로써 不忠보다 더 큰 죄가 없는데, 이정녕이 지은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종 : “이정녕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아 더 처벌하지 않은 것인데, 다시 금 처벌을 논의할 수는 없다.”⁶⁹⁾

사헌부는 이정녕을 국정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죄인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되었다. 사헌부는 告身이 追奪당한 상태였던 이정녕을 죄인이라 칭하며, 의정부는 죄인이 있을 곳이 못 된다는 주장까지 펼치며 그의 참여를 막으려 했다.

세종은 끝내 사헌부의 이정녕 탄핵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68) 《世宗實錄》卷108, 세종 27년 5월 11일 갑신 ②.

69) 《世宗實錄》卷107, 세종 27년 1월 21일 을미 ②.

를 의정부의 국정 논의에 참여시킨 일이 통상적인 경우가 아님은 인정하였다. 그 밖의 사유로 든 대신들의 왕래 편의·이정녕이 궐내에 출입할 수 있었던 사정·이정녕이 지었던 죄의 애매모호함 등 역시 문제의 본질인 ‘告身이 追奪당한 죄인’이 ‘관원과 마찬가지로 국정 사무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궁색하다.

따라서 위 두 기사는 告身을 追奪당한 관원이 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관원으로서 대우받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위 사례에서 이정녕은 告身 追奪로 인해 관원으로서의 자격 역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告身을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주면 징계의 의미가 없다는 세종의 걱정은, 告身 追奪이 非違를 저지른 관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성격이 있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만약 告身の 追奪이 관원의 자격 여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면, 애초에 세종이 이정녕 참여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징계의 의의 등을 云云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사헌부의 탄핵 논의에 대해서도 보다 단호한 의사를 표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정녕의 자격 없음을 전제로 두고 참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때문에 이정녕이 의정부 논의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는 관원으로서 참여했다기보다는 陵室 문제에 관한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옳다.

이후 告身 追奪, 그리고 還給에까지 걸쳐 지속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바로 위 이정녕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관원 자격증으로서의 告身の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告身이 어떤 경우에 追奪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곧 어떤 경우에 관원 자격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告身 還給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로로 상실된 관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살펴 볼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제3·4장에 걸쳐 정리할 내용은, 告身 追奪의 징계별적 성격을 전제로 하면서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3. 명예형적 성격

告身 追奪 및 還給은 명예형적 측면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형벌은 그 자체로 처벌받는 대상의 사회적 위신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예형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死者의 告身을 追奪 혹은 還給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명예형적인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미 죽은 관원의 告身을 빼앗는 것이 적어도 사망한 당사자 본인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없음은 분명하다. 亡者가 생전에 追奪당한 告身을 돌려주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본인에게 혜택이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死者에 대한 告身 追奪·還給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규정된 이유는 관원 자격의 상징인 告身을 거두고 되돌리는 처분이 관원의 명예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蔭職 등 조상의 덕을 입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자손에게도 죽은 조상의 명예를 지키거나 회복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앞서 唐律의 告身 관련 규정에서 살펴보았지만, 《唐律疏議》[除名]條는 자식의 모반 등 죄로 인해 死者인 관원의 告身을 거두지는 말도록 하였다. 《唐六典》에서도 원칙적으로는 死者의 告身을 거두지 않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죄에 대해서는 追奪하도록 하였다. 조선에서는 《續大典》〈刑典〉[赦令]條에 같은 죄를 짓고 流刑에 처해졌다 도중에 죽어 赦免令에도 불구하고 放免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왕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지만⁷⁰⁾, 《大明律》·《經國大典》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조선 초기의 死者 告身 追奪·還給 양상을 통해 명예형적인 성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 및 受教를 정리·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선 초기 死者의 告身 追奪은 生前의 잘못이 해당 관원의 사망 이후에 드러났을 때 죽은 관원의 告身을 追奪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追奪하거나 하지 않는 등 상반된 결과가 조선 초기 혼재되어 있다.

70) 《續大典》〈刑典〉[赦令]條, “… ○同罪被謫, 而生者蒙放收敕, 死者仍在罪籍則每赦令, 義禁府具罪目別單稟旨 … .”

먼저 死者의 職牒을 거두지 않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태종 7년 11월 不忠 혐의를 받은 민무구 등과 연루된 신극례에 대한 臺諫의 職牒 追奪·籍沒 요구를 신극례가 이미 죽어 죄를 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태종이 거부하였으며⁷¹⁾, 거듭된 追奪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극례의 告身은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⁷²⁾

세종 21년 11월에는 亂臣 박습의 딸인 妻와 이혼한 뒤에도 관계하여 낳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려 한 권담의 죄를 묻지 않도록 했는데⁷³⁾, 이러한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는 세종의 해명은 아래와 같다.

권담은 공주⁷⁴⁾의 아들이며 八議에 해당하는 친족이니 어찌 죄를 줄 수 있겠는가. 하물며 그가 죽지 않았다면 죄를 논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권담이) 죽었고, 그 죄가 不忠·不孝의 죄도 아닌데 이미 죽은 뒤에 어찌 가벼이 告身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⁷⁵⁾

권담이 追奪을 면한 데에는 선왕의 외손자라는 신분상의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 밖에도 세종이 권담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권담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 역시 告身 보존에 영향을 끼쳤다. 권담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로 문종 1년 9월 聖節使로 파견된 박이창이 규정 이상의 미곡을 지참한 잘못이 드러나 수치심에 자살한 사건에서, 자살 행위를 不忠으로 간주하여 告身을 거두자는 탄핵을 문종이 거부하기도 했다. 이는 문종이 박이창이 범한 죄를 重罪로 여기지 않았으며, 박이창이 자결한 것에 대해 동정하였기 때문이었다.⁷⁶⁾

반면 死者의 告身을 거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세종 4년 1월에는

71) 《太宗實錄》卷14, 태종 7년 11월 1일 신해 ②.

72) 《太宗實錄》卷14, 태종 7년 11월 11일 신유 ① ; 《太宗實錄》卷18, 태종 9년 10월 27일 을축 ② ; 《太宗實錄》卷18, 태종 9년 12월 1일 무술 ③.

73) 《世宗實錄》卷87, 세종 21년 11월 22일 병인 ③.

74) 권담의 父 길창군 권규의 卒記(《世宗實錄》卷11, 세종 3년 4월 3일 을미 ②)로부터 권담이 태종의 딸인 경안공주의 아들임을 파악할 수 있다.

75) 《世宗實錄》卷87, 세종 21년 11월 23일 정묘 ③, “… (전략) … 然聃, 公主之適子, 而且八議之親, 何可罪乎? 矧聃不死, 則議罪可也, 今已死矣, 固非不忠不孝之罪, 則何以輕奪告身於已歿之後乎? … (후략) ….”

76) 《文宗實錄》卷9, 문종 1년 9월 21일 병진 ②.

이방간의 난(제 2차 왕자의 난) 가담 전과가 있음에도 공신에 책봉되었던 결성군 장담이 이미 죽었음에도 공신녹권과 職牒을 박탈하였고⁷⁷⁾, 세종 31년 5월에는 박승경 母子를 이간질한 원거어를 綱常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 死後에 告身을 거두었다.⁷⁸⁾ 문종 1년 8월 사사로이 사냥을 하다 사람을 죽게 하며 濫刑을 일삼은 경상도 절제사 신숙청이 이미 죽었고 赦宥에도 해당하지만, 告身을 거둔 이전 사례까지 제시하며 마찬가지로 거두도록 하였다.⁷⁹⁾ 세조 2년 7월에는 단종복위운동 관련자의 죽은 父의 告身을 거두도록 하였다.⁸⁰⁾

死後 告身の 還給은 문종조에 이르러서야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었다. 그 이전시기, 특히 세종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사안에 따라 還給하거나 하지 않는 등의 혼란이 있었다.

死者 告身 還給 肯定	死者 告身 還給 부정
《世宗實錄》 卷30, 세종 7년 11월 20일 을묘 ④	《世宗實錄》 卷37, 세종 9년 8월 1일 병진 ②
《世宗實錄》 卷54, 세종 13년 12월 26일 정사 ②	《世宗實錄》 卷69, 세종 17년 8월 7일 병오 ④
《世宗實錄》 卷79, 세종 19년 10월 12일 무진 ①	《世宗實錄》 卷120, 세종 30년 6월 9일 계해 ②
《世宗實錄》 卷79, 세종 19년 12월 9일 병인 ④	

【표 3】 世宗朝 死者 告身 追奪에 대한 실록 기록 비교

세종 7년 11월 세종은 김을신·안종약과 함께 이미 죽은 최윤복의 職牒도 돌려주도록 하면서, ‘이미 죽은 뒤에 사면을 당하였어도 예로부터 (職牒을 돌려준) 사례가 있으니, 모두 職牒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雖歿被赦, 古有其例, 竝還給職牒可也.)’며 死者에 대한 告身 還給을 정당화하고 있다.⁸¹⁾ 위 도표에서의 다른 死者 還給의 사례 역시 당상관으로서 職牒이 거둬진 상태에서 죽자 還給하며 비슷한 경우 아뢰도록 분부한 경우나⁸²⁾, 조사의의 난 연루자들 중 다른 가담자들보다 일찍 죽어 미처 還

77) 《世宗實錄》 卷15, 세종 4년 1월 19일 정축 ④.
 78) 《世宗實錄》 卷124, 세종 31년 5월 6일 을유 ④.
 79) 《文宗實錄》 卷9, 문종 1년 8월 22일 정해 ①.
 80) 《世祖實錄》 卷4, 세조 2년 7월 7일 갑술 ①.
 81) 《世宗實錄》 卷30, 세종 7년 11월 20일 을묘 ④.

給을 받지 못한 경우 뒤늦게나마 告身을 돌려주었다.⁸³⁾

그러나 세종 9년 8월 1일에는 死者의 告身 還給이 이뤄지지 않았다. 죽은 김과의 職牒을 돌려주길 청하는 아들 김수석의 간청에 대해 세종이 ‘그러나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으니 職牒을 還給하는 것은 달리 정한 바 없다(然身死已久, 還給職牒, 則無他例)’며 대신 김수석에게만 벼슬을 내리는 식으로 타협하고 있다. 이는 분명 세종 7년 11월 최윤복의 職牒을 돌려주었을 때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세종 17년 8월에는 아예 職牒을 거뒀던 자들에게 還給하기 위해 왕에게 아뢰는 과정에서 이미 죽은 사람의 경우 아뢰지 말도록 하여 못을 박기도 했다.⁸⁴⁾

세종 30년 6월에는 승정원에서 死者에게도 告身을 還給할 수 있도록 청하면서 본격적으로 해당 문제가 논의되었다. 승정원에서는 비록 職牒 유무가 죽은 사람에게 관계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러한 사실이 그 자손들의 四祖·神主에 기록될 일이며, 이로 인해 蔭職을 얻는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還給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죽은 지 오래되어 職牒을 還給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세종과 세자⁸⁵⁾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록 追奪된 때가 오래되었더라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還給해야 하며, 같은 죄를 짓고도 죽은 사람은 告身을 還給받지 못하는 반면 생존한 사람은 還給받는 모순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면서 처벌 및 사면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하였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로 알기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오래 전 일이라도) 알 수 있으면 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의논하여 줄 만하면 돌려주어도 좋습니다. 만약 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이 죽고 나서 (아직 살아있는) 아홉 사람은 도로 받고 (죽은) 한 사람은 받지 못하면,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⁸⁶⁾

82) 《世宗實錄》卷54, 세종 13년 12월 26일 정사 ②.

83) 《世宗實錄》卷79, 세종 19년 12월 9일 병인 ④.

84) 《世宗實錄》卷69, 세종 17년 8월 7일 병오 ④.

85) 훗날의 문종으로, 당시 세종이 臥病 중이었으므로 代理하고 있었다.

86) 《世宗實錄》卷120, 세종 30년 6월 9일 계해 ②, “… (전략) … “久遠難知者則已矣, 其所可知者, 論其輕重, 可給則給可也。 假若十人犯罪, 竝收職牒, 一人身沒之後, 九人還受, 而一人未受, 則罪同罰異, 豈不深可惜也?” … (후략) ….”

물론 승지들의 주장이 세종조에는 관철되지 않았는데, 승지들 가운데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좌승지 조서안은 죽은 자의 職牒을 돌려주지 말도록 하라는 이전의 傳旨와 당시 좌의정이던 하연이 ‘빼앗긴 職牒은 끝내 돌려주지 못한다(見奪職牒, 終當不還)’고 한 발언까지 인용하여 극력 반대하였다. 여기서 조서안이 언급하는 ‘死者의 告身 還給을 금하는 傳旨’란, 내용상 세종 17년 8월의 教旨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그러한 결정이 이미 세종 17년에 내려지고, 13년 뒤인 세종 30년에도 재차 확정되었음에도 이러한 결정에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존재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세종 30년의 결정 이후에도 死者로서 告身을 還給받은 사례들은 대상자의 사망 직후에 還給 여부를 논의하여 판단이 용이했던 경우이다. 세종 30년 8월에는 홍사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職牒을 돌려주도록 조치하였는데⁸⁷⁾, 그는 5개월 전에 경상도 處置使로서 병선·군사를 함부로 몰고 섬에서 사냥을 하다가 배를 침몰시키고 군사 여럿을 죽게 만들어 告身이 거뒀진 바 있었다.⁸⁸⁾ 그럼에도 사망 직후에 告身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지어 追奪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여 죄의 輕重을 따져서 還給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에서 소·말을 도축한 죄로 강진에 安置되어 가던 도중 죽은 이덕생의 職牒을 돌려준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⁸⁹⁾ 특히 이덕생의 경우 종친으로서 朝會를 정지하고(停朝) 賻儀를 보내는 등(致賻)의 예를 표하고자 하였지만 職牒이 거뒀진 상태로는 이것이 어려웠으므로, 지은 죄가 무겁지는 않다는 판단 하에 같이 거둔 科田과 더불어 돌려준 것이다.

死者에 대한 告身 還給은 문종조에 최종적으로 허용되었다. 문종 1년 11월 輪對에서는 세종 30년 6월에 승지들이 제기하였던 死者 告身 還給의 근거들이 재차 제시되었다. 즉, 자손들의 蔭職 혜택·神主에의 기록

87) 《世宗實錄》卷121, 세종 30년 8월 30일 계미 ②.

88) 《世宗實錄》卷119, 세종 30년 3월 26일 신해 ③.

89) 《世宗實錄》卷125, 세종 31년 7월 10일 무자 ③.

문제, 같은 죄를 짓고 還給받은 다른 생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죽은 자의 告身을 還給하여도 좋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⁹⁰⁾, 결국 관철되었다.⁹¹⁾

이후 성종조까지의 사례는 문종 1년에 결정된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 세조 8년 4월에는 죽은 김구의 告身을 돌려주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김구는 같은 해 3월 고향이 격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신을 무고하여 告身이 追奪된 바 있었다.⁹²⁾ 세조는 그가 살아있었다면 告身을 돌려주었을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죽은 뒤이니 還給하는 의미가 없음을 우려하였지만, 신숙주 등은 告身이 있어야 致賻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결국 還給토록 하였다.⁹³⁾ 세조 12년 講論을 실수하여 定役되고도 徭役에도 나오지 않아 결국 참형에 처해진 김종런의 경우에도⁹⁴⁾, 성종 11년 12월 告身을 돌려주었다.⁹⁵⁾

종합하면, 死後 追奪 여부는 死者가 생존할 시 지은 죄의 輕重에 따라 결정되었다. 예컨대 綱常·不忠 등 중범죄를 위주로 死者의 告身 追奪이 이뤄졌으며, 이는 해당 범죄가 死後에도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追奪을 면한 신극례·권담의 사례는 不忠·不敬으로 판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왕의 판단에 따라 告身이 거뒀지지 않았고, 濫刑 등 그보다는 죄가 가벼운 신숙청은 告身을 빼앗겼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때문에 죄의 輕重을 판단하는 최종 결정권자인 국왕의 판단이 死者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追奪 여부 결정에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死後 還給은 형평성 및 자손에 대한 혜택 문제를 감안하여 문종조에 허용되었다. 특히 자손에 대한 혜택과 관련하여 告身の 死後 還給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蔭敍制는 고려에 비해서는 혜택은 줄고 절차

90) 《文宗實錄》卷10, 문종 1년 11월 11일 을사 ②.

91) 《文宗實錄》卷10, 문종 1년 11월 12일 병오 ① ; 《文宗實錄》卷10, 문종 1년 11월 13일 정미 ①.

92) 《世祖實錄》卷28, 세조 8년 3월 6일 신축 ①.

93) 《世祖實錄》卷28, 세조 8년 4월 9일 갑술 ②.

94) 《世祖實錄》卷40, 세조 12년 12월 26일 계해 ②.

95) 《成宗實錄》卷124, 성종 11년 12월 11일 병진 ③.

는 까다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제도와 더불어 인재 선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관직임용 및 승진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⁹⁶⁾ 과거 급제에 비해 격이 떨어지지만, 음서제도는 양반 관료계층이 자신의 지위·신분을 자손들에게 세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왕의 입장에서조차 지배계층이 관직으로부터 소외되어 왕권을 위협할 만한 불만을 품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신분적 특혜를 용인할 동기가 있었다.⁹⁷⁾ 그러므로 死者의 告身 還給은 죽은 관원의 追奪된 告身을 還給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려는 명분상의 이유와, 그에 기인하여 자손들에게도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내재된 사안이었다.

제3절 告身 追奪과 還給의 절차

告身 追奪은 통상적으로 관원의 각종 범죄 및 과오에 대한 논죄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죄를 지은 관원에 대해 司諫院·司憲府 등 諫院에서의 탄핵 내지는 의금부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告身の 追奪도 이루어졌다. 별다른 논의가 필요치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금부 啓聞 등을 왕이 윤허함으로써 告身の 追奪이 집행되었지만, 형량·징계 수준에 있어서 君臣간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까지 지체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선초기 臺諫의 언론활동은 彈劾이 53%, 제도 개편 및 개선을 건의하는 時政이 17.4%, 諫爭이 12.3%에 해당하는데⁹⁸⁾, 관원의 告身 追奪에 대한 촉구가 탄핵 과정에서 주로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告身 追奪의 최종적인 결정은, 비록 대신 등의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96) 박홍갑, 「혈연과 가문에 의한 등용, 문음제도」, 『오늘의 동양사상』 18,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8. 4. 106-111면.

97) 박홍갑, 위의 논문, 111-114면.

98) 최승희, 『朝鮮初期 言官·言論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236-239면. 그 외 조선초기 언론활동의 양상에 대한 자세한 통계 분석 자료는 해당 단행본의 242-309면 도표 참조.

왕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왕권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었다. 계유정난 직후 단종의 경우 實權이 수양대군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숙청된 안평대군 과 세력이었던 금성대군·염자치 등에 대해 追奪한 告身을 다시 還給하거나, 거두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사헌 최항 등으로부터 ‘어찌 법을 굽혀 사사로이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는가(豈可屈法而伸恩乎?)’는 비판까지 받았으며⁹⁹⁾, 결국 이들의 告身은 수양대군 일파의 거듭된 압박을 버티지 못해 追奪되었다.¹⁰⁰⁾ 한편 세조 7년 4월 함경도 都體察使 구치관이 野人 대비를 소홀히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수령의 告身을 거두고 充軍토록 조치한 기록이 있지만¹⁰¹⁾, 이는 최종 결정권자인 왕의 위임을 받아 일종의 대리권과 유사한 권한으로서 告身 追奪을 감행한 것이다. 실제로 세조 8년 4월에는 分巡御史를 파견하여 수령의 비리를 규찰하도록 하였는데, 분순어사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규찰 결과에 불복하는 지방관의 告身을 거두고 鞫問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⁰²⁾

追奪된 告身은 태종 초기까지는 刑曹·司憲府·義禁府가 追奪 대상자가 소속한各司로부터 해당 告身을 직접 收納하여 보관하는 방식이었으나, 태종 15년 3월 吏曹의 요청에 따라 문관은 吏曹, 무관은 兵曹가 受納하게 하였다.¹⁰³⁾ 다만 推鞫에 앞서 告身을 거둘 때에는 의금부에서 이를 관리하였으며, 하급 군관 등 軍士의 告身の 경우 태종 15년 3월 이전 방식대로 刑曹에서 담당하다가 세조 8년 10월 軍務와 관련된 일이라 하여 兵曹가 마찬가지로 追奪하여 관리하게 하였다.¹⁰⁴⁾

告身 還給의 결정도 追奪과 같이 신료들과의 논의를 거치되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 이후의 기록이기는 하나, 명종의 즉위 직후 大赦免에 따른 職牒의 還給을 논의하면서 吏曹에서

99) 《端宗實錄》卷13, 단종 3년 3월 1일 병오 ②.

100) 《端宗實錄》卷13, 단종 3년 3월 19일 갑자 ②.

101) 《世祖實錄》卷24, 세조 7년 4월 23일 계사 ①.

102) 《世祖實錄》卷28, 세조 8년 4월 17일 임오 ①.

103) 《太宗實錄》卷29, 태종 15년 3월 3일 신축 ③, “命犯罪人職牒, 東班收納吏曹, 西班兵曹, 從吏曹之請也. 先是, 刑曹·司憲府·義禁府決罪人職牒, 各收納於其司.”

104) 《世祖實錄》卷29, 세조 8년 10월 15일 병자 ①.

‘이전에 職牒을 거둘 때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기도 하였는데, 還給할 때도 (대신과)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但前日收之之時，有或與大臣議爲者，今當給之，亦與大臣議之何如?)’¹⁰⁵⁾는 건의를 하여 윤택한 기록을 참조하면, 告身의 追奪과 還給 모두 기본적으로 대신 등과의 의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종조까지의 告身 還給 논의 기록 중 일부만을 살펴보면, 태종 18년 3월에는 吏·兵曹에 분부하여 작년에 職牒을 거둔 자의 이름을 써서 아뢰도록 하였으며¹⁰⁶⁾, 세종 13년 9월과 12월에도 각각 여러 잘못을 저질러 告身이 거뒀던 자들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⁰⁷⁾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벌에 관한 사안은 왕의 權勢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君主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식되었다. 성종 9년 3월에는 허종이 군관 허맹손의 職牒을 내어줄 것을 요청한 것을 두고 鞫問토록 하였는데¹⁰⁸⁾, 이를 두고 같은 해 4월에는 ‘공이 있더라도 벼슬과 상을 내리는 명령은 마땅히 위(국왕)로부터 나와야 마땅하다(假令有功，爵賞之命當出於上)’는 이유로 거듭 처벌을 요청하였다.¹⁰⁹⁾ 비슷한 시기 병조판서 어유소의 비슷한 잘못에 대해서도 鞫問하도록 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¹¹⁰⁾

당연하지만 왕 역시 인사권자로서 告身을 거두고 돌려주는 자신의 권한에 대해 자각하였으며, 중대한 문제로 여겼다. 가뭄에 따른 사면 과정에서 職牒이 거뒀던 이들의 還給을 대신들과 의논하며 의견을 구하는 자리에서의 아래와 같은 성종의 傳敎는 告身 追奪·還給에 대한 爲政者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임사홍의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공신의 아들이라면 文班職으로 서용하지 않아도 祿俸은 잃지 않게 해야 하므로 告身을 還給하려는 것이다. 다만 지금 세 재상(영의정, 좌·우의정)의 말에 따라 주면 이것은 세 재상이 준 것이 된다. (하

105) 《明宗實錄》卷1, 명종 즉위년 7월 28일 무자 ②.

106) 《太宗實錄》卷35, 태종 18년 3월 21일 신미 ④.

107) 《世宗實錄》卷53, 세종 13년 9월 8일 기사 ④ ; 《世宗實錄》卷54, 세종 13년 12월 5일 병신 ③ ; 《世宗實錄》卷54, 세종 13년 12월 20일 신해 ⑨.

108) 《成宗實錄》卷90, 성종 9년 3월 22일 갑신 ①.

109) 《成宗實錄》卷91, 성종 9년 4월 5일 병신 ③.

110) 《成宗實錄》卷90, 성종 9년 3월 28일 경인 ②.

지만 관직을 베푸는 등의) 은혜는 윗사람이 베푸는 일이지 신하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¹¹¹⁾

당시 還給 논의에서는 현석규를 부당하게 비방하였다는 죄목으로 追奪된 임사홍의 職牒을 되돌려주는 문제로 대신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런데 대신들 중 현석규·임사홍과 같이 승지로 일했던 손순호가 과거 이력을 설명하며 임사홍을 변호하자, 성종은 손순호 및 그에 동조하는 대신들이 임사홍을 부당하게 옹호한다고 여겨 사간원으로 하여금 推鞠토록 한 것이다. 애당초 관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인사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당연시되던 조선시대였음을 감안하면, 告身을 거두거나 돌려주는 문제를 국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음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왕권이 불안정하다면 대신들 내지는 종친이 간섭하기도 하였다. 단종 즉위년 윤9월에는 황보인·김종서 등 대신들이 告身 還給 대상자 등 국정현안을 논의하면서 당시 宗親이던 세조에게 의견을 구한 기록이 있으며¹¹²⁾, 정희왕후가 어린 성종을 대신하여 垂簾聽政하던 시기에는 院相들과의 논의를 통해 還給 문제를 결정하였다.¹¹³⁾

告身 還給의 절차는 항상 일관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동일한 죄를 지었음에도 還給받는 시점에 차이가 생기거나 응당 還給받을 법한 인원이 누락되는 등의 허술함이 존재하였다. 세종 26년 윤7월 京外의 官員들이 거둬들인 죄인의 職牒을 吏·兵曹에 바로 보내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대로 보고하도록 당부하는 기사는¹¹⁴⁾, 告身 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還給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세종 4년 10월 2일 태종의 梓宮 方位를 잘못 잡은 죄로 職牒이 거둬진 관원들의 경우¹¹⁵⁾, 동일한 잘못으로 인해 거둬졌음에도 세종 11년¹¹⁶⁾.

111) 《成宗實錄》卷179, 성종 16년 5월 30일 기묘 ②. “… (전략) … 士洪之中心, 予未知何如也. 然功臣之子, 雖不敘東班, 義當不失其祿. 故予欲還給職牒. 但今聞三宰之語而給之, 則是三宰給之矣. 恩澤在上所爲, 非臣下所得擅也 … (후략) …”

112) 《端宗實錄》卷3, 단종 즉위년 윤9월 13일 임신 ②.

113) 《成宗實錄》卷5, 성종 1년 5월 9일 병술 ⑧ ; 《成宗實錄》卷18, 성종 3년 5월 23일 기미 ②.

114) 《世宗實錄》卷105, 세종 26년 윤7월 24일 신축 ①.

115) 《世宗實錄》卷17, 세종 4년 10월 2일 경신 ②.

세종 14년¹¹⁷⁾에 각각 還給 받았다. 비슷한 사례로 단종 1년 12월에는 남 형이 父 남수문의 《高麗史》 편찬 과정의 실수로 追奪된 告身을 還給할 것을 청하였는데, 같이 잘못된 권제·안지가 이미 還給받았음에도 남수문만 여기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¹¹⁸⁾

116) 《世宗實錄》卷43, 세종 11년 1월 4일 신해 ②.

117) 《世宗實錄》卷55, 세종 14년 2월 1일 경인 ①.

118) 《端宗實錄》卷9, 단종 1년 12월 28일 경술 ③.

제3장 告身의 追奪

제1절 告身 追奪의 유형

아래 항목에서는 조선 초기 실제 告身 追奪이 이뤄진 사례를 수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각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 관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범죄 및 非違의 종류를 정리하고, 告身の 성격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의 각 사례 유형 관련 실록 기사 횟수는 표로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 분류는 본 논문 〈부록〉에 정리하였다.

1. 노비·토지 관련 범죄

朝鮮 前期에는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奴婢를 둘러싼 소송비리·誤決시비 등 爭訟관련 문제가 잦았으며, 그 여파로 인한 告身 追奪도 주로 太宗朝를 기점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에서의 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종 5년과 14년에 각각 시행되었던 노비 신분 관련 지침에 따른 訟事의 폭주¹⁾과 관련이 있다. 한편 주로 세종·성종조를 중심으로 科田 등 토지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소송비리·誤決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한 告身 追奪이 있었는데, 대개 노비소송에서의 告身 追奪과 비슷하였다.

태종 5년(1412)에 정해진 노비 신분 기준에서는 賤人 남성 - 良人 여성의 혼인을 금하고, 그 사이에 난 자식은 屬公하도록 정하였다.²⁾ 다만 태종 5년의 기준은 사정을 알지 못한 노비 주인은 처벌하지 않고 노비도 屬公을 면하는 등의 면피규정을 두어 노비소유자인 관료 계층의 충격을 완화하고 노비 급증도 방지하고자 했다.³⁾ 태종 14년(1419)에는 賤人 여

1) 신소연, 『高麗後期 田民辨整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2015. 2. 202-206면.

2) 《太宗實錄》 권10, 태종 5년 9월 22일 갑인 ①.

3) 지승중,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95, 12-13면.

성 - 良人 남성의 소생은 양인으로 삼는 從父爲良法을 도입하였다.⁴⁾

위와 같은 지침은 관원계층을 포함한 노비소유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래 인용한 태종 5년 의 정부에서 노비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올린 20개항 條目 중 告身 追奪에 관련된 처벌 규정 일부, 그리고 10여년 뒤인 태종 17년에 추가로 정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당시의 혼란상을 되짚어볼 수 있다.

다른 약한 사람의 노비를 빼앗아 가진 자,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삼은 자, (노비 신분 관련 문서의) 문자를 위조한 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상속 등) 나눠 가져야 할 노비를 나누지 않거나 숨겨 독차지한 자, 담보로 맡긴 노비를 영원히 가지려는 자, (노비소송)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모함하여 소송을 거는 자 등이 거짓말을 하거나 억지를 부려 관청을 속이려 한다면, 관할 관청을 옮겨 告身을 거두고 杖80에 처하며 수군에 보충시킨다. 잘못하였음을 알고 화해하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 …… (노비송사를 판결하는) 관원이 教旨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파악하지 못해 잘못 판결하면 영원히 敍用하지 않는다. 사사로운 감정에 따르거나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였으면 告身을 거두고 杖100에 처하며, 수군에 보충시키고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다.⁵⁾

丁酉年(태종 17년 1월)⁶⁾에 양인 여부를 이미 판별한 노비임을 알고도 숨겨 일을 시킨 자는 告身을 거두고 杖100에 처하며, 수군에 보충한다. 노비가 일한 값은 계산하여 징수한다.⁷⁾

4) 《太宗實錄》卷27, 태종 14년 6월 27일 무진 ①.

5) 《太宗實錄》卷10, 태종 5년 9월 6일 무술 ②, “… (전략) … 一, 微劣人奴婢奪占者, 壓良爲賤者, 文字僞造者, 決後奴婢仍執者, 未分奴婢及漏落奴婢容隱合執者, 分執奴婢據執者, 典當奴婢永執者, 妄稱誤決訴訟者等, 如有飾辭強辨, 亂法瞞官, 則移關所司, 職牒收取, 決杖八十, 身充水軍. 知非和論者勿論 … (중략) … 一, 受判後, 決事官, 如有判旨不從, 偏聽飾辭, 不察情僞, 昏迷誤決者, 標付過名, 永不敍用. 人情好惡, 受贓誤決, 情狀現著者, 職牒收取, 決杖一百, 身充水軍, 永不敍用 … (후략) ….”

6) 《太宗實錄》卷33, 태종 17년 1월 25일 임자 ③.

7) 《太宗實錄》卷33, 태종 17년 윤5월 6일 신유 ①, “… (전략) … 一, 丁酉年案付奴婢, 如有知情容隱役使者, 依曾降教旨, 職牒收取, 決杖一百, 身充水軍, 計口役價生徵 … (후략) ….”

첫 번째 인용기사는 辨整都監에서 노비 관련 爭訟을 판결하며 축적한 판례를 토대로 노비의 신분 결정, 婢妾 所生의 대우, 贖良, 상속재산으로서의 노비 귀속 문제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정부가 총 20개의 규정으로 정리·종합한 것이다. 그 중 정당한 소유권 없이 타인의 노비를 점유하거나, 노비 소송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판결에 불복하는 등의 경우 모두 杖 80·水軍 充軍의 重罰과 더불어 職牒도 거두게 하였다. 노비 소송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관원에 대해서도 뇌물을 받고 誤決하는 등 고의적인 不正判決 역시 杖 100·水軍 充軍 및 職牒을 거두고 해당 관원을 영구히 서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두 번째 기사는 태종 17년 윤5월各司의 奴婢刷卷色⁸⁾에서 도망한 공노비임을 알면서도 숨기고 사사로이 부린 경우 杖 100·水軍 充軍·職牒 회수에 처할 것을 청하여 태종이 윤허한 내용이다.

위 두 기사와 같은 太宗朝 奴婢訟事에서의 告身 追奪 방침은 이후에도 준수되었다. 예컨대 세종 11년 10월 誣告罪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刑曹가 언급하고 있는 ‘乙酉年 受教’는 태종 5년 9월의 受教를 뜻한다. 세종 16년 5월에는 共謀하여 숙부의 奴婢文書를 위조한 正言 최정안 및 그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회유되어 문서를 통과시킨 김영륜·금유 등의 職牒을 거두었다.⁹⁾ 단종 2년 12월에는 노비 소송을 誤決한 관리에 대해 교체되기를 기다린 후(遞代)에 심리하면 심히 지체되기 때문에 사헌부로 하여금 즉시 살피게 하도록 하였는데¹⁰⁾, 여기서도 사정을 알고서 誤決한 자에 대해 杖刑·水軍 充軍과 함께 告身 회수·永不敍用 조치가 명시되었다.

태종 5년의 受教와 그에 따라 축적된 위 사례들은 상당수가 이후 《經國大典》〈刑典〉[私賤]條로 정립되었다. 예컨대 유산인 노비를 나눌 때 문서를 위조한 관원은 영원히 서용하지 않았으며, 거짓문서로 강제로 다른 사람의 노비를 차지하거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복하고 계속 점유

8) 奴婢刷卷色은 公奴婢가 도망하여 찾지 못하거나, 사사로이 부림을 받는 경우를 단속하기 위해 태종 15년(1415년)各司에 설치되었다. 이는 《太宗實錄》卷30, 태종 15년 8월 29일 기사 ②에 나타나 있다.

9) 《世宗實錄》卷64, 세종 16년 5월 6일 임오 ①.

10) 《端宗實錄》卷12, 단종 2년 12월 20일 병신 ③.

하는 경우 杖100 徒3년에 처하였다.¹¹⁾ 태종조의 受教에서는 해당 죄를 杖80으로 보았으므로 告身 3등 追奪에 처하였지만, 성종조의 관련 규정에서는 徒刑에 이르렀기 때문에 告身을 모두 追奪하도록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誤決한 관원에 대한 처벌은 《續大典》〈刑典〉[聽理]條에서부터 등장하며¹²⁾, 《經國大典》당시에는 아직 규정하지 않았다.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평균
회수(회)	1	·	23	21	3	1	3	2	15	7.67
年間회수 (회/년) ¹³⁾	0.14	·	1.28	0.64	1	0.25	0.21	1	0.58	0.57

【표 4】 조선 太祖朝-成宗朝 노비·토지 관련 告身 追奪 기사

奴婢 및 田宅 관련하여 告身을 거두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는 성종조까지 총 69건에 이른다. 자세히 살펴보면, 재위기간이 짧은 문종·단종·예종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奴婢 등 관련 사안으로 告身을 가장 많이 거둔 시기는 태종 집권기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비가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양반 관료계층이 자신들이 소유한 사노비의 屬公·良民化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직접적으로는 태종조의 연이은 노비 관련 법제의 개편과 변정도감의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노비 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탈법적인 수단까지도 동원했기 때문이다.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변정도감·장례원 등의 판정을 誤決이라며 불복¹⁴⁾, 노비 문건 위조 및 誣告¹⁵⁾, 강요에 의한 양인의

11) 《經國大典》〈刑典〉[私賤]條, ‘… <○僞造文記姦詐現著者, 移送他司, 更覈科罪, 永不敍用, 經赦則朝官永不敍用, 庶人徒三年.> … 據執他人奴婢及決後仍執者, 杖一百徒三年, 徵役價給主, 其不均分執者, 合執專利者, 論罪後, 其應得奴婢屬公. <田宅同.>’

12) 《續大典》〈刑典〉[聽理]條, ‘… 凡詞訟官違法聽理者, 以制書有違律論.’

13) 유형별 告身 追奪 관련 기사의 각 항목별 도표의 경우, 회수(회) 평균의 경우 태조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9명의 왕이 즉위하는 동안의 총 기록 건수에서 9를 나누었다. 年間회수(회/년) 평균은 총 회수에서 9명의 왕의 재위기간 총합인 103년을 나누어 표시하였다.

14) 예를 들면 《太宗實錄》卷23, 태종 12년 6월 5일 무오 ㉔.

15) 예를 들면 《太宗實錄》卷10, 태종 5년 11월 21일 계축 ㉑.

노비化¹⁶⁾, 관원의 노비소송 誤決¹⁷⁾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誤決 및 誤決 시비·증거 위조 등의 경우 전체 奴婢 관련 告身 追奪 62건 중 절반을 넘는 37건(59.7%)에 해당한다. 물론 노비소송을 誤決이라며 불복하고도 告身の 追奪을 면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¹⁸⁾, 이 경우는 공신 및 그 子弟가 연루되어 처벌이 경감된 예외사례이며 대개는 告身 追奪을 피하기 어려웠다.

태종 17년 6월 실록 기사에서 태종이 노비소송 관련 혼란에 대해 ‘노비 문제로 서로 소송하는 폐단이 있는데, 원고·피고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판결한 관리가 원한을 사게 된다(我朝臧獲相訟之弊, 非徒元隻之有怨, 抑亦結怨於決訟之吏.)’고 토로한 것은 해당 사안의 민감한 성격을 보여준다. 물론 그와 더불어 차라리 사노비를 혁파할 뜻을 내비친 태종에 대해 영의정 유정현이 ‘(사노비 제도는)동방의 오랜 전통이므로 갑자기 없앨 수 없다(東方故事, 不可遽革.)’¹⁹⁾며 반대한 장면은, 결국 ‘노비’라는 재산을 기반으로 한 관료계층에게 노비 관련 문제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음을 재차 확인시킨다. 더불어 관원의 자격 박탈을 의미하는 告身 追奪을 감수하고서라도, 노비를 확고히 보유하는 것이 물질적 토대로서 관료사회에 있어 중요한 것이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송을 가급적 삼가고자 했던 조선 사회에서²⁰⁾ 노비 문제로 인해 誤決 시비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杖刑·水軍 充軍·永不敍用 등의 조치와 더불어 職牒까지 거둔 이유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태종 16년에는 奴婢訟事에서 비록 誤決한 관원이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판결한 것이라면 告身은 거두지 말도록 하였는데²¹⁾, 《大明律》에서 공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公罪에 대해 告身 追奪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원의 미숙함으로 인한 誤決 역시

16) 예를 들면 《太宗實錄》卷29, 태종 15년 9월 2일 병신 ②.

17) 예를 들면 《太宗實錄》卷28, 태종 14년 윤9월 5일 을사 ①.

18) 《太宗實錄》卷28, 태종 14년 8월 25일 을축 ①.

19) 《太宗實錄》卷33, 태종 17년 6월 27일 신해 ④.

20) 정금식, 「분쟁과 재판」,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한국고문서학회 편, 역사비평사, 2013, 34-40면.

21) 《太宗實錄》卷31, 태종 16년 5월 6일 정유 ③.

公罪로써 追奪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토지 관련 告身 追奪 기사는 총 7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타인의 토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대개 杖80에 告身 3등을 追奪하는 처벌을 내렸는데, 대표적으로 성종 10년 4월 허위 문서를 토대로 田畝의 수확물을 빼앗은 조득림도 杖80은 면하였으나 告身 3등은 그대로 追奪당하였다.²²⁾

2. 贓汚罪

조선에서의 贓汚罪는 부정하게 취득한 재물 전반에 대해 적용되었다.²³⁾ 《大明律》〈名例律〉[給沒贓物]條에서는 ‘贓’을 官司로부터 빼돌렸으므로 도로 돌려주어야 할 官物,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 그리고 私人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탈한 贓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⁴⁾ 예컨대 官庫의 물건을 사사로이 쓰거나(監守自盜), 뇌물을 받은 대가로 법을 어기거나 어기지 않은 枉法·不枉法의 경우(官吏受財)도 贓汚罪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 밖에 조선에서는 守令이 지역의 해산물을 강제로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²⁵⁾, 규정 외에 함부로 군사들을 시켜 면포 등을 거둔 경우²⁶⁾, 심지어 오래된 무덤을 도굴하여 은기·유기 등을 가져간 경우에도 職牒을 거두고 贓吏案에 기록하기도 하였다.²⁷⁾

조선 전기에도 贓汚罪가 만연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유발되었다. 먼저 백성의 수령 고소를 금지하는 部民告訴禁止法으로 인해²⁸⁾ 지방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결과 부

22) 《成宗實錄》卷103, 성종 10년 4월 12일 무술 ③.

23) 서정민, 『朝鮮初期 官吏의 汚職犯罪에 관한 研究 : 贓汚罪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4. 2. 10-14면.

24) 《大明律》〈名例律〉第23條 [給沒贓物]條, “凡彼此俱罪之贓<謂犯受財枉法·不枉法 計贓爲罪者>及犯禁之物<謂如應禁兵器及禁書之類>, 則入官. 若取與不和, 用強生事, 逼取求索之贓, 並還主.<謂恐嚇·詐欺·強買賣 有餘利, 科斂及求索之類>. … (이하 생략) ….”

25) 《世宗實錄》卷32, 세종 8년 6월 6일 무진 ④.

26) 《成宗實錄》卷42, 성종 5년 5월 24일 무신 ③.

27) 《成宗實錄》卷117, 성종 11년 5월 11일 경인 ⑥.

28) 《世宗實錄》卷9, 세종 2년 9월 13일 무인 ④.

정부패가 증가하였다는 견해가 제시된다.²⁹⁾ 그 외에도 수령 임기의 장기화 및 자질 하락에 따른 부정부패 기회의 증가, 進上品 마련을 위한 필요 이상의 징수 및 착복 등 제도상의 허점도 贓汚罪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³⁰⁾ 때문에 이를 규율하기 위해 《大明律》·《經國大典》에서는 贓汚罪와 관련한 여러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일례로 告身과 관련해서도 《大明律》의 [官吏受財] 條에서 贓을 계산하여 관원의 告身을 거두는 규정이 적용되었다.³¹⁾

관직을 청탁하는 이른바 奔競 행위도 넓게는 贓汚罪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태종 1년 5월 奔競 행위자의 職牒을 거두도록 한 受教가 이미 있었는데, 이후 《經國大典》에서는 奔競을 저지른 자에 대해 杖100 流3,000리의 중벌을 내리도록 하여³²⁾ 奔競이 告身을 모두 거두는 정도에 이르는 중죄임을 다시금 분명히 하였다.

29) 앞서 贓汚罪에 대해 연구한 서정민은 贓汚 범죄를 유발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부민 고소금지법의 시행을 제시한 바 있다. (서정민, 앞의 논문, 72-81면) 다만 조선 전기 시행된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고소금지의 기준·朝官의 파견 및 의견 수렴 등 실질적으로 수령에 대한 고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른 수단으로 인해 부민고소금지법이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백승아, 「15·16세기 部民告訴禁止法の 추이와 지방통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8. 29-43면.

30) 서정민, 앞의 논문, 72-88면.

31) 《大明律》〈刑律〉第367條 [官吏受財] 條 “...凡官吏受財者 計贓科斷 無祿人各減一等 官追奪除名 吏罷役 俱不叙 ….”

32) 《經國大典》〈刑典〉[禁制] 條, “奔競者 <吏·兵曹諸將堂上官, 吏·兵房承旨, 司憲府·司諫院·判決事之家, 非同姓八寸·異姓·妻親六寸·婚姻家·隣里人而出入者> 杖一百流三千里…”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평균
회수(회)	4	·	14	42	6	5	26	2	45	16
年間회수 (회/년)	0.57	·	0.78	1.27	2	1.25	1.86	1	1.73	1.4

【표 5】 조선 太祖朝-成宗朝 贓汚罪 관련 告身 追奪 기사

贓汚罪 관련 告身 追奪 기록에서 재위기간이 짧은 문종·단종·예종조를 제외하였을 때, 贓汚罪 관련하여 告身을 거둔 횟수가 가장 많은 기간은 성종조이며, 다음으로 세종·세조조 순이다. 다만 재위기간을 고려하여 연간 追奪 회수를 따지면 세조-성종-세종조 순으로 계산할 수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贓汚罪로 인한 告身 追奪 관련 기사는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贓汚罪에 따른 처벌은 杖刑 및 徒流刑에 걸쳐 있었으며, 永不敍用·刺字刑 등이 告身 追奪과 함께 병행되었다.

조선은 贓汚罪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함을 자각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도 시도하였다.³³⁾ 우선 당시의 贓汚罪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세종 8년(1426년) 斬刑에 해당하는 장물을 받은 조말생은³⁴⁾ 追奪된 告身을 도로 돌려받은 세종 12년(1430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규탄 대상이 되었다.³⁵⁾ 문종 2년(1452년) 5월 역시 贓罪를 지은 이현로는 注書³⁶⁾에게 《承政院日記》에 기록된 본인의 贓罪 사실을 ‘重罪’로 모호하게 바꿔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으며³⁷⁾, 세조 13년(1467년) 12월 관물을 함부로 쓴 의영고 관원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職牒 회수 및 永不敍用과는 별개로 해당 관원을 贓吏로 논하자는 건의에 대해서 ‘죄는 비록 무거우나, 贓吏로 논할 경우 자손에게까지 연루되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罪雖至重, 若

33) 서정민, 앞의 논문, 89-109면.

34) 《世宗實錄》卷31, 세종 8년 3월 4일 무술 ⑤.

35) 조말생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은 서정민,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 조말생 뇌물사건의 재구성』, 살림, 2008, 13-198면.

36) 승정원의 정7품 관직으로 주로 《承政院日記》 기록 업무를 맡았다. 세조조 이후에는 실록 기록에도 참여하였으며, 중종반정 이후 폐지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37) 《文宗實錄》卷13, 문종 2년 5월 1일 기사 ①.

論以贓吏, 累及子孫, 不可爲也.)'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³⁸⁾ 특히 세조조에는 계유정난 등 정치적 변동으로 인한 관료사회의 급격한 교체가 있었는데, 세조조 이후의 贓汚罪 관련 告身 追奪 관련 기록 증가는 관원의 질적 저하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와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綱常罪 및 儒教倫理 違背

《經國大典》에서는 綱常罪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고, 단지 軍士의 처벌과 관련된 조건 중 하나로 언급하였을 뿐이다.³⁹⁾ 조선 후기에 들어서야 수령 모욕·무고 및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綱常罪의 범주로 설정하는 경향이 드러난다.⁴⁰⁾ 《續大典》〈刑典〉[推斷] 條에서는 부모·남편·주인·상관 등을 살해한 자식·아내·노비·부하관원을 綱常罪人으로 간주하였는데⁴¹⁾, 여기서 비로소 綱常罪 자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大明律》에는 '十惡'이라 하여 謀反·大逆·不孝 등의 죄를 重罪로 따로 규정하였는데⁴²⁾, 조선에서의 綱常罪는 이 十惡과 상당부분 중첩된다. 다만 조선 후기의 상황에 따라 수령에 대한 모욕 등 《大明律》에는 十惡으로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범죄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大明律》은 綱常罪 자체를 정의 내리진 않았으나 綱常罪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한다. 예컨대 부모의 喪을 당하여 이를 숨기는 경우에는 徒 1년에 이르렀으며, 관원이 父母喪을 다른 친족의 喪이라 숨겨 치르지 않거나 없는 喪을 있는 듯이 속인 등의 경우에는 杖 100과 더불어 罷職하고 敍用치 말게 하였다.⁴³⁾ 妻妾간의 위계질서도 분명히

38) 《世祖實錄》卷44, 세조 13년 12월 23일 을묘 ②.

39) 《經國大典》〈兵典〉[軍士還屬] 條 “犯罪軍士, 非盜及係干綱常者, 削仕還屬…”

40) 조윤선, 「朝鮮後期 綱常犯罪의 양상과 法的 대응책」, 『법사학연구』 34호, 한국법사학회, 2006. 10. 39-54면.

41) 《續大典》〈刑典〉[推斷] 條 “綱常罪人(弑父·母·夫, 奴弑主, 官奴弑官長者)結案正法後, 妻·子·女爲奴, 破家瀦澤, 降其邑號, 罷其守令.(從時居邑).”

42) 《大明律》〈名例〉第2條 [十惡] 條, “一曰謀反, 二曰謀大逆, 三曰謀叛, 四曰惡逆, 五曰不道, 六曰大不敬, 七曰不孝, 八曰不睦, 九曰不義, 十曰內亂 ….”

43) 《大明律》〈禮律〉第198條 [匿父母夫喪] 條, “…若官吏父母死 應丁憂, 詐稱祖父母·伯叔·姑·兄姊之喪 不丁憂者 杖一百罷職役不敍. 無喪詐稱有喪 或舊喪詐稱新喪者 罪同.”

하여, 처를 첩으로 삼거나 첩을 처로 삼는 등의 죄에 대해서도 대체로 杖刑으로 다스렸다.⁴⁴⁾ 간통의 경우에는 〈刑律〉[犯姦]條에서 강간과 더불어 규정하였으며, 이를 사사로이 화해한 자는 범인의 죄에서 2등을 감경하여 처벌함으로써 風紀紊亂을 방지하고자 했다.⁴⁵⁾

본 항목에서는 三綱五常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위반을 綱常罪로 폭넓게 설정하였다. 다만 광의의 綱常罪에서도 세부적으로는 군주인 王에 대한 不忠·不敬의 경우와, 가족 내부의 위계질서 문제, 그리고 姦淫·姦通의 부류는 재차 분류하였다. 아울러 외견상으로는 不忠·不敬에 해당하더라도, 무인정사·계유정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써 특히 刑이 중하고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역시 존재한다.

綱常 관련 告身 追奪 사례에서 不忠·不敬·不孝 및 夫婦關係와 관련된 사례는 크게 다를 것은 없다. 不忠·不敬의 경우 반역죄에 연루되거나 국왕 등에 무례를 범한 경우 告身을 追奪한 경우인데, 제2차 왕자의 난에 가담한 전과로 사후에 追奪당하거나⁴⁶⁾, 國喪 중에 기생과 간음하여 不敬을 범한 사례⁴⁷⁾가 바로 그러하다. 不孝는 母親喪을 당하고도 기생첩을 가까이 하거나⁴⁸⁾, 母·妻를 돌보지 않고 유기한 사례⁴⁹⁾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부부관계와 관련해서는 주로 妻妾간의 갈등 및 正妻에 대한 疏薄으로 인해 남편인 관원의 告身을 거두는 경우⁵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와 같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유형들과는 달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綱常罪, 특히 大逆을 적용하여 告身을 거둔 경우이다. 우선 戊寅定社⁵¹⁾·癸酉靖難⁵²⁾·단종복위

有規避者 從重論….”

44) 《大明律》〈戶律〉第109條 [妻妾失序]條, “凡以妻爲妾者, 杖一百, 妻在, 以妾爲妻者, 杖九十, 並改正…”

45) 《大明律》〈刑律〉第390條 [犯姦]條, “凡和姦 杖八十, 有夫 杖九十. 刁姦 杖一百 … (중략) … 若媒合容止通姦者 各減犯人罪一等. 私和姦事者 減二等.”

46) 《世宗實錄》卷15, 세종 4년 1월 19일 정축 ④.

47) 《端宗實錄》卷2, 단종 즉위년 7월 25일 병진 ⑤.

48) 《世宗實錄》卷42, 세종 10년 10월 20일 무술 ③.

49) 《世宗實錄》卷5, 세조 2년 9월 8일 을해 ②.

50) 《世宗實錄》卷85, 세종 21년 6월 8일 갑신 ②.

51) 《太祖實錄》卷15, 태조 7년 9월 21일 계사 ②.

운동⁵³⁾ 등은 大逆罪이므로 관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告身 追奪이 이뤄졌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大逆不道임에도 관대한 처분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실각한 태조 이성계가 아들 태종에 대해 반기를 든 조사의의 난 가담자 처벌의 경우에는 告身 追奪 등의 조치에 대해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태종 3년 1월 16일 조사의의 난에 가담한 박만 등의 職牒을 거두고 籍沒할 것을 臺諫이 청했으나 윤택하지 않았고⁵⁴⁾, 8개월 뒤인 태종 3년 9월 3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인원에 대한 追奪 등 처벌 조치가 이루어졌다.⁵⁵⁾ 한편 태종 18년에 이르러서 역시 조사의의 난 가담자로서 정용수·신효창의 職牒과 錄券을 아울러 거둘 것을 청하는 상소가 있었으나, 태종은 이들이 고의로 모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⁵⁶⁾ 결국 태종이 상왕으로 있던 세종 초기 조사의의 난 관련자들 다수의 職牒을 거두는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⁵⁷⁾, 그나마도 세종 8년에 대부분 還給받았으며⁵⁸⁾, 태종 말기에 문제가 되었던 신효창 역시 세종 18년 妾子의 등용 문제와 관련하여 告身을 돌려받는 등⁵⁹⁾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졌다.

조사의의 난은 태종 정권에 대한 명백한 반역행위로서 《大明律》〈名例律〉[十惡]條에 규정된 항목 중 謀反에 해당하는 重罪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告身 追奪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거나 미온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는 해당 사건이 태조와 태종이 대립한 왕실 내부의 민감한 사안이었던 탓에 철저한 처벌이 왕실의 위신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은 신효창의 職牒을 돌려주도록 한 조치에

52) 《端宗實錄》卷8, 단종 1년 10월 12일 을미 ⑤ ; 《端宗實錄》卷8, 단종 1년 10월 13일 병신 ③.

53) 《世祖實錄》卷4, 세조 2년 6월 26일 갑자 ④.

54) 《太宗實錄》卷5, 태종 3년 1월 16일 갑오 ③.

55) 《太宗實錄》卷6, 태종 3년 9월 3일 무인 ②.

56) 《太宗實錄》卷35, 태종 18년 4월 11일 신묘 ⑥ ; 《太宗實錄》卷35, 태종 18년 4월 13일 계사 3번째 기사.

57) 《世宗實錄》卷2, 세종 즉위년 12월 20일 을미 ⑦ ; 《世宗實錄》卷2, 세종 즉위년 12월 27일 임인 ③.

58) 《世宗實錄》卷32, 세종 8년 6월 2일 갑자 ③.

59) 《世宗實錄》卷76, 세종 19년 3월 20일 경술 ①.

대해 다시는 함부로 거론하지 못하게 하면서 ‘임오년의 일(조사의의 난)은 인륜의 변으로, 가볍게 입 밖에 내뱉어 사람들이 쉬이 알게 할 일이 아니다’(且壬午年之事, 人倫之變也, 不可輕易出口, 作為文字, 使人坦知也.)라고까지 하였다.⁶⁰⁾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평균
회 수 (회)	不忠 不敬	2	、	20	47	3	10	11	4	51	16.44
	夫婦 關係	1	1	5	20	2	1	19	、	32	9
	不孝 등정 치문 제	1	、	8	13	1	2	14	1	29	7.67
	합 계	5	1	54	85	6	19	51	10	114	38.3 3
	年間 회 수 (회 / 년)	0.29	、	1.11	1.42	1	2.5	0.79	2	1.96	1.47
	夫婦 關	0.14	0.5	0.28	0.61	0.66	0.25	1.36	、	1.23	0.79

60) 《世宗實錄》卷76, 세종 19년 3월 24일 갑인 ②.

係 不 孝 等 正 치 문 제 합 계	0.14	、	0.44	0.39	0.33	0.5	1	0.5	1.12	0.67
	0.14	、	1.17	0.15	、	1.5	0.5	2.5	0.08	0.46
	0.71	0.5	3	2.58	2	4.75	3.64	5	4.38	3.35

【표 6】 조선 太祖朝-成宗朝 綱常罪 및 儒教倫理 관련 告身 追奪 기사

綱常罪에 따른 告身の 追奪은 앞선 奴婢訟事·贓汚罪 관련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주로 태종조에 집중되어 있는 奴婢訟事는 물론이거니와, 비록 마찬가지로 상송추세에 있는 贓汚罪에 비해서도 그 차이점은 두드러진다. 우선 綱常罪 관련 告身 追奪 회수는 세종조를 기점으로 하여 한 차례 급증하였으며, 혼란기인 단종조를 기점으로 재차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유교이념이 조선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성종조에는 유교 이념이 고착화되면서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綱常犯罪를 다스릴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므로, 위 통계와 같이 綱常罪를 범한 官員에 대해 이전 시기에 비해 告身을 거두는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綱常罪 왕에 대한 不忠·不敬罪의 경우 세종조·성종조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 姦通·姦淫 및 妻妾 문제 등의 경우에는 세조조·성종조가, 불효 등 기타 유교윤리의 위반에 따른 追奪은 성종·세조조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로 不忠 등의 綱常罪를 적용한 경우는 민씨 형제 등의 외척세력을 숙청하는 등⁶¹⁾의 적극적인 중

61) 정혜순, 「여말선초 여흥민씨 가문의 동향」, 『석당논총』 제47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0. 7. 209-219면.

양집권 및 왕권강화 정책을 펼치던⁶²⁾ 태종조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조사의의 난에 대한 왕실의 대응을 통해 비록 명백히 告身 追奪을 가해야 할 사안이더라도 피치 못할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追奪을 자제하거나, 追奪하였더라도 還給 조치를 하는 등의 예외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의의 난 연루자에 대한 告身 追奪은 앞선 이상현의 선행연구와 비교할 수 있다. 비록 김종직·정인홍과 달리 조사의의 난 연루자들의 告身은 追奪당하였지만, 중죄인 반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告身을 대거 돌려받았다. 즉, 정치적 고려 및 제반 상황이 告身 追奪 및 還給에 영향을 끼쳤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4. 官員·宗親 등의 殺人

본 항목에서는 주로 관원·종친이 공무 및 그 외의 사유로 죄인 등을 함부로 살상하여 告身을 追奪당한 사례에 집중하였다. 예컨대 죄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濫刑을 가하여 죄인을 죽게 만든 守丞에 대해서는 告身을 거두어 처벌한 등의 사례이다. 功臣·宗親 등의 부류는 《大明律》의 형사상 특혜를 부여하는 ‘八議’에 해당하였다.⁶³⁾ 따라서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의 신분이 미천하여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엄히 처단하기에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태종 3년 윤11월에 사람을 죽인⁶⁴⁾ 완평군 이조의 경우 태조 이성계의 庶兄인 완산군 이원계의 아들이었다.⁶⁵⁾ 반면 완평군 이조가 죽인 조만은 그저 눈이 먼 사람(瞽者)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세종 25년 자신의 가족에게 욕을 한 아이들의 아버지인 私奴 석류를 때려죽인

62) 류창규, 「조선 초기 太宗과 河崙의 天譴論을 빙자한 정국 운영 양상」, 『역사학연구』 45권, 호남사학회, 2012. 1, 82-88면.

63) 《大明律》〈名例〉[八議]條에 규정된 八議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議親(皇家의 친족)·議故(皇家의 친구)·議功(功臣)·議賢(賢人·君子)·議能(재능있는 관원)·議勤(성실한 관원)·議貴(높은 품계의 관원)·議賓(前왕조의 후계자)에 해당한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唐律疏議》〈名例〉[八議]條, ‘議曰 周禮云, 八僻麗邦法, 今之八議, 周之八僻也. 禮云, 刑不上大夫, 犯法則在八議, 輕重不在刑書也. 其應議之人, 或分液天潢, 或宿侍旒戶衣, 或多才多藝, 或立事立功, 簡在帝心, 勳書王府 ….’

64) 《太宗實錄》卷6, 태종 3년 윤11월 19일 임술 ②.

65) 《太宗實錄》卷15, 태종 8년 3월 24일 계유 ②.

가해자 전의군 이완은, 태종의 딸인 경신옹주와 혼인한 駙馬였다. 의금부에서 이완은 律에 따라 絞刑에 해당한다고 아뢰자, 세종은 이완이 비록 ‘懿親이나 八議은 아니지만(況今李椀既非懿親, 亦非八議之人乎)’ 아내인 경신옹주가 임신한 등의 이유를 들어 告身을 빼앗아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인 충청도 진현으로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그쳤다.⁶⁶⁾ 그나마도 2년 뒤인 세종 27년 2월 12일 기록을 보면 이완의 告身을 도로 돌려주었다.⁶⁷⁾ 濫刑으로 죄인을 죽게 만든 경우도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세종 12년 6월에는 이종규가 일찍이 교동현 수령 재직 중 官奴 승만에게 형벌을 잘못 가하였다 죽게 만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사헌부가 啓達하여 탄핵하여 杖90에 職牒을 거두도록 하였다.⁶⁸⁾ 無故한 사람을 강도죄로 몰아 濫刑하여 취조한 끝에 10여인이나 죽게 만든 조너·조종생 등의 경우⁶⁹⁾ 赦宥 이전의 잘못이라 하여 職牒 回收와 埋葬銀 납부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4개월 뒤인 세종 13년 10월 職牒·科田을 도로 돌려주었다.⁷⁰⁾ 예종 1년 8월에 평양부윤으로 재직 중 官婢에게 濫刑을 가해 죽게 만든 이덕량에 대해서도 의금부는 斬刑으로 보았으나 功臣·大臣이므로 告身만 거두었으며⁷¹⁾, 성종 1년 3월 다시 돌려주었다.⁷²⁾

이후 《經國大典》〈刑典〉[濫刑] 條에서는 官吏가 濫刑하는 경우 杖100 徒3년에 처하며, 濫刑의 결과 죄인이 죽게 되면 杖100에 처하고 永不敍用토록 규정하였다.⁷³⁾ 그러나 성종조에도 수령이 濫刑을 가하거나 주인이 노비를 사사로이 처벌하여 죽임으로 인해 告身을 追奪당한 사례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평군
----	----	----	----	----	----	----	----	----	----	----

66) 《世宗實錄》卷100, 세종 25년 5월 14일 무진 ④.

67) 《世宗實錄》卷107, 세종 27년 2월 12일 병진 ④.

68) 《世宗實錄》卷48, 세종 12년 6월 13일 임오 ②.

69) 《世宗實錄》卷52, 세종 13년 6월 12일 갑진 ⑥.

70) 《世宗實錄》卷54, 세종 13년 10월 4일 을미 ③.

71) 《睿宗實錄》卷7, 예종 1년 8월 23일 갑술 ①.

72) 《成宗實錄》卷4, 성종 1년 3월 18일 정유 ②.

73) 《經國大典》〈刑典〉[濫刑] 條, “官吏濫刑, 杖一百徒三年, 致死者, 杖一百, 永不敍用.”

회수(회)	·	1	6	11	2	3	6	1	13	4.78
年間회수 (회/년)	·	0.5	0.33	0.33	0.67	0.75	0.43	0.5	0.42	0.42

【표 7】 조선 太祖朝-成宗朝 殺人 관련 告身 追奪 기사

본 항목에서 집계한 관원·종친의 殺人에 따른 告身 追奪 횟수 43건 중 관원의 濫刑에 의한 사망사건은 절반인 22건에 이른다. 개중에는 奉命使臣으로서 모욕을 받아 이를 징계하던 도중 모욕한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처럼 濫刑이더라도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도 없잖아 있었지만⁷⁴⁾, 자신의 失政을 관찰사에게 고했다는 이유로 杖을 쳐서 죽게 하거나⁷⁵⁾, 휘하 鎭撫를 고소한 官奴에 대해 보복성 濫刑을 가하여 죽이는 등⁷⁶⁾ 명백한 濫刑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儒敎를 근본이념으로 삼은 조선 사회에서 民에 대한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였지만⁷⁷⁾, 실상으로는 지방관을 중심으로 죄인을 訊問하는 과정에서 酷刑이 이루어졌으며, 告身 追奪을 비롯한 징계와 처벌 역시 일시적이고 관대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의 재판이 죄인의 자백을 받아낸 뒤에야 비로소 종결되는 방식이었으므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拷訊 과정에서 濫刑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⁷⁸⁾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물론 조

74) 《成宗實錄》卷276, 성종 24년 4월 18일 임자 ①. 실제로 성종은 이 사건에 대해 御書를 통해 “이의무의 죄는 다른 濫刑의 죄와 견줄 바가 아니다. 특별히 杖은 收贖하고 告身을 거두도록 하라.(宜茂之罪, 非他濫刑之比, 特只杖贖, 奪告身.)”고 하여 다른 濫刑罪에 비해 減刑하였다. 이는 奉命使臣에 대한 모욕이 杖刑에 해당하는 죄였기 때문이었다. 《大明律》〈刑律〉[罵制使及本管長官]條, “凡奉制命出使 而官吏罵詈 … (중략) … 杖一百 … (이하 생략) …”

75) 《世祖實錄》卷16, 세조 5년 6월 9일 기미 ③.

76) 《世祖實錄》卷25, 세조 7년 9월 27일 갑자 ②.

77) 戰國時代 法家 사상에서는 효율 위주의 刑獄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秦의 멸망과 더불어 儒學者들로부터 배척받았다. 뒤이은 漢 이후의 儒敎 국가 대부분은 형사정책에서 유교 이념을 적용하였으며, 律의 적용·집행에 있어 신분질서를 옹호하면서도 잔혹한 형벌은 삼가는 경향이 있었다. 권연웅, 「유가 법사상의 역사적 맥락」, 『韓國儒學思想大系 VIII : 法思想編』, 한국국학진흥원, 2008. 12, 29-42면.

78) 조운선,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조선시대사학회, 2009. 3, 214-218면.

선 초기에도 수령의 지나치게 엄한 형벌을 가혹한 정치와 더불어 감독해야 할 부분으로 보았으나⁷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 濫刑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통상적인 살인죄에 비해서는 보다 가벼운 처벌의 필요가 있었고, 이를 告身을 거둬 관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誣告

조선시대에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誣告 행위가 활발하게 발생하였으며⁸⁰⁾, 그에 대응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大明律》의 [誣告] 條⁸¹⁾ 및 조선 고유의 誣告反坐律도 동원되었다. 특히 誣告가 성공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謀反 관련 誣告에 대해서는 亂言誣告라 하여 《大明律》보다도 가중된 처벌을 가하였고, 수령고소 금지법과 같이 고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여 誣告의 여지를 없애기도 하였다.⁸²⁾ 한편 誣告罪 자체가 일반사면에서 배제되는 특수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여겨지면 赦宥에서 제외시킨 사례도 존재한다.⁸³⁾

한편 무고와 관련하여 告身 追奪에 이르는 사례는 무고대상 및 내용에 있어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다. 가장 심각한 謀反 무고부터⁸⁴⁾ 노비 문제와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⁸⁵⁾, 심지어 妾을 의심하여 무고한 사례도 있다.⁸⁶⁾

79) 예를 들면 《成宗實錄》 卷165, 성종 15년 4월 19일 을해 ②.

80) 서정민,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민속원, 2013, 260-270면.

81) 《大明律》〈刑律〉第359條 [誣告] 條, '凡誣告人答罪者 加所誣罪二等 流徒杖罪 加所誣罪三等 各罪止杖一百流三千里.'

82) 서정민, 앞의 책(각주 143), 291-298면.

83) 서정민, 위의 책, 222-230면.

84) 《太宗實錄》 卷7, 태종 4년 1월 4일 병오 ①.

85) 《太宗實錄》 卷3, 태종 2년 5월 29일 신해 ②.

86) 《成宗實錄》 卷16, 성종 3년 3월 15일 신해 ⑤.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평균
회수(회)	·	1	7	3	·	1	1	·	8	2.33
年間회수 (회/년)	·	0.5	0.39	0.09	·	0.25	0.07	·	0.31	0.2

【표 8】 조선 太祖朝-成宗朝 誣告 관련 告身 追奪 기사

조선 건국 이후 성종조까지의 誣告罪 처벌 통계는 128건에 이른다.⁸⁷⁾ 개중에는 職牒을 거뒀음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경우도 있지만, 단지 杖刑 등의 처벌만 기록되고 告身 追奪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기록되지 않은 무고 관련 追奪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다.

《大明律》의 [誣告] 條는 무고한 죄에서 통상적으로 2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는데, 대개 무고한 죄는 그 형량이 상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笞刑에 그치는 일은 없었다. 특히 조선 초기 무고죄 처벌형 종류를 살펴보면 告身 追奪에 이르지 않는 笞刑은 단 한 건도 발견할 수 없으며, 告身 追奪에 이르는 최소 杖刑 이상부터 보고된다.⁸⁸⁾ 告身 追奪은 최소 杖刑 이상의 私罪에 대해 시행되므로, 실제로는 성종조까지 100여건 안팎의 무고 관련 告身 追奪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이 조선 전기의 개별 범죄보다는 관원에 대한 告身 追奪에 집중하고 있으며, 부과한 형벌과는 별개로 告身을 실제로 追奪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지 무고죄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追奪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87) 서정민, 앞의 책(각주 143), 316-337면.

88) 서정민, 앞의 책(각주 143)의 254-291면에서는 조선 초기 무고 사건의 실태에 대해 다루면서 무고 사건의 횟수 및 종류, 무고자 및 피무고자의 신분, 그리고 처벌형의 종류까지 상세히 정리하였다.

6. 직무상 과실·태만·기강해이 등

본 항목에서는 관원의 직무상 단순 과실 및 태만·기강해이, 武官의 외적 방어 실패에 따른 책임의 결과로 告身을 追奪한 경우에 대해 정리하였다. 단순과실의 경우 대체로 公罪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진 告身 追奪이며, 그 외에는 관원의 기타 잘못 등으로 인한 경우로 告身을 거둔 사례이다.

본 항목의 직무상 단순과실은 관원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私益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저지른 실수인 公罪이다. 告身 追奪은 원칙적으로 公罪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으나, 실제로는 조선 초기 公罪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간혹 告身 追奪이 감행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태종 9년 6월 안노생이 허위로 失農을 보고하여 告身을 追奪당한 사건이다. 안노생의 경우 追奪 당시 태종조차도 失農의 허위보고를 錯誤에 따른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고(上謂亮曰“魯生之罪, 乃錯誤也. 然其意難知.”), 태종 10년 2월 科田과 더불어 거뒀던 告身도 다시 돌려주면서 “백성을 생각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가 죄를 지었으니 가엾다(魯生爲民得罪, 情可矜也)”고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안노생의 허위보고가 고의적으로 私益을 꾀한 것과 무관한 公罪였음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위와 같은 예외 사례는, 결국 《大明律》의 告身 追奪 체계에 대한 이해가 적어도 태종조까지는 심화되진 못했음을 입증한다. 이후 성종조 《經國大典》〈戶典〉[收稅]에서는 앞서 소개한 대로 수령의 허위 흉작 신고가 고의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만 告身 追奪 및 永不敍用의 조치를 감행하고, 실수에 의하였으면 罷黜에 그치도록 하여 公·私罪를 엄격히 구분하였다.⁸⁹⁾

한편 세조조에는 업무상 과실⁹⁰⁾이나 서적 發刊시 오탈자 등의 잘못⁹¹⁾, 특별히 條章을 익히도록 한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內官들⁹²⁾에 대해서

89) 《經國大典》〈戶典〉[收稅]條, “…… 守令則十負以上罷黜, 其知情妄冒者, 追奪告身, 永不敍用.”

90) 《世祖實錄》卷31, 세조 9년 12월 19일 계묘 ②.

91) 《世祖實錄》卷32, 세조 10년 1월 11일 갑자 ②.

92) 《世祖實錄》卷34, 세조 10년 8월 12일 계사 ②.

도 告身을 거두어 징계하였다. 이들 부류 역시 私益을 추구하는 등의 私罪라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공무상 과실 등에 적용되어 告身 追奪에는 이르지 않는 公罪에 더 가깝다. 이는 《大明律》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지만, 정치적 급변으로 관료계층의 변동이 있었던 세조 집권기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公罪임에도 부득이하게 告身을 追奪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기강해이에 따른 연간 告身 追奪 실록 기사 횟수가 세조조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이다.

직무태만 및 기강해이 관련하여 관찰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는 할당된 직역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변방근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죄를 지어 교대되기를 희망한 경우나⁹³⁾, 힘든 직역에 해당하는 수령·교수·驛丞 등의 赴任을 회피하려다 罷免된 관원의 경우 告身을 거두도록 하였다.⁹⁴⁾ 다만 세종조에 직역 회피를 도모한 관원의 告身 追奪을 명한 受教는 《經國大典》에는 바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예컨대 〈吏典〉 [外官職] 條에서는 수령·교관으로 핑계를 대며 해당 직책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만큼 등용하지 않다가 다시 지방관직에 등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⁹⁵⁾ 실제로 3년 定配에 처하는 등 告身 追奪에까지 이어지는 처벌을 규정하여 직역 기피행위 처벌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續大典》에 이르러서야 발견된다.⁹⁶⁾

한편 甲士와 같은 하급 군인·무관의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하기 위해 告身을 거두기도 하였다. 세종 11년 3월에는番禺 서야 할 군인이 도망치거나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 告身을 거두고 船軍 또는 관청 하인으로 삼자는 병조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⁹⁷⁾ 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經國大典》 〈兵典〉 [用刑] 條에서는 평상시에 군법으로는 죽을죄를 지은 장수는

93) 《世宗實錄》卷84, 세종 21년 1월 22일 신축 ㉔.

94) 《世宗實錄》卷21, 세종 5년 8월 2일 경술 ㉔.

95) 《經國大典》〈吏典〉 [外官職] 條, “… 守令·教官托故規免者, 準其逋期, 不敘. 敘時, 選除外官.”

96) 《續大典》〈吏典〉 [外官職] 條, “… ○都事·守令之厭避殘薄, 規免不赴者·赴任後厭避圖遁者, 各其地限三年定配.”

97) 《世宗實錄》卷43, 세종 11년 3월 26일 임신 ㉔.

杖60, 군사는 杖90에 처하였는데⁹⁸⁾,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군인 신분에 따라 告身을 거두도록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刑典〉[番次都目]條에서 선전관의 근무태도를 감안하여 승진 또는 강등시켜 임명토록 하여, 마찬가지로 태만한 무관을 징계하였다.⁹⁹⁾

譯官·醫官 등 기술직 관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장려하고 태만한 자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受敎를 통해 告身 追奪을 강제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외방에서 감사를 보충할 때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職牒을 거두고 水軍에 充軍토록 하거나¹⁰⁰⁾, 醫書 학습 성과가 미진한 경우에도 告身을 거둬 징계하도록 지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¹⁰¹⁾ 비슷한 맥락에서 이후《經國大典》〈禮典〉[獎勸]條에서도 醫書 習讀官이 공부를 태만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다.¹⁰²⁾

다른 유형은 관원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사사로운 청탁으로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행위이다. 예컨대 馬祖祭를 핑계로 잔치를 벌이거나¹⁰³⁾, 사신으로 明에 가서 각종 행패를 부리거나¹⁰⁴⁾, 어울려 논 무리들이 행패를 부려 宗簿寺가 조사하자 이에 불응하고 무리들을 숨겨 내놓지 않은 종친과 같은 사례¹⁰⁵⁾ 모두 告身을 거두어 징계하였다.

武官의 告身 追奪은 세종·성종조 외적 방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大明律》에서는 군사 조련 태만¹⁰⁶⁾·탈영¹⁰⁷⁾ 등의 죄에 대해 告身을 거

98) 《經國大典》〈兵典〉[用刑]條, “... ○ 行在時外, 常時犯軍令死罪者, 諸將杖六十, 軍士杖九十. <常時闕夜直者外雜犯用律.>”

99) 《經國大典》〈兵典〉[番次都目]條, “... <○初受職者不計仕, 兼司僕·內禁衛·功臣嫡長·親軍衛·別侍衛甲士同, 考勤慢陞降除授.>”

100) 《世宗實錄》卷99, 세종 25년 1월 2일 무오 ②.

101) 《世祖實錄》卷27, 세조 8년 2월 14일 기묘 ③; 《世祖實錄》卷30, 세조 9년 5월 22일 경술 ①; 《成宗實錄》卷15, 성종 3년 3월 14일 경술 ⑧.

102) 《經國大典》〈禮典〉[獎勸]條, “... 醫書習讀官所讀諸書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啓授顯官兼差本職, 其懶慢者隨其輕重罪之...”

103) 《世宗實錄》卷6, 세종 1년 12월 3일 계유 ②.

104) 《世宗實錄》卷48,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⑩.

105) 《世祖實錄》卷3, 세조 2년 4월 11일 경술 ①.

106) 《大明律》〈兵律〉第230條 [不操鍊軍士]條 “...若隄備不嚴 撫馭無方 致有所部軍人反叛者, 親管指揮千戶百戶鎮撫, 各杖一百 追奪發邊遠充軍, 若棄城而逃者, 斬...”

107) 《大明律》〈兵律〉第238條 [從征守禦官軍逃]條 “...其親管頭目 不行用心鈐束 致有軍人在逃 小旗名下 逃去五名者 降充軍人 總旗名下 逃去二十五名者 降充小旗 百戶名下 逃去一十名者 減俸一石 二十名者 減俸二石 三十名者 減俸三石 四十名者 減俸四石 逃至五十名者 追奪降充總旗 千戶名下 逃去一百名者 減俸一石 二百名者 減俸二石 三百名

두도록 규정한 바 있다. <부록 6>에서는 외적 防備에 실패하거나 適時에 구원하지 못한 등의 잘못으로 職牒이 거뒀진 武官들의 사례를 정리하였는데, 본디 律에 따르면 이러한 부류의 죄는 출정 기일을 어긴 경우와 같이 최소 杖70에서부터¹⁰⁸⁾, 기한 내에 군사를 보내지 않는 등의 사유로 斬刑에 이르는 등¹⁰⁹⁾ 상당히 엄격한 처벌이 따랐다. 다만 後述할 정무적 고려에 따른 告身 還給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변방 수비를 위한 무관 수요에 따라 상당히 단기간에 告身을 돌려주어 일선으로 복귀시키기도 하였다.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평균
회 수 (회)	단 순 과 실 紀	1	、	7	15	2	1	7	1	8	4.67
	綱 解 弛	3	1	10	41	1	1	31	3	30	13.44
	외 적 침 입	1	、	、	12	、	、	4	3	23	4.78
	합 계	5	1	17	68	3	2	42	7	61	22.8 9

者 減俸三石 四百名者 減俸四石 逃至五百名者 降充百戶 其管軍多者 驗數折算降減 不及數者 不坐 若有病亡殘疾提撥等項 事故者 不在此限...”

108) 《大明律》〈兵律〉第226條 [從征違期] 條, “凡軍官軍人臨當征討 已有起程日期 而稽留不進者 一日 杖七十 每三日 加一等. 若故自傷殘及詐爲疾患之類 以避征役者 各加一等 並罪止杖一百 仍發出征. 若軍臨敵境 托故違期 一日不至者 杖一百 三日不至者 斬. 若能立功贖罪者 從總兵官區處.”

109) 《大明律》〈兵律〉第225條 [失誤軍事] 條, “... 若臨敵缺乏及領兵官已承調遣 不依期進兵策應, 若承差告報軍期而違限, 因而失誤軍機者 並斬...”

年間 회 수 (회 / 년)	단 순 과 실	0.14	、	0.39	0.45	0.67	0.25	0.5	0.5	0.31	0.41
	紀 綱 解 弛	0.43	0.5	0.56	1.24	0.33	0.25	2.21	1.5	1.15	1.17
	외 적 침 입	0.14	、	、	0.36	、	、	0.29	1.5	0.88	0.42
	합 계	0.71	0.5	0.94	2.06	1	0.5	3	3.5	2.35	2

【표 9】 조선 太祖朝-成宗朝 직무상 과실 등 관련 告身 追奪 기사

위 도표에서는 세조조 기강해이에 따른 告身 追奪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견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관원의 근무태도 정립을 위해 公罪에 대해서도 告身을 追奪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바 있다. 公·私罪 구분이 명확치 못했던 세종조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원의 단순과실에 대해서까지 告身을 거두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7. 기타

본 항목에서는 특정 유형 범죄로 분류하기 곤란하거나, 유형별로 분류하기에는 그 수효가 적은 경우, 그리고 告身 追奪에 이른 명확한 사유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종합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타 告身 追奪 관련

총 59건 중 宦官의 告身 追奪이 12건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들 경우 단지 ‘職牒을 거두도록 하였다’는 식의 표현만이 있을 뿐이므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내시의 경우에는 일반 관원들과는 달리 보다 전문적인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祿俸 등의 처우 및 인식 역시 문무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¹¹⁰⁾ 때문에 告身 追奪과 관련하여서도 내시의 경우에는 소관 잡무와 관련한 과실 또는 잡다한 범죄로 인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문무관원에 비해 열악했던 처우가 告身 追奪 등의 징계로 귀결되는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한편 관료 계층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관원의 告身을 追奪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태종-세종조에 걸쳐서 楮貨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의 화폐유통정책의 정착을 위해, 楮貨 사용에 협조하지 않는 관원의 告身을 追奪하였다. 예를 들어 태종 2년 5월에는 楮貨 사용 장려를 위해 五升布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자가 職責이 있는 경우에는 職牒을 거두고 杖刑에 처하게 하였다.¹¹¹⁾ 태종 12년 7월에는 楮貨로써 徵稅 수단으로 삼은 방침을 따르지 않은 지방관의 職牒을 거둬 귀양을 보냈고¹¹²⁾, 세종 31년 3월에도 楮貨 외에 布貨 등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는 功臣 및 그 자손의 告身을 거두도록 의정부가 건의하기도 했다.¹¹³⁾ 다만 楮貨 자체가 제도상으로는 편입되었더라도¹¹⁴⁾ 실질적으로는 쓰이지 않았으므로¹¹⁵⁾, 告身 追奪 조치가 철저히 시행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태종 12년 10월 楮貨로 조세를 거두지 않아 7월에 追奪된 경기관찰사 이상의 職牒은 3개월 만에 도로 還給되었다.¹¹⁶⁾ 뿐만

110) 홍순민, 「조선왕조 內侍府의 구성과 內侍 수요의 변천」, 『역사와 현실』 52호, 한국역사연구회, 2004. 6, 237-240면.

111) 《太宗實錄》卷3, 태종 2년 5월 24일 병오 ②.

112) 《太宗實錄》卷24, 태종 12년 7월 9일 임진 ①.

113) 《世宗實錄》卷123, 세종 31년 3월 6일 병술 ②.

114) 《經國大典》〈戶典〉[祿科]條에서는 正·從1품에 매년 봄마다 楮貨 10장씩을 지급하였으며, 차등적으로 從9품(봄마다 1장씩 지급)에 이르기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5) 유현재, 「조선 초기 화폐 유통과 그 성격 : 저화 유통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9호, 조선시대사학회, 2009. 6, 77-91면.

116) 《太宗實錄》卷24, 태종 12년 10월 29일 신사 ③.

아니라 이후 《經國大典》〈戶典〉[國幣]條¹¹⁷⁾에는 布貨와 더불어 楮貨를 공인 화폐로 쓰도록 규정하였지만, 태종·세종조의 受敎와는 달리 楮貨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告身을 거두는 등의 처벌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제2절 告身 追奪의 예외 사례

본 항목에서는 앞선 제 1절에서와 같은 범죄 유형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告身の 追奪을 면한 예외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그 원인과 특성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告身 追奪에 해당하거나 그럴 소지가 있음에도 이를 면한 경우로는 먼저 공신 및 그 자손·종친 혹은 明 使臣과의 관련성에 따라 신분 및 배경에 따른 특혜를 받은 경우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지은 시점이 赦宥를 집행하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赦免 대상에 포함되어 告身 追奪을 면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항목에는 위와 같이 두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죄를 짓고도 告身 追奪을 면한 사례의 상당수는 결정권자인 왕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罷職·停職 등 보다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경우로, 追奪을 면하게 된 확연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유형화하여 분류하기 곤란하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1. 신분에 따른 免責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신분상의 차등을 두었으므로, 告身 追奪과 같은 징계 처분에서도 신분에 따른 특혜가 고려되었다. 물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신·종친 신분으로 追奪을 면할 순 없었지만, 설혹 追奪을 면하더라도 臺諫을 중심으로 한 극렬한 반발을 감수해야만 했다.¹¹⁸⁾

117) 《經國大典》〈戶典〉[國幣]條, “國幣通用布·楮貨. <正布一匹準常布二匹, 常布一匹準楮貨二十張, 楮貨一張準米一升, 凡徵贖全用楮貨, 價買, 一半用之.>”

118) 세종조 가장 큰 부정부패 사건이었던 조말생 사건에 연루된 좌의정 이원의 경우 功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합계
회수(회)	2	4	10	17	,	,	,	,	1	33

【표 10】 조선 太祖朝-成宗朝 身分에 따른 告身 追奪 면책 기사

조선 건국 이후 성종조까지 功臣·宗親 등의 신분상의 지위에 힘입어 告身 追奪에 해당하는 죄임에도 이를 면하거나 일시적으로나마 윤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는 실록으로부터 총 33건을 찾을 수 있다.

신분상의 이유로 追奪을 면한 자들의 혐의는 다양하다. 개중에는 자식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때리고 人糞을 묻혀 모욕을 주는 등 품위를 잃은 행위에서부터¹¹⁹⁾, 수령으로서 도량형을 속여서 곡식을 착복한 贓罪를 범한 경우도 있다.¹²⁰⁾ 심지어 奴婢訟事에서 바른 판결을 誤決이라 고집한 관원들의 경우, 각각 공신 및 그 자손임을 이유로 訴訟物인 노비를 屬公하는 조치만을 내리는 선에서 그쳤음을 알 수 있다.¹²¹⁾ 앞서 奴婢訟事에 대해 誤決 등의 이의를 불합리하게 제기하는 경우 杖刑·告身 追奪 및 水軍 充軍 등의 상당한 처벌·징계가 가해졌던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한 처분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분에 따라 告身 追奪을 면하는 조치는 臺諫을 주축으로 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태종 10년 4월 살인죄로 탄핵받은 정탁에 대해 태종이 공신인 정탁의 職牒을 거두고 鞫問하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를 따졌을 때, 사간원 正言 정진은 ‘정탁이 사람을 죽였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擢曾犯殺人, 其罪當刑)’, ‘공신·재상이라도 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雖功臣大相, 罪至如此)’ 탄핵할 뿐이라며 항변했다.¹²²⁾ 위에서 소개한 태종 14년 8월의 奴婢訟事 처분 역시 ‘비록 공신의 후손이라도 법을

臣임에도 불구하고 공신 錄券과 職牒을 빼앗기고 여산에 安置된 기록이 《世宗實錄》卷 31, 세종 8년 3월 15일 기유 ⑤에 남아있으며, 그 외에도 功臣 등의 이유로 刑량이 보다 減免되더라도 告身만큼은 거둔 사례가 적지 않다.

119) 《定宗實錄》卷1, 정종 1년 6월 1일 경자 ④.

120) 《太宗實錄》卷35, 태종 18년 2월 29일 경술 ②.

121) 《太宗實錄》卷28, 태종 14년 8월 25일 을축 ①.

122) 《太宗實錄》卷19, 태종 10년 4월 10일 병오 ④.

어졌다면 죄를 쉽게 면할 수 없다(雖係功臣, 令初犯法者, 不可輕免.)'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贓汚罪와 같이 重罪인 경우에는 追奪을 면하거나 還給을 받기 힘들었다. 성종 3년 8월 관찰사로써 姦夫에게 뇌물을 받고 가볍게 처리한 오백창은 공신이였음에도 불구하고 告身 追奪을 피할 수 없었으며¹²³⁾, 權臣 한명회의 청으로 3개월 만에 還給받은 이후¹²⁴⁾에도 수차례 臺諫이 오백창의 告身을 거둘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특수한 사례유형으로는 明 使臣에 청탁한 자의 職牒을 거두는 문제가 있었다. 사대외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¹²⁵⁾, 당시 조선에 파견된 明 使臣의 횡포는 明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할 만큼 심각했다.¹²⁶⁾ 세종조에 주로 파견된 明 使臣은 윤봉¹²⁷⁾이었는데, 세종 7년 4월에는 사간원이 윤봉에게 청탁하여 벼슬을 구한 관원들에 대해서 청탁의 결과 본인의 품계에 맞지 않는 벼슬을 받은 점을 탄핵하였으나 도리어 벼슬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 직책에 해당하는 품계를 올려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¹²⁸⁾ 그 밖에도 윤봉에게 청탁하였다가 잘못을 저질러 빼앗긴 벼슬을 윤봉이 직접 나서서 還給 조치를 받거나¹²⁹⁾,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 職牒을 追奪당한 자가 明에 바쳐진 딸 덕분에 皇親의 반열에 올랐으므로 職牒을 還給받은 사례¹³⁰⁾도 존재한다. 결국엔 외교적 마찰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告身을 도로 거두어야 마땅한 경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인데, '明使'라는 신분적 특성에 따른 특수한 지위가 이를 가능케 했다. 다만 세종 11년 11월에는 마찬가지로 청탁하여 벼슬을 얻은 通事에 대해 土官職을 일단 제수하되, 명 사신이 귀국한 뒤에 推問토록 하여 융통성 있는 대처를 하고자 하였다.¹³¹⁾ 세종조에 이르면 청탁하여 얻은 벼슬을 假官으로 간주하

123) 《成宗實錄》卷21, 성종 3년 8월 12일 병자 ①.

124) 《成宗實錄》卷24, 성종 3년 11월 11일 계묘 ②.

125) 이 부분과 관련한 조선 초기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는 안익순, 「조선 전기 중화주의의 내치, 외교 관계」, 『동방학』 31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4. 8. 45-71면

126) 姜陽, 『朝鮮前期 朝明 使行外交와 交通路 : '조선 사행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학박사학위논문, 2014. 2. 29·34면.

127) 尹鳳 (?-?) : 조선 태종 초 환관으로 明에 보내진 뒤 신임을 明 황제의 신임을 받았다. 세종조까지 使臣으로써 조선에 왕래하였으며, 성종 1483년(성종 14)에 귀국하였다.

128) 《世宗實錄》卷28, 세종 7년 4월 19일 무오 ⑤.

129) 《世宗實錄》卷61, 세종 15년 11월 9일 무자 ②.

130) 《文宗實錄》卷3, 문종 즉위년 9월 7일 무신 ④.

고, 명 사신의 귀국 이후에 그 職牒을 거두도록 조치하였다.¹³²⁾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朝廷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교적 마찰은 최소화하면서도 告身 발급·回收의 원칙은 지키려는 유연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2. 사면 이전 범죄에 대한 免責

조선의 경우 자연재해·왕실 慶弔事 등을 이유로 赦免을 집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범행이 赦宥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赦免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告身 追奪 등의 징계를 면하였다. 다만 赦宥 이전에 발생한 범죄라 하여 모두 면책된 것은 아니고, 重罪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告身을 거두기도 하였다.¹³³⁾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합계
회수(회)	·	·	2	7	2	2	2	·	10	25

【표 11】 조선 太祖朝-成宗朝 赦宥 이전 범행에 대한 告身 追奪 면책 기사

총 25건의 赦宥 관련 예외사유 중에서 특기할 점은 赦宥 이전에 저지른 贓汚罪에 대해 告身 追奪을 면한 10건이다. 贓汚罪의 중대함에 대해 앞서 살핀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贓物의 數를 계산하여 처벌하지만, 위 10건의 예외 사례에서는 赦宥 이전의 일이라 하여 告身을 거두지 않았다.

세종 13년 11월에는 대사헌 오승이 사면하는 예에 따라 赦宥 이전의 죄에 대해서도 모두 職牒을 거두지 말고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사면을 ‘군왕이 은혜를 베풀어 화합되게 하고 (관원의) 지난 잘못을 깨끗이 씻어 없애게 하는(赦者, 所以蕩滌瑕穢, 廣施殊恩, 而召致和氣)’ 것

131) 《世宗實錄》卷46, 세종 11년 11월 13일 을묘 ①.

132) 《成宗實錄》卷5, 성종 1년 5월 24일 신축 ③.

133) 예를 들면 《成宗實錄》卷8, 성종 1년 12월 26일 기사 ②.

으로 정의하면서, ‘사면 이전의 일에 대해서도 모두 논하지 않음으로써 사면의 범주를 넓혀 달라’(自今赦前之事, 雖情狀可憎, 竝勿舉論, 以廣赦宥之殊恩.)고 요청하였다. 이에 세종은 이미 그러한 법을 만들었는데도 오승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 재차 요청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세종은 赦宥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 ‘죄를 주지 말도록 하였(不令加罪)’다고 해명하는데, 결국 오승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¹³⁴⁾

하지만 赦宥 이전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告身을 거둔 사례 역시 존재한다. 태종 8년 8월 戶曹 문서를 위조하여 贓罪를 짓고 도망친 경우 律에 따라 잡은 뒤 職牒을 거두도록 하였으며¹³⁵⁾, 문종 즉위년 3월에도 贓罪를 지은 부여현감 정시웅을 함길도에 入居시키면서 告身도 아울러 거둔 사실을 알 수 있다.¹³⁶⁾ 반면 문종 1년 1월에는 國喪 중에 기생과 간통하는 등의 죄를 赦宥 이전의 행위라 하여 용서하였다.¹³⁷⁾ 결국 태종조까지는 赦宥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職牒을 거두었고, 최소한 세종조에는 赦宥 이전의 범죄를 告身 追奪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였으나 어느 쪽으로든 기준이 엄격하게 준수되진 못했음을 알 수 있다.

赦宥 이전의 행위에 대한 告身 追奪 여부가 유동적으로 결정된 첫 번째 원인은 개별 사건의 輕重을 따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종 1년 8월에는 濫刑을 가해 사람을 죽이고 군사를 이끌어 사사로이 사냥을 한 신숙청에 대해 의정부가 職牒을 거두 벌할 것을 청하였다. 의정부는 신숙청 告身 追奪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전에 윤처신이 濫刑으로 죄를 입자 특별 사면에도 불구하고 告身을 追奪당한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신숙청의 죄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것이니 追奪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且頃者尹處信爲珍島郡事, 以非法杖殺部民, 會蒙赦宥, 其時憲府啓請, 收奪告身, 請依此例施行.)¹³⁸⁾ 의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앞서 세종 13년에 세종이 赦宥 이전의 범죄에 대한 追奪 면제가 ‘이미 정해진 기준’이라고 밝힌 바와는 상충된다. 마찬가지로 推鞠 과정에서 일단 告身을 거두고 조사하던

134) 《世宗實錄》卷54, 세종 13년 11월 5일 병인 ①.
 135) 《太宗實錄》卷16, 태종 8년 8월 15일 경인 ①.
 136) 《文宗實錄》卷1, 문종 즉위년 3월 16일 경신 ⑤.
 137) 《文宗實錄》卷5, 문종 1년 1월 25일 을축 ③.
 138) 《文宗實錄》卷9, 문종 1년 8월 22일 정해 ①.

중 赦宥에 해당하는 죄인의 告身 還給에 대한 세종 30년 4월 논의도, 결국 赦宥를 받았으니 職牒을 還給함이 옳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奸盜·風俗과 관련된 일을 제외하면 輕重에 따라 주거나 주지 말도록(罪未結正之前, 既蒙赦宥, 職牒亦宜還給, 但奸盜及罪係風俗者外, 其餘隨罪輕重, 或給或不給.)¹³⁹⁾ 결정하였다. 두 사례를 종합하면, 赦宥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에도 불구하고 告身 追奪을 감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赦宥에도 불구하고 追奪을 감행한 두 번째 원인은, 赦宥 자체를 악용하려는 편법적 행위였다. 구체적으로는 贓汚 등의 죄를 지은 관원이 告身을 지참하고 도망하였다가, 赦免이 있는 뒤 나타나 용서받음으로써 告身 追奪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세종 19년 8월 사헌부의 상소는 당시 상황을 드러낸다.

“최근 수령들이 탐욕스러워 관물을 도둑질해 공공연히 빼돌리는데 옳지 못합니다. (이들의 죄가) 드러나도 告身을 챙겨 도망쳐 숨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 하고, 사면받을 기회만 엿보다가 죄를 면하는데, 담당 관청에서도 사면 규정에 얽매어 처벌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贓罪를 범한 자가 (제도의 허점을) 본받아 탄핵이 있을 것 같으면 즉시 도망쳐 숨었다가, 한번 사면 조치가 있으면 뻔뻔스럽게 관직에 임명되기 때문에 못 사람들이 한심스럽게 여깁니다. (이러한 상황은) 징계하는 법뿐만 아니라, 풍속을 장려하는 도리에도 어긋납니다. 이제부터 贓罪를 짓고 도망쳤다가 사면 이후에 복귀한 자라도 사면 이전에 잘못을 저질렀으니 刺字하는 예에 의하여 告身을 거두고 贓吏案에 이름을 기록해서 영구히 관직에 임명하지 말도록 하여 뒷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풍속을 바로 세우십시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당시 贓罪를 짓고 도망쳐 숨은 관리들이 많았다. 知高城郡事 이정문은 관물을 도둑질했다가 들통 나 사헌부가 조사하니 빼돌린 물건 값이 25貫으로 杖流·刺字에 해당하였다. 판결 이전에 이정문이 도망쳐 숨었으므로 체포하게 하였으나 잡지 못했다.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¹⁴⁰⁾

139) 《世宗實錄》卷120, 세종 30년 4월 24일 기묘 ④.

140) 《世宗實錄》卷78, 세종 19년 8월 7일 갑자 ⑤, “… (진략) … “近來守令之貪饕, 相繼不絕, 盜取官物, 公然馱載, 不義之極, 人厭神怒, 終以敗露, 則輒齎告身逃匿, 自以爲得計. 苟脫天(綱), 窺伺赦宥, 僥倖免罪者有之, 攸司拘於赦條, 未得追論. 由是後之犯贓者, 爭效前轍, 如有舉劾, 隨即逃匿, 一經赦宥, 靦面無恥, 與士大夫同立于世, 得齒人類, 識

赦宥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비리 관원들의 행태를 慨嘆하는 사헌부의 위 상소는 赦宥 이전 행위에 대한 追奪 면제를 감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헌부의 상소에서 묘사한 당시 상황 및 뒤이은 이정문의 贓罪 사례는, 이미 告身 追奪을 회피함으로써 관원의 신분을 유지하고자 했던 편법적 일탈행위가 만연하였음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세종 19년(1437) 이후에는 赦宥 이전의 범죄 - 특히 贓罪 - 임을 근거로 告身 追奪의 예외사항임을 항변할 수 없게 되었지만¹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행히 赦宥를 바라고 告身을 빼돌려 잠적하는’ 행태와, 이를 예외 없이 벌하는 조치는 성종조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종 21년 9월에는 의정부의 제안대로 아예 ‘告身을 本家에서 거두고 贓物에 해당하는 만큼 贖을 받으며, 赦宥가 경과하였더라도 처벌토록 하여(自今犯罪在逃窺免者, 須當本家, 收奪告身, 又徵其贖. 雖經赦宥, 亦依此例施行)’ 告身을 철저히 거두도록 하였다.¹⁴²⁾ 이후에도 贓罪가 발각된 전 楊州府使 민근이 문종의 건강이 악화되자 문종 승하 후 赦免습을 노리고 버티다가 결국 減刑하되 告身 追奪은 면하지 못하였고¹⁴³⁾, 세조 2년 3월에 贓罪를 범하고 告身을 지참하여 도주한 장문효의 경우 세조 3년 5월에 마침내 붙잡아 刺字刑·告身 追奪·贓吏案 기록·永不敍用의 중벌을 내렸다.¹⁴⁴⁾ 성종조에도 수차례 赦宥를 노린 追奪 회피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오래된 무덤을 도굴한 贓罪를 지은 전 흥덕현감 임은의 경우 도주하였다가 뒤늦게 告身을 낸 기록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⁴⁵⁾ 이와

者慨嘆, 非惟戾於懲惡之法, 實有違於勵俗之道. 自今犯贓在逃, 赦後出者, 罪名既成於赦前, 依刺字人例, 輒收職牒, 錄名于案, 永不敍用, 昭示後來, 以正士風.” 從之. 時贓吏逃匿者頗多, 知高城郡事李正文盜用官物, 事覺, 憲府劾之, 計贓二十五貫, 按律當杖流刺字, 未及論決, 正文逃匿, 移文中外, 搜捕未得, 故有是請也 … (후략) …”

141) 《世宗實錄》卷78, 세종 19년 8월 15일 임신 ③ ; 《世宗實錄》卷113, 세종 28년 9월 22일 정해 ①.

142) 《世宗實錄》卷86, 세종 21년 9월 29일 갑술 ③.

143) 《端宗實錄》卷1, 단종 즉위년 6월 12일 계유 ①.

144) 《世祖實錄》卷3, 세조 2년 3월 17일 병술 ② ; 《世祖實錄》卷7, 세조 3년 5월 22일 갑신 ②.

145) 《成宗實錄》卷117, 성종 11년 5월 11일 경인 ⑥ ; 《成宗實錄》卷129, 성종 12년 5

같이 빈번하게 발생한 탈법 사례를 감안하여, 《經國大典》〈刑典〉[推斷]條에서는 告身을 갖고 도망쳐 숨은 자에 대해 赦宥에도 불구하고 追奪도록 규정하여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¹⁴⁶⁾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告身을 은닉하여 追奪을 피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⁴⁷⁾

제3절 告身 追奪의 특수사례

1. 관원 夫人의 爵牒 追奪

관원 및 종친의 부인에 대해서는 《經國大典》〈吏典〉[外命婦]條에서 왕의 유모인 奉保夫人·공주·옹주와 별개로 알맞은 품계를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주·옹주 등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남편인 駙馬의 품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外命婦의 無品으로 간주되었던 반면¹⁴⁸⁾, 관원·종친의 부인은 [外命婦]條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편인 관원의 품계를 따라서(封爵從夫職) 규정되었다.

조선 초기 관원·종친의 告身을 거둔 경우, 그 부인의 爵牒 역시 이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통상적이었다.¹⁴⁹⁾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세종 12년 12월 기사¹⁵⁰⁾에서는 부녀자가 杖刑 이상의 죄를 짓는 경우 職牒을 回收하는지를 세종이 묻자 우대언 김중서가 그렇다고 답하였는데, 김중서의 대답은 관원 부인이 자신의 지은 죄에 따라 독립적으로 爵牒이 追奪되었음을 긍정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세종은 부인은 남편을 따르

월 11일 을유 ②

146) 《經國大典》〈刑典〉[推斷]條, ‘… 非因罪犯未出謝者皆並計, 持告身逃匿者, 經赦亦奪 ….’

147) 《成宗實錄》卷220, 성종 19년 9월 28일 무자 ①.

148) 차호연, 「조선초기 公主·翁主의 封爵과 禮遇」, 『조선시대사학보』 77호, 조선시대사학회, 2016. 6. 92-95면.

149) 태종조에 숙청된 외척 민무구·민무질의 경우, 그 부인까지 官敎·도장을 모두 거두고 남편을 따라 安置시켰음을 알 수 있다. 《太宗實錄》卷16, 태종 8년 10월 19일 기사 ①.

150) 《世宗實錄》卷50, 세종 12년 12월 16일 임오 ①.

는 것이니 남편이 현직에 있으면 부인의 職牒을 追奪하지는 않는 것이며, 부인이 杖刑 이상의 죄를 범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종 13년 10월에 이르면 안승선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편인 官員이 職牒을 追奪당한 경우 그 부인의 爵牒도 거두게 하였으며, 도로 官員의 職牒을 還給할 때도 부인의 職牒 역시 還給토록 하였다.¹⁵¹⁾ 단종 1년 남편인 영응대군에게 버림받은 춘성부부인 정씨의 封爵한 官敎를 追奪한 사례¹⁵²⁾ 역시, 종친 부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追奪이 이뤄진 것이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관원 妻의 爵牒은 夫人 관원의 신분에 從된 것으로 남편인 관원의 告身 追奪·還給 여부 등에 좌우되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관원의 告身이 그 아내의 爵牒 追奪 여부에 종속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세종 22년 6월에는 이맹균의 妻가 妾을 때려죽이자 이맹균의 告身은 “宗社에 관련되지도 않은 잘못으로 대신의 告身을 거둘 순 없다”고 하여 追奪치 않고, 그 妻의 職牒만 收奪하였다.¹⁵³⁾ 물론 문종 즉위년 3월 迷信을 행하였다가 不敬罪를 지은 고부지돈녕부사 김증업의 아내 조씨에 대해서는, 의정부에서 장성한 아들이 없으니 爵牒을 거둘 것(家無壯子, 宜收爵牒)을 청하였다.¹⁵⁴⁾ 여기서 의정부의 논의를 뒤집어 해석하면, 성인인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조씨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大明律》〈戶律〉[鹽法]條에서는 사사로이 소금을 만든 부인에 대해, 남편이 없고 아들이 부인의 잘못을 알지 못하거나 어린 경우에는 부인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¹⁵⁵⁾ 다만 이를 부인의 죄에 대해 남편 내지 장성한 아들의 告身까지도 거두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大明律》〈名例律〉[共犯罪分首從]條에서는 尊長인 부인과 卑幼인 남자가 함께 지은 죄에 대해 남자만 처벌토록 하였으므로¹⁵⁶⁾, 의정부가 ‘장성한 아들’을 거론한 것은 부

151) 《世宗實錄》卷54, 세종 13년 10월 29일 경신 ①.

152) 《端宗實錄》卷9, 단종 1년 11월 28일 경진 ④.

153) 《世宗實錄》卷89, 세종 22년 6월 18일 무자 ①.

154) 《文宗實錄》卷1, 문종 즉위년 3월 19일 계해 ①.

155) 《大明律》〈戶律〉第151條 [鹽法]條, “… 凡婦人有犯私鹽 若夫在家 或子知情 罪坐夫男, 其雖有夫而遠出, 或有子幼弱 罪坐本婦 ….”

인 대신 처벌할 卑幼인 남성의 존재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죽은 김중엄의 告身을 거두는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 死者에 대해서도 告身 追奪이 존재했었음을 감안하면 조씨의 爵牒 追奪이 비록 죽은 뒤이기는 하나 그 남편의 告身을 追奪하는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종합하면 부인의 爵牒이 남편인 관원의 告身 追奪에 從屬적인 반면, 관원의 告身은 부인의 爵牒 追奪과는 독립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妻가 妾을 학대하는 등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인 관원의 告身을 거둔 사례가 존재하지만¹⁵⁷⁾, 이는 한 집안의 家長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관원 본인의 책임을 물은 것이므로 부인의 爵牒을 거둔 것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 애초에 부인의 爵牒이 남편의 官職에서 비롯된 종속적인 관계 그 자체는 세종 12년 12월 당시 세종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세종은 부인이 杖刑 이상의 죄를 짓는 경우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妾을 질투하여 살해하는 등 妻로써 職牒 회수에 이르는 범 죄를 실행한 부인이 존재하였다. 애초에 조선은 부부간의 범 죄에 대해서도 유교적 위계질서 및 情理를 바탕으로 남성에게 보다 경감된 처벌을 용인한 신분제 사회였다.¹⁵⁸⁾ 부인 爵牒에 대한 차별적인 追奪 조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기본적으로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던 부인 爵牒의 성격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 署經의 未備에 따른 告身 追奪

署經制度는 관직 임명 후보자에 대한 人選을 확정하기 위해 臺諫으로부터 5품 이하의 職에 한정하여 출신성분·家系·범 죄이력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받는 제도로¹⁵⁹⁾, 인사권을 행사하는 왕권을 견제하는 구실을

156) 《大明律》〈名例律〉第29條 [共犯罪分首從] 條, “… 若家人共犯 止坐尊長. 若尊長年八十以上及篤疾 歸罪於共犯罪 以次尊長.< … 又如婦人尊長 與男夫卑幼同犯 雖婦人爲首 仍獨坐男夫.> ….”

157) 《成宗實錄》卷49, 성종 5년 11월 1일 임자 ④.

158) 유승희, 「조선후기 형사법상의 젠더(gender) 인식과 여성 범 죄의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53집, 조선시대사학회, 2010. 6, 260-264면.

하였으므로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을 두고 성종조까지 君臣 간의 지속적인 갈등 과정에서 잦은 변동이 있었다. 예를 들면 태종 13년 10월부터는 갑론을박 끝에 4품 이상 高官에 대해서는 署經을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官敎法을 부활시켰으며¹⁶⁰⁾, 세조조에는 이전과는 달리 告身을 먼저 발급한 뒤에야 臺諫 署經을 하도록 하여 署經의 효력을 약화시켰는데, 이러한 점이 告身式에 반영되기도 하였다.¹⁶¹⁾

본 항목에서 署經 관련한 告身の 追奪은 대개 署經 제도의 잦은 변경이 軍士의 告身 署經 유무와 관련하여 유발한 혼란과 관련이 있다. 署經의 중요성이 퇴색한 세조 집권기에는 변방 근무에 종사하여 告身の 署經 및 憑考가 어려운 軍士들을 배려하여, 먼저 告身을 지급한 뒤 署經을 하여 祿俸을 받도록 한 바 있다.¹⁶²⁾ 이는 軍士들이 告身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¹⁶³⁾, 예종조에도 신속한 告身 발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¹⁶⁴⁾

그런데 臣權이 강성해지던 성종 초기에는 署經을 복구하는 취지에서, 京外의 朝官·軍士 등의 告身을 기존의 것까지 다시금 자세히 조사(考査)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¹⁶⁵⁾ 그 결과 軍士들 중 告身을 명시한 기간에 제출하여 조사받지 못한 까닭에 追奪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점은 검토를 위해 軍士가 告身 제출해야 할 기한이 2달로 다소 촉박하였던 점으로, 이 기간 중 考準하지 않은 軍士의 告身은 追奪토록 하였다.¹⁶⁶⁾ 그 결과 대조해야 할 이전 告身の 이력을 알기 어려운 사정, 피치 못할 사정으로 考準할 수 없는 경우에도 追奪하는 조치에 대

159) 《經國大典》〈吏典〉[告身] 條, ‘凡受職者, 告身五品以下, 考司憲府·司諫院署經給之. <議政府·吏兵曹·司憲府·司諫院·掌隸院·弘文館·春秋館·知製敎·宗簿寺·侍講院 都事·守令, 考內外四祖及己身右痕咎與否署經. 都摠府 宣傳官·部將同.>….’

160) 《太宗實錄》卷26, 태종 13년 10월 22일 무진 ④.

161) 박준호, 앞의 논문, 112-116면.

162) 《世祖實錄》卷39, 세조 12년 7월 9일 무인 ①.

163) 《世祖實錄》卷2, 세조 1년 11월 10일 신사 ⑥.

164) 예를 들어 예종 1년 7월에는 신속주가 軍士의 고신을 신속히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兵曹 대신 部長이 新舊 告身을 대조하도록 청하기도 했다. 《睿宗實錄》卷6, 예종 1년 7월 8일 기축 ②.

165) 《成宗實錄》卷1, 성종 즉위년 12월 13일 임술 ③.

166) 《成宗實錄》卷1, 성종 즉위년 12월 15일 갑자 ④.

한 반발이 뒤따랐다.¹⁶⁷⁾ 때문에 제도 시행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달 이내에 告身을 署經하지 못해 빼앗긴 자들에게 다시금 還給 하였으며¹⁶⁸⁾, 그나마도 禮曹에서 특별히 기한을 더 늘려 줄 것을 청한 결과¹⁶⁹⁾ 告身 반납 기한이 200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⁰⁾ 《經國大典》〈兵典〉[告身]條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성종 5년의 受敎를 따라 평안·함경도 軍士의 경우 考準 등 검토를 위해 告身을 200일 내에 반납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告身과 받은 祿俸을 도로 거두도록 명시하였다.¹⁷¹⁾

다만 그 이후에도 변방의 군사가 考準을 위한 告身 제출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追奪의 위기에 몰리는 문제는 계속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성종 20년 6월 내금위 김현손은 강계부사인 父의 軍관으로 변방에 근무하였다가 복귀하였는데, 祿俸을 받은 것이 告身に 準하지 않음을 사간원이 탄핵하며 祿俸·告身을 모두 거둘 것을 청하였다.(司諫院以春等受祿不準告身, 啓請徵祿, 并奪告身.) 이에 대한 김현손의 변명과 논의 결과는 아래 인용문과 같다.

김현손 : “신은 그 때 멀리 서쪽 변방에 있었고 집에는 아들·사위가 없어 오직 아내만 홀로 있었으니, 어리석은 제 아내가 어찌 법을 알겠습니까? 법에 따르면 유죄이지만 정상참작하면 용서할 만한데, (祿俸·告身을) 바칠 것을 독촉하니, 형편이 어려워 활과 칼을 모두 팔아도 부족합니다…….”

승정원 : “김현손의 상황은 딱하지만 《經國大典》의 원칙을 어길 순 없습니다.”

성종 : “가난한 무사의 녹봉을 추징하는 것은 가엾은 일이다. 이번만 특별히 (김현손에게) 녹봉을 돌려주고 告身은 거두지 말게 하라.”¹⁷²⁾

167) 《成宗實錄》卷4, 성종 1년 4월 14일 임술 ③.

168) 《成宗實錄》卷6, 성종 1년 6월 27일 갑술 ④.

169) 《成宗實錄》卷10, 성종 2년 5월 25일 정유 1②.

170) 《成宗實錄》卷47, 성종 5년 9월 17일 기사 ②.

171) 《經國大典》〈兵典〉[告身]條, ‘… 兩界軍士告身, 送于其道, 觀察使考前受告身分給, 受祿後, 滿二百日不納前受告身于司諫院者, 亦收告身徵祿.’

172) 《成宗實錄》卷229, 성종 20년 6월 18일 을사 ②, “ “ … (전략) … 其時臣遠在西塞, 家無子壻, 唯妻獨在, 微劣婦人, 豈識科程? 據其法則雖若有罪, 原其情則在所當恕. 官差督納, 辦出無地, 盡賣弓刀, 尙不能給. … (중략) … 乞霈洪澤, 以救十口倒懸之急.” 命議于承政院. 金克儉·韓健·曹克治·安瑚·洪興·朴楣議: “賢孫之訴雖若可矜, 《大典》之法不可搖動.” 傳曰: “貧寒武士追徵祿俸, 亦可矜憐. 今宜從權特給其祿, 勿收告身.” ”

김현손은 본인이 법을 어겼음은 인정하면서도, 피치못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용서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일찍이 兩界 군사들이 告身을 적시에 중앙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經國大典》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변방과 중앙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갈렸는데¹⁷³⁾, 김현손 사건이 성종 20년에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후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 승정원에서 지적한대로 김현손의 잘못이 《經國大典》 규정에 위배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그의 녹봉과 告身을 거두지 말도록 한 것은, 결국 변방 군사가 도성까지 기한 내에 기존 告身을 제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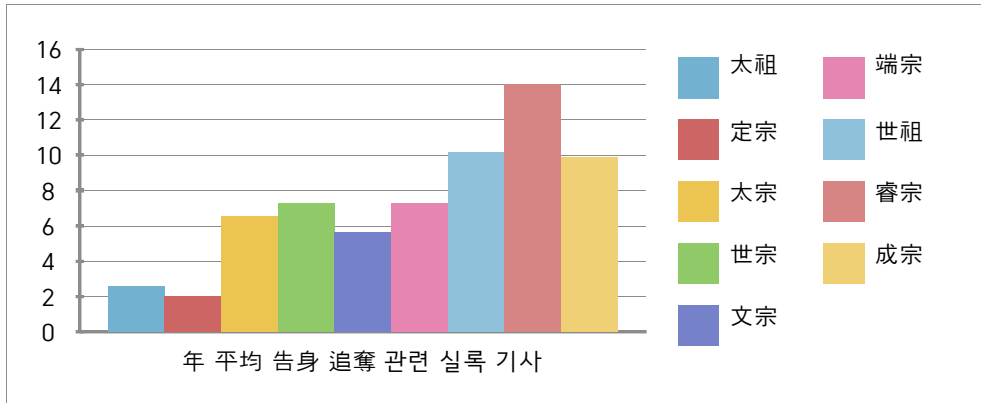
제4절 告身 追奪의 추이와 분석

告身 追奪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조선 초기 告身 追奪의 양상을 정리할 수 있다. 告身 追奪은 관원으로서의 신분적 지위를 박탈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당연히 관원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차원에서 本刑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告身 追奪의 대상이 된 관원 범죄는 가볍게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에서부터, 무겁게는 국가의 근간인 유교윤리를 손상시키는 綱常罪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합계	평균
회수(회)	18	4	118	240	17	29	142	28	257	853	94.78
年間회수 (회/년)	2.58	2	6.56	7.27	5.67	7.25	10.14	14	9.88	-	8.36

【표 12】 조선 太祖朝-成宗朝 告身 追奪 관련 기사 통계

173) 《成宗實錄》 卷47, 성종 5년 9월 17일 기사 ②.



【그림 2】 조선 太祖朝-成宗朝 告身 追奪 관련 기사 그래프

위 도표와 차트는 조선 초기 告身 追奪 관련 실록 기사의 출현 빈도를 나타낸 것이며, 특히 차트는 각 王代의 告身 追奪 관련 실록 기사가 年平均 몇 회 기록되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앞선 개별 범죄에 따른 追奪 항목에서 언급하였듯이, 재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자료의 誤讀을 유발할 소지가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도표 자료는 조선 초기 告身 追奪의 전반적인 양상을 대강이나마 수치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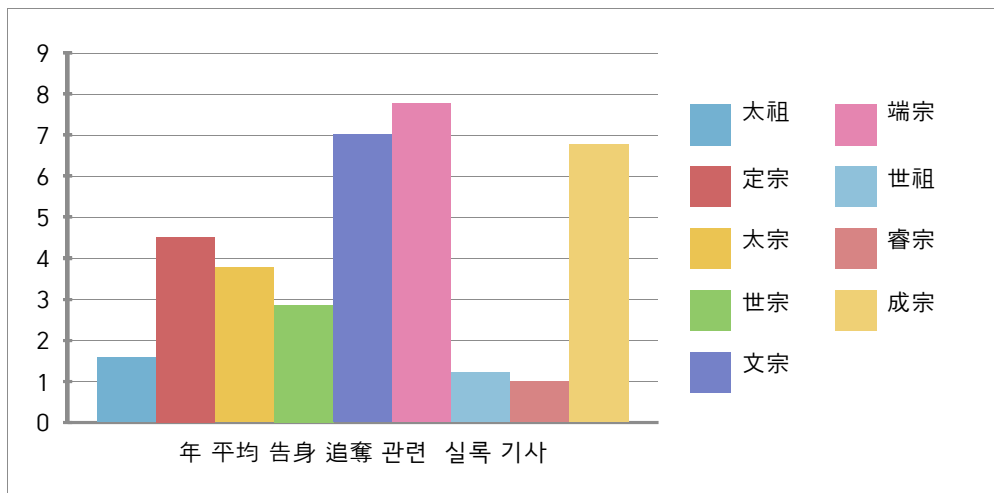
살펴보면 成宗朝에 이르기까지 追奪 관련 기사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종조에 이르기까지 年平均 告身 追奪 관련 기사의 등장 횟수는 약 8.36건인데, 건국 초에는 드물었던 것이 태종조부터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 차트에서는 告身 追奪 관련 기록이 급증한 시기는 대체로 정국의 급변이 있었던 시점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치적 혼란이 告身 追奪 등 기존 관원의 신분 박탈 및 축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異·同腹 형제 및 妻族·功臣을 숙청하면서 왕권을 굳건히 하고자 한 태종조, 찬탈에 가까운 집권으로 대규모 獄事를 겪어야 했던 단종·세조조의 경우 횟수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조까지 告身 追奪로 이어지는 각종 관원의 범죄는 보다 세밀하고 엄격하게 규율되는 경향이 있었다. 태종조에 奴婢訟事와 관련하여 告身 追奪 및 杖刑·充軍·刺字를 논의한 기록, 贓汚罪에 대한 엄격한 처벌

요구, 세종조부터 등장하여 세조·성종조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正妻 학대 및 妾 편애에 대한 처벌 등 追奪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은 점차 세분화·구체화되었다. 이른바 유교적 중앙집권국가의 이념을 조선 초기부터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야기된 이러한 현상은, 앞서 설명한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告身 追奪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이어졌다.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합계	평균
회수(회)	11	9	68	94	21	31	17	2	176	429	47.67
年間회수 (회/년)	1.57	4.5	3.78	2.85	7	7.76	1.21	1	6.77	-	4.21

【표 13】 조선 太祖朝-成宗朝 告身 追奪 면제 관련 기사 통계



【그림 3】 조선 太祖朝-成宗朝 告身 追奪 면제 관련 기사 그래프

한편 관원의 잘못에 대해 臺諫·의정부 등에서 職牒을 거둘 것을 청하였음에도 追奪에 이르지 않아 용서하거나 罷職 등에 그친 사례를 종합한 위 도표 및 차트에서는 다소 불규칙한 형태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 도표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원·종친 등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인 追奪 요구가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위 도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종조 임사홍의 還給한 告身을 도로 거둘 것을 촉구하는 기록은 성종 17년 3월 6일부터 28일까지 총 17건이나 검색된다. 이는 癸酉靖難으로 숙청된 안평대군 세력에 대한 告身 追奪 요구가 빗발쳤던 단종-세조조에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만 가혹한 刑政보다는 德治에 따른 처분을 유교적 道學君主의 지향할 바로 여겼던 까닭에 응당 追奪로 이어질 법한 죄에 대해서도 면하는 등의 경우도 존재하였다. 贓罪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먼저 세조 11년 7월 豹皮·魚物 등을 한명회 및 경기관찰사 최한경에게 바친 공조참의 윤잠은 단지 罷職에 그쳤다.¹⁷⁴⁾ 마찬가지로 성종 2년 5월 魚肉을 사사로이 선물로 보낸 강원도관찰사 이극기 역시 의금부에서 杖80 및 告身 3등 追奪에 해당한다고 아뢰었음에도 罷職에 그쳤다가, 그나마 반 년 뒤에 다시 성균관 대사성의 관직을 받았다.¹⁷⁵⁾ 贓汚罪는 대표적인 私罪로서 마땅히 告身 追奪의 대상이 되지만,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追奪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위 도표 및 차트에 반영되어 있다.

위 유형별 告身 追奪 사례를 정리하면 조선 초기 告身 追奪이 기본적으로는 《大明律》·《經國大典》상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별사례의 특수성 및 賞罰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국왕의 판단에 따라 追奪을 면하거나, 혹은 追奪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追奪을 감행하는 등의 예외가 존재하였음을 부인할 순 없다.

전자의 경우, 비록 杖刑 이상의 私罪에 대해서만 관원의 告身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신분상의 이유 및 범행시점이 赦宥 이전에 있었음을 이유로 追奪을 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외에도 死者의 生前 범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변방에 근무하는 군사로서 기존에 보유한 告身을 쉽게 중앙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참작될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告身 追奪을 면제하였다.

반대로 원칙적으로는 追奪 대상이 아님에도 告身을 追奪한 경우는, 특

174) 《世祖實錄》卷36, 세조 11년 7월 4일 기유 ②.

175) 《成宗實錄》卷10, 성종 2년 5월 13일 을유 ① ; 《成宗實錄》卷13, 성종 2년 11월 13일 신해 ⑤.

히 公罪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세종조까지는 公罪에 대해서도 告身을 거두었는데, 追奪을 명시적으로 私罪에만 한정된 이후에도 간헐적으로나마 公罪에 대한 告身 追奪이 있었다. 이러한 예외사례는 告身 追奪 등의 징벌을 포함한 조선 초기의 전반적인 형벌체계가 人治의 한계를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드러내는 증거물이다.

제4장 告身의 還給

제1절 告身 還給의 유형

1. 정기적 還給과 유효기간 문제

《經國大典》〈吏典〉[薦舉]條에서는 罷職된 자와 더불어 告身을 回收당한 文·武官에 대해 매년 6·12월에 그 罪名이 기록된 명단을 왕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¹⁾ 이 규정은 太宗朝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실록 기사들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종 8년 11월에는 죄인 중 석방하여 용서할 만한데도 계속해서 죄를 입는 점이 가없다는 이유로 “各司에 갇힌 사람·職牒을 回收한 사람·各道에 付處한 사람”을 매월 초하루마다 기록하여 啓聞하며, 이를 恒式으로 삼도록 하였다.²⁾ 世宗朝에는 宗簿寺로 하여금 貶黜되거나 告身을 빼앗긴 宗親을 四孟朔(1·4·7·10월)마다 죄를 받은 日月을 옮겨 적어 啓達하는 恒式을 마련하게 하였다.³⁾ 世宗朝의 傳旨는 太宗朝의 것과는 달리 宗親에 한정된 것이지만, 역시 告身이 追奪된 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赦宥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아가 告身 追奪의 기간과 사유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였으므로, 이를 정기적인 還給 심의의 근거자료로 삼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정기적 告身 還給과 관련하여 특히 살필 부분은 告身 還給에 확정된 기한이 존재하였는지의 문제이며, 특히 ‘2年설’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관원의 告身을 거두어들였다가 2년 뒤에 돌려주었음은 정구복의 선행연구를 소개하면서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구복의 연구는 告身の 전반적인 概觀이 목적이었으므로, 정기적인 告身の 還給 기한이 2년으로 설정된 역사적 배경 내지는 연원에 대

1) 《經國大典》〈吏典〉「薦舉」條, “…… 凡收告身及罷職者, 每冬·夏季月 具罪名 啓聞 <兵曹同>.”

2) 《太宗實錄》卷16, 태종 8년 11월 27일 신미 ①.

3) 《世宗實錄》卷103, 세종 26년 2월 15일 을미 ①.

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본 항목에서는 실록과 《經國大典》의 관련 규정을 토대로 告身을 정기적으로 還給한 2년의 기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더욱 보충하고자 시도하였다.

현행 형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의 영구적 상실을, 동조 제2항과 형법 제44조 제2항은 유기징역 및 유기금고에 처해진 자에 대해 일정기간 공무원 자격을 제한적으로 상실시켰다. 한편 형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제43조에 기재된 자격 정지 기한을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經國大典》 및 《大明律》에서는 告身 追奪에서부터 還給에 이르는 기한에 대해 직접 다른 규정을 찾기 힘들다. 다만 유사한 규정으로 관리의 근무 성실도·과오에 대한 평가를 규정한 《經國大典》〈吏典〉[考課] 條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告身을 빼앗기거나 罷職된 관원에 대한 敍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근무성적평정에서 下를 받은 자와 私罪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 <의친과 공신이 근무성적평정에서 下를 받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임용되고, 당상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告身이 거뒀다가 다시 받은 사람도 파직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병조도 같다.⁴⁾

[考課] 條에서는 관원에 대한 정기평가에서 下等を 받거나 私罪로 파직된 관원 중 告身을 빼앗겼다가 다시 받은 사람의 경우 罷職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2년 - 議親·宗親의 경우 1년 - 이 지나야 敍用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唐六典》에서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告身을 거두도록 한 규정과 비슷한 부류의 규정인데, 다만 《唐六典》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敍用할 수 있는 기한을 별도로 두진 않았었다. 성종 9년 6월 성종은 [考課] 條에 대해 아래와 같은 受敎를 내린 바 있다.

4) 《經國大典》〈吏典〉[考課] 條, “…… 褒貶居下等及犯私罪罷職者, 經二年乃敍 <議親·功臣居下等者, 經一年. 堂上官 不在此限. 收告身還受者 亦以罷職日始計 .> 兵曹同.”

吏曹에 傳敎하기를, “《經國大典》에는 私罪를 지어 과직된 자는 2년이 지나야 서용하게 하였는데, 告身을 거둬들인 자의 경우에는 서용 年限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그 告身을 거둔 날을 기점으로 계산해서 기한이 되면 서용하도록 하라.” 라 하였다.⁵⁾

吏曹에 내린 傳敎에 따르면 성종 9년(1478년)까지는 告身을 거둔 관원을 敍用하는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經國大典》〈吏典〉[考課]條의 해당 규정과 더불어 살펴보면, 위의 告身을 거둔 관원의 敍用 시점인 ‘告身을 거둔 날(其自收告身日)’이란, 敍用하기 위한 기산일인 ‘罷職된 날(亦以罷職日始計)’을 일컫는 것임이 분명하다. 受敎가 있었던 시점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부분은 있다. 《經國大典》은 세조조부터 편찬 작업을 착수하였는데, 성종 5년 시행하였으나 다시금 논의할 필요가 있어 改修한 끝에 성종 16년에 최종적으로 頒布하였다.⁶⁾ 따라서 성종 5년 당시에는 告身을 거둔 자에 대해서는 敍用の 기한을 두지 않았겠지만, 성종 16년에 최종 반포된 《經國大典》에서는 성종 9년의 결정에 따라 ‘告身이 거둬지고 罷職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용토록 명시되었다.

물론 告身 還給과 敍用이 전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성종 4년 5월 오백창의 敍用 문제를 예시로 살펴보자. 성종 3년 3월 7일을 기점으로 오백창은 贓罪문제로 지속적인 탄핵을 받아 같은 해 8월 告身을 追奪당한 바 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11월 한명회의 요청에 의해 告身을 돌려받았으며, 이듬해 초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성종 4년 5월에 오백창을 敍用하였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⁷⁾ 오백창에 대한 臺諫의 탄핵에서도 敍用的 경우 [考課]條 규정을 인용하여 2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한 반면⁸⁾, 告身 還給과 관련하여서는 구태여 [考課]條를 인용

5) 《成宗實錄》卷93, 성종 9년 6월 25일 을묘 ②. “傳于吏曹曰: “《大典》內: ‘犯私罪罷職者, 經二年乃敍. 若奪告身者, 無敍用年限.’ 其自收告身日爲始, 計限敍用.”

6) 박병호, 『韓國法制史』, 민속원, 2012, 41-43면.

7)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罪狀 발각 : 《成宗實錄》卷16, 성종 3년 3월 7일 계묘 ⑥. (ii) 告身 追奪 : 《成宗實錄》卷21, 성종 3년 8월 12일 병자 ①. (iii) 告身 還給 : 《成宗實錄》卷24, 성종 3년 11월 11일 계묘 ②. (iv) 官爵 제수 : 《成宗實錄》卷27, 성종 4년 2월 7일 무진 ⑤ (v) 敍用 : 《成宗實錄》卷27, 성종 4년 2월 7일 무진 ⑤.

하진 않고 告身 還給 자체의 부당함을 들어 비판하였을 뿐이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告身 還給의 기간을 2년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告身을 돌려받는 것이 敍用의 선결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즉, 告身 還給을 통해 官界에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어 敍用될 기회를 얻었을 것이므로, 敍用이 告身이 追奪된 지 2년 뒤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적어도 告身 還給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때문에 告身을 追奪된지 6개월 만에 돌려받거나¹⁰⁾, 혹은 2년 반 뒤에나 돌려받고서는 5년 뒤에 비로소 敍用된 예외 사례¹¹⁾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告身 還給 역시 특별히 告身을 돌려주지 말아야 할 사유나 단기간에 돌려 줄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2년을 전후로 하여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이뤄진 告身 還給은 국왕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사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연된 還給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告身 追奪者에 대한 관리 미비 내지는 의도적인 還給 배제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2. 사면에 의한 還給

본 항목에서는 사면조처에 따라 追奪된 告身을 대거 還給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고려의 경우 《高麗史》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면 기록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¹²⁾, 이러한 사

8) 오백창의 敍用과 관련하여 [考課] 條의 2년 기한을 언급한 탄핵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成宗實錄》 卷27, 성종 4년 2월 8일 기사 ③; 《成宗實錄》 卷27, 성종 4년 2월 9일 경오 ①; 《成宗實錄》 卷27, 성종 4년 2월 10일 신미 ③; 《成宗實錄》 卷27, 성종 4년 2월 12일 계유 ②; 《成宗實錄》 卷30, 성종 4년 5월 27일 정사 2·6·⑧; 《成宗實錄》 卷31, 성종 4년 6월 13일 임신 ④.

9) 오백창의 告身을 2개월 만에 돌려준 문제를 지적한 탄핵은 다음과 같다. 《成宗實錄》 卷24, 성종 3년 11월 12일 갑진 ④; 《成宗實錄》 卷24, 성종 3년 11월 14일 병오 ④; 《成宗實錄》 卷24, 성종 3년 11월 15일 정미 ③; 《成宗實錄》 卷24, 성종 3년 11월 17일 기유 ②; 《成宗實錄》 卷24, 성종 3년 11월 18일 경술 ②.

10) 告身 追奪(《成宗實錄》 卷270, 성종 23년 10월 25일 임술 ②); 告身 還給(《成宗實錄》 卷278, 성종 24년 윤5월 2일 을미 ⑨).

11) 告身 追奪(《成宗實錄》 卷113, 성종 11년 1월 21일 임인 ②); 告身 還給(《成宗實錄》 卷143, 성종 13년 7월 14일 신사 ①); 敍用(《成宗實錄》 卷173, 성종 15년 12월 1일 갑인 ④).

면제도는 조선시대에도 비슷하게 시행되었으며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明으로부터 詔勅·告命을 받거나 왕실 내외의 冠婚喪祭 등을 기념 혹은 추모하기 위한 사면이다. 이러한 사면의 목적은 죄인의 前科를 蕩滌하고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함인데, 정치적인 화합과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오늘날의 사면제도와 그 취지가 비슷하다. 두 번째로는 자연재해 등을 군주의 德망과 欽恤 부족에 따른 결과로 간주하고 죄인을 용서함으로서 冤抑한 사정을 달래고자 함이며,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현대의 사면제도와는 종류가 다른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¹³⁾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대에도 특정인에 한정하여 赦宥를 베푸는 특별사면이 존재하였으며, 그에 따라 특정 사면 대상자에 대한 告身의 還給 역시 결정권자인 왕의 의중에 따라 집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⁴⁾ 다만 그러한 특별사면은 還給 대상자 개인의 관련사건을 각각 분석하지 않고는 還給 조치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를 일일이 다루는 것은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사면에 따라 告身을 대거 還給한 경우를 분류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일반사면으로는 大赦·常赦·曲赦·降·德音 등이 있지만, 大赦·常赦의 경우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일정 지역의 죄인에 한하여 사면하는 曲赦나 죄를 輕減하는 降·德音은 조선 초기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¹⁵⁾ 그러므로 아래 항목에서는 告身의 대거 還給을 야기한 사면의 종류로 왕실의 경조사로 인한 경우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로 세분화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還給 조치와 관련된 의미에 대해 해석을 시도하였다.

12) 예컨대 《高麗史》世家 卷第5 성종 4년 5월에는 宋으로부터 冊命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사면령을 내렸음을 알 수 있으며, 《高麗史》世家 卷第7 문종 5년 5월에는 가뭄으로 인해 사면령을 내렸다는 짧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13) 유성국, 『유교적 전통사회의 사면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2. 36-39면.

14) 《端宗實錄》卷14, 단종 3년 6월 28일 임인 ①에서는 15개월 전인 단종 2년 3월 26일 實權者인 수양대군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가 告身을 빼앗기고 付處된 권득경에 대해, 그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告身을 돌려주고 放還하여 병구완을 하도록 조치한 기록이 있다. 이는 특정인(권득경)의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告身을 還給하고 용서한 사례이다.

15) 유성국, 앞의 논문, 40-65면.

1) 王室 一員의 慶弔事

조선 초기 왕실에 경축할 만한 일이 있었을 경우 대대적인 사면을 거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러한 사면 조치의 일환으로 告身을 還給하였다. 그 밖에 喪을 당하여 애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還給 조치가 이루어졌다. 실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왕실 경조사에 의한 告身 還給 기록은 건국초부터 성종조까지 총 32건인데, 그 빈도와 還給 인원 에 대한 개략적인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합계
회수(회)	1	·	3	2	2	1	7	2	15	33
인원(명)	4	·	39	56	40	164	90	未詳	522	915

【표 14】 왕실 慶弔事에 따른 太祖朝-成宗朝 告身 還給 관련 실록 기사·인원

위 표에서 태종·세종·문종·세조·예종·성종 등 대부분 왕대의 왕실 경조사로 인한 告身 還給은 단지 還給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몇 명을 還給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략적으로나마 還給 받는 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짐작할 수는 있다.

새로운 왕의 즉위나 세자·중전의 책봉의 경우 왕실의 慶事였으므로 기쁨을 만민과 나누려는 목적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우 초기에는 왕의 사망 직후에 이루어졌으나, 점차 새로운 왕의 즉위 이후에 赦宥를 베푸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¹⁶⁾ 조선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즉위에 맞추어 사면을 감행하여 告身도 還給하였던 것인데¹⁷⁾, 조선의 경우 明의 冊封을 받는 淸國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明의 정식 승인에 해당하는

16) 유성국, 앞의 논문, 68-83면.

17) 확인 가능한 즉위 직후의 告身 還給이 명시된 사면 기록은 문종(《文宗實錄》卷1, 문종 즉위년 2월 22일 정유 ⑥), 성종(《成宗實錄》卷1, 성종 즉위년 11월 28일 무신 ①)조의 기록인데, 이외에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매 왕의 즉위 시 告身 還給까지 포함하는 사면이 있었을 것이다.

告命이 도착한 뒤에도 별도로 告身 還給을 포함한 사면을 단행하였다.¹⁸⁾ 그 밖에도 탄신을 기념하여 사면 과정에서 告身을 돌려주기도 하였는데¹⁹⁾, 이 또한 즉위·책봉과 마찬가지로 왕실의 경사를 자축하고 용서할 만한 죄인은 용서하기 위함이었다. 독특한 사례로는 세조 때 중건된 원각사에 상서로운 기운이 드러났다는 보고에 대해 죄인들의 告身을 돌려주도록 명한 경우가 있는데²⁰⁾, 이는 세조의 불교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뿐만 아니라 癸酉靖難의 찬탈로 획득한 세조 자신의 전제왕권을 보다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던 당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²¹⁾ 佛事와 관련된 사면조치는 예종조에도 사면에 따른 還給을 위해 告身이 거둬진 자들의 이름을 적어 아뢰도록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²²⁾, 본격적인 抑佛政策으로 전환된 성종조에는 당연히 등장하지 않는다.

왕이나 중전·대비·세자 등의 병이 중한 경우 쾌유를 기원하며 사면을 감행한 경우는, 자연재해를 당하여 사면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치자의 德이나 刑獄 처리의 불합리로 인한 冤抑으로부터 원인을 찾았다.²³⁾ 세종 28년 3월 소헌왕후의 쾌유를 기원하며 職牒을 돌려주는 등

18) 확인 가능한 告命·冊封 관련 告身 還給이 명시된 사면 기록은 다음과 같다. 문종(《文宗實錄》 권5, 문종 1년 1월 29일 기사 ①)·단종(《端宗實錄》 권3, 단종 즉위년 윤9월 19일 무인 ⑥).

19) 《世宗實錄》 권12, 세종 3년 5월 16일 정축 ④ ; 《成宗實錄》 권115, 성종 11년 3월 14일 갑오 ② ; 《成宗實錄》 권183, 성종 16년 9월 8일 병진 ④ ; 《成宗實錄》 권73, 성종 7년 11월 29일 기사 ⑤.

20) 《世祖實錄》 권34, 세조 10년 9월 25일 을해 ① ; 《世祖實錄》 권34, 세조 10년 10월 10일 경인 ③ ; 《世祖實錄》 권36, 세조 11년 5월 6일 임자 ①.

21) 김종명, 「세조의 불교관과 치국책」, 『한국불교학』 58호, 한국불교학회, 2010. 11. 132-144면. 물론 김종명의 경우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세조가 불안정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崇佛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미 안정화된 왕권의 정통성을 추가로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불교 진흥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와 관련된 사면행위가 주로 세조 집권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崇佛 정책과 왕권 안정 간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이미 전제적인 왕권을 확립한 세조가 법의 공정성을 다소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治世를 과시하려는 결과로서 불교와 관련된 大赦免을 감행하였을 것이라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이정주, 「世祖代 후반기의 불교적 祥瑞와 恩典」, 『민족문화연구』 4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6. 247-261면.

22) 《睿宗實錄》 권1, 예종 즉위년 10월 23일 기유 ②.

23) 유성국, 앞의 논문, 90-95면.

사면 조치를 단행한 경우와 성종 5년 4월에는 成宗妃의 쾌유를 기원하며 42명의 告身을 돌려준 것²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자연재해에 따른 민심 수습책

자연재해에 대한 동양의 전통적인 견해는 기후현상과 군주의 통치를 연관하여 해석하는 ‘災異觀’이었는데²⁵⁾, 이러한 입장은 心性의 수련을 더욱 중시한 성리학과는 대조되었다.²⁶⁾ 조선의 경우 주자학적 입장에서 재해를 고찰하기도 했으나, 대개는 災異觀을 전제로 祭儀를 통해 인심을 수습하는 선에서 그쳤다.²⁷⁾

조선 초기 자연재해로 인한 告身 還給도 災異觀에 따른 조치였다. 세종 9년 6월의 가뭄 대책 논의에서는 《文獻通考》²⁸⁾의 가뭄 대책 부분²⁹⁾을 토대로 억울한 죄수를 구제하는 정당성을 제기한 결과 告身の 대량 還給으로까지 이어졌다.³⁰⁾

24) 《世宗實錄》卷111, 세종 28년 3월 19일 병술 ① ; 《成宗實錄》卷41, 성종 5년 4월 14일 무진 ③.

25) 유성국, 앞의 논문, 117-120.

26) 이상호, 「태종대 가뭄 대처 양상에 드러난 유학적 사유 : 『태종실록』의 가뭄 관련 기사와 재이관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3호, 한국국학진흥원, 2013. 12, 533-539면.

27) 이욱, 「許穆의 災異觀 - 그의 祭儀의 대응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14호,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5. 12, 162-168, 547-555면.

28) 1319년 馬端臨이 唐代 杜佑의 《通典》을 토대로 간행하였으며, 上古時代부터 宋代까지의 토지·학교·인재선발·제례·형정 등 중국 문물에 대한 책으로 총 348권을 구성되어 있다. 《通典》·《通志》와 더불어 ‘三通’으로 불리며, 앞선 두 저서와 달리 宋代의 현황도 반영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29) 《文獻通考》卷七十七, 〈郊社〉考十, “ … 大同五年, 又築雩壇於籍田兆內. 四月後旱, 則祈雨, 行七事一、理冤獄及失職者; 二、賑孤寡孤獨; 三、省徭輕賦; 四、舉進賢良; 五、黜退貪邪; 六、命會男女, 恤怨曠; 七、徹膳羞, 施樂縣而不作 ….”

30) 《世宗實錄》卷36, 세종 9년 6월 9일 병인 ②.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합계
회수(회)	、	、	7	23	、	、	2	、	25	57
인원(명)	、	、	52	1,134	、	、	70	、	1,520	2,776

【표 15】 자연재해에 따른 太祖朝-成宗朝 告身 還給 관련 실록 기사·인원

앞서 왕실의 각종 慶弔事에 따른 告身 還給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를 당하여 還給한 경우도 기록에 따라 ‘徒刑 이하의 죄수’, ‘社稷과 관련된 범죄를 제외한’ 등의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죄인의 職牒을 돌려주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還給받은 정확한 수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나마 告身을 還給받은 인원이 명시된 일부 실록 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자연재해에 따른 告身 還給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선 전기 告身 還給을 비롯한 각종 大赦免의 기본 전제로 災異觀이 작용하였던 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거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赦宥의 필요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종의 경우 왕자의 난 등으로 父 太祖 이성계와 同腹·異腹兄弟를 숙청하고 즉위한 도덕적 결함을 해소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뭄을 맞이하여 기우제를 지내는 등의 의식을 거행하여 자신의 집권과 통치를 정당화하였는데³¹⁾, 가뭄 등의 재해에 대한 告身 還給 역시 잠재적 불만세력을 회유하거나 태종 자신의 덕망을 드러냄으로서 왕권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災異觀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告身 還給과 같은 赦宥가 자연재해와 무관하다는 인식 내지 오히려 赦宥로 인해 마땅히 이뤄져야 할 징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하였다. 성종 12년 6월 가뭄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와중에 이전의 대사면에서 제외된 죄인의 職牒을 돌려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도승지 김승경과 성종이 나눈

31) 남지대, 「조선 태종의 권위 확충」, 『규장각』 45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11, 52-58면.

대화는 이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김승경 : “대사면 때 告身을 거둔 자는 (還給받는)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니, 모두 還給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종 :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은 것은 직첩을 還給하는 일과 관련이 없다.”³²⁾

성종의 위와 같은 태도는 告身 還給을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전통적 災異觀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위의 비관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災異觀에 기초한 告身 還給 자체가 이후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위 사례의 경우 다음 날 영의정 정창손·우의정 홍응이 거듭 職牒 還給을 종용하자 성종도 해당 인원의 명단을 조사하여 아뢰도록 지시하였으며³³⁾, 성종 21년 7월에는 가뭄과 더불어 사람이 벼락에 맞는 일이 벌어지자 성종조까지 기록된 인원으로는 가장 많은 689명에 달하는 인원의 告身을 還給하기도 하였다.³⁴⁾

사실 세종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告身 還給에 대해 국왕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예를 들어 세종 30년 5월에도 가뭄이 심했는데, 우찬성 김종서가 職牒을 거두는 일을 자제하는 등 관대한 처분을 건의하였다. 세종은 김종서의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도 처벌이 이미 너무 관대하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³⁵⁾

위 사례를 토대로 조선 초기 국왕들이 자연재해에 대응한 告身 還給 조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이유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告身 還給 등의 赦宥가 실제 자연재해의 극복·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데 따른 좌절감의 표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성종 13년 8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告身을 還給하는 등 원통한 獄事에 따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불효와 같은 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성종은 자신의 부덕함을 한탄하기

32) 《成宗實錄》卷130, 성종 12년 6월 22일 을축 ①, “… (전략) … 升卿曰: “大赦時收職牒者, 不得蒙恩澤, 并磨鍊還給何如?” 上曰: “雨不雨, 非關於還職牒也.” … (후략) ….”

33) 《成宗實錄》卷130, 성종 12년 6월 23일 병인 ②.

34) 《成宗實錄》卷242, 성종 21년 7월 7일 정사 ②.

35) 《世宗實錄》卷120, 세종 30년 5월 12일 병신 ②.

도 하였다.³⁶⁾

그러나 告身 還給을 ‘刑政의 한 요소로서의 사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고려할 때 잦은 還給으로 인한 징계의 효용성 저하 문제와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일반사면의 경우 대개 극한 사회적 갈등과 같이 엄정한 법 집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민감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지만, 관대한 처분을 통해 전과자의 갱생 및 이를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刑政制度에서의 사면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정의실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불가피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³⁷⁾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사면은 형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조선 초기 잦은 告身의 대량 還給에 비판적인 견해들 또한 이러한 맥락과 다르지 않다. 즉, 필요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告身 還給이 야기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告身의 대량 還給에 대한 반대론의 基底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절의 告身 還給의 예외 및 반대 여론에 관한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3) 정치적 고려에 따른 還給

조선의 경우 건국 초부터 성종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정치적 변동이 존재하였다. 당장 태조-정종조에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왕자의 난은, 태종 즉위 이후에도 조사의의 난과 같은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태종은 집권 이후에도 외척세력에 대한 숙청을 가하였으며³⁸⁾, 이 과정에 연루되어 告身을 追奪당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³⁹⁾ 단종-세조조에 이르

36) 《成宗實錄》卷144, 성종 13년 8월 4일 경자 ②.

37) 변종필, 「사면의 법리와 사면권행사의 법치화국가적 한계」, 『형사법연구』 12호, 한국형사법학회, 1999. 11, 288-293면.

38) 임혜련, 「조선초 원경왕후의 정치적 역할과 생애」, 『아시아여성연구』 43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4. 5, 30-35면 ; 양웅렬, 「15세기 王妃 家門의 變遷과 성격」, 『한국학논총』 제36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8, 114-118면.

39) 《太宗實錄》卷16, 태종 8년 7월 20일 병인 ①에서는 당시 죄를 입어 탄핵받은 민씨 형제를 敬差官으로 파견되어 가는 도중에 만나 본 전 判禮賓寺事 위충의 職牒을 거두고 덕산에 付處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면 숙청의 수단으로서 告身 追奪이 두드러진다.⁴⁰⁾

다만 그러한 혼란기를 수습한 뒤에는 사면 조치를 단행하여 정치적으로 배제된 관원 및 그에 연좌된 이들을 용서하였는데, 앞서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소·융합하는 일반사면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의도는 분명히 파악된다.

특히 反逆·不忠·不敬 등 상당히 민감하고 중대한 죄에 대한 還給은, 정치적인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예컨대 太祖朝에는 우현보 등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還給이⁴¹⁾, 太宗-世宗朝에 걸쳐서는 조사의의 난 관련자에 대한 告身 還給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 19년 3월에는 조사의의 난에 연루된 신희창의 職牒을 還給해 준 일을 논박한 사간원에 대해 세종이 물리친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세종은 조사의의 난을 일컬어 ‘임오년의 난은 人倫의 變이라 경솔하게 입 밖에 내어 글로 지어지고 사람들이 널리 알게 해서는 안 되는(且壬午年之事, 人倫之變也, 不可輕易出口, 作爲文字, 使人坦知也)’⁴²⁾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의의 난이란 실각당한 태조와 집권한 태종 父子의 권력다툼이었으므로⁴³⁾, 엄연히 반역죄에 연루된 자들이더라도 왕실의 恥部에 해당하는 만큼 告身을 돌려주어 수습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세조-성종조 기간에는 집권세력의 급격한 교체가 있었던 癸酉靖難 연루자들에 대한 還給⁴⁴⁾이 이뤄졌는데, 이 역시 정치적 갈등의 봉합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40) 《端宗實錄》 권8, 단종 1년 10월 17일 경자 1②에서는 癸酉靖難과 관련된 안평대군 측 인사들에 대한 告身 追奪이 단행되었으며, 《端宗實錄》 권8, 단종 1년 10월 24일 정미 ③에서는 癸酉靖難에 연루되어 이미 安置·定屬된 죄인의 告身도 아울러 거두도록 하여 철저한 숙청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41)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 5월 26일 임신 ②.

42) 《世宗實錄》 권76, 세종 19년 3월 24일 갑인 ②.

43) 안준희, 「朝鮮初期 太宗의 執權過程과 趙思義의 亂」,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2, 25-51면.

44) 예를 들면 《睿宗實錄》 권4, 예종 1년 3월 19일 계묘 ②.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합계
회수(회)	2	·	14	8	2	5	8	6	6	51
인원(명)	2	·	14	19	2	2	4	6	24	73

【표 16】 정치적 목적에 따른 太祖朝-成宗朝 告身 還給 관련 기사

앞선 還給 관련 통계에서도 그렇지만, 위 통계 역시 告身 還給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정확한 대상 인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한편 자연재해 등을 명분으로 告身을 還給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사면을 감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규모 還給을 단행하였지만 원인을 분명히 거론하지 않아 전후사정을 토대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위 도표에서 端宗朝의 정치적 赦宥에 의해 還給된 인원은 2명, 世祖朝는 4명에 불과한데, 이는 정치적 赦宥임이 분명한 경우만 집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이후 成宗朝와 더불어 대규모 告身 還給이 빈번하게 있었으며, 단종 2년 2월만 해도 158명이, 단종 3년 1월에는 169명이 告身을 돌려받았다.⁴⁵⁾ 이 시기 자연재해 및 기타 還給할 만한 다른 계기를 찾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은 ‘癸酉靖難으로 불안정해진 정국 안정 및 회유 작업’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단지 추정만으로 속단할 순 없으므로 일단 위 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4) 실무적 고려에 따른 還給

조선 초기에는 政務的으로 판단하여 해당 관원을 공무 등의 사유로 필요로 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단기간에 告身을 還給하는 경우가 있었다. 성종조까지의 사례를 종합하면, 무관·역관·諫官 등 전문 분야에 필요하거나 국가의 통치이념에 부합하기 위하여 還給의 혜택을 베풀

45) 《端宗實錄》卷10, 단종 2년 2월 19일 경자 ㉔ ; 《端宗實錄》卷13, 단종 3년 1월 30일 병자 ㉔ ; 《端宗實錄》卷13, 단종 3년 1월 30일 병자 ㉕.

있음을 알 수 있다.

4군 6진 개척 및 여진·왜구의 거듭된 침입이 있던 조선 전기에는 무관이 죄를 지어 告身이 거둬진 상태일 때 단기간에 還給하여 敍用함으로써 변경 방어를 위한 무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먼저 세종 15년 5월에는 야인 토벌에 공을 세운 자들 중 告身이 追奪된 경우 還給토록 하였다.⁴⁶⁾ 세종 16년 9월 우의정 최윤덕은 職牒을 追奪당한 무관들 중 외적 방어에 쓸만한 인재를 還給토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⁴⁷⁾ 이 시기는 세종 15년의 波猪江 여진족 토벌이 있던 직후였는데, 북방 근무 및 實戰에서의 공로를 토대로 무신으로는 최초로 우의정에까지 오른⁴⁸⁾ 최윤덕은 방비를 위해 무관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종 즉위년 4월에는 賊罪를 범한 설유·양치의 告身을 돌려주었는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還給이 감행되었던 것은 김종서의 표현대로 ‘지금 변경에 사변이 있으니 이러한 무리를 쓴다 하여 어찌 告身을 아낄 수 있겠는가(方今有邊警, 若用此輩, 則何愛告身?)’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었다.⁴⁹⁾

성종 6년 1월 창주에 야인이 침입한 문제로 이만손을 助戰將으로 삼도록 하였는데, 이만손은 성종 5년 6월에 官奴를 사유화하여 告身이 追奪된 바 있었다.⁵⁰⁾ 죄의 경중을 헤아리면 追奪된지 7개월이 지났을 뿐인 이만손의 告身 還給은 불가능했겠지만, 국방상의 긴급한 문제라는 현실적인 사정이 고려되어 告身을 還給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성종 13년 윤 8월에 이르면 告身을 追奪당한 인원 중 자원자에 한정하여 告身 還給을 대가로 변방에 赴防토록 결정하기에 이르게 되니,⁵¹⁾ ‘국경 방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告身 追奪 및 還給에서의 예외적인 적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혹은 국토방위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

46) 《世宗實錄》卷60, 세종 15년 5월 26일 무인 ②.

47) 《世宗實錄》卷65, 세종 16년 9월 25일 기해 ①.

48) 이석호, 「조선사 길라잡이 - 다시보는 조선왕조실록 ⑧ 세종시대의 인물3 - 조선의 방패, 최윤덕」, 『역사&문화』 8호, 역사문화연구회, 2006. 8. 8-12면.

49) 《文宗實錄》卷1, 문종 즉위년 4월 20일 계사 ①.

50) 《成宗實錄》卷43, 성종 5년 6월 22일 을해 ② ; 《成宗實錄》卷51, 성종 6년 1월 28일 무인 ①.

51) 《成宗實錄》卷145, 성종 13년 윤8월 15일 신사 ③.

단으로 告身 還給을 활용하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비슷한 경우로 明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通事에게 돌아갈 下賜品을 빼돌린 죄로 職牒을 빼앗겼었는데 이후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할 일이 있자 적임자로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9일 만에 職牒을 돌려받고 용서받는 사례가 있으며⁵²⁾, 인사 추천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추천한 승지들에 대해 明 사신을 신임 승지들이 접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追奪을 면하고 그대로 일하도록 한 경우⁵³⁾도 역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원의 告身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단기간에 還給하거나 追奪을 면한 것이다.

왕권을 견제하는 臺諫의 언론활동 과정에서 追奪된 告身도 還給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부분 단기간의 告身 還給이 이뤄졌다. 문종 즉위년 7월에는 박팽년이 세종의 신임을 얻어 활동한 중 신미에게 號를 올린 일을 논박하면서 신미가 세종을 속이고 문종을 미혹시킨다는 표현을 써 告身을 거두었는데⁵⁴⁾, 이후 두 달 만에 還給받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박팽년을 용서하고 告身을 還給할 것을 청하는 상소가 잇따랐다.⁵⁵⁾ 성종 19년 1월 대사헌 권건이 김석의 죄를 논하면서 근거로 든 소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자 制書有違律을 적용하여 告身을 追奪하였는데⁵⁶⁾, 이후 연달아 言路를 여는 차원에서 용서해 줄 것을 촉구하자 4개월 만에 돌려주었던 것⁵⁷⁾도 위 박팽년의 사례와 비슷하다. 언론활동 관련 告身 還給의 특징으로는, 다른 告身 還給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왕이 還給에 소극적이고 臺諫을 비롯한 관원들이 追奪된 諫員의 還給·敍用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三司의 언론활동 자체가 왕권을 제약하여 그 권위와 상충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으로 보인다.

52) 《世宗實錄》卷85, 세종 21년 4월 20일 정유 ⑧ ; 《世宗實錄》卷85, 세종 21년 4월 29일 병오 ①.

53) 《成宗實錄》卷128, 성종 12년 4월 7일 신해 ④.

54) 《文宗實錄》卷2, 문종 즉위년 7월 15일 정사 ① ; 《文宗實錄》卷2, 문종 즉위년 7월 16일 무오 ②.

55) 《文宗實錄》卷2, 문종 즉위년 7월 17일 기미 ④ ; 《文宗實錄》卷2, 문종 즉위년 7월 19일 신유 ① ; 《文宗實錄》卷2, 문종 즉위년 7월 22일 갑자 ④ ; 《文宗實錄》卷3, 문종 즉위년 9월 22일 계해 ②.

56) 《成宗實錄》卷211, 성종 19년 1월 9일 갑진 ④.

57) 《成宗實錄》卷215, 성종 19년 5월 7일 경오 ④.

제2절 告身 還給에 대한 논의

조선 전기 告身의 還給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정권자인 왕의 결정으로 還給하였더라도 이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도 않았다. 告身의 還給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것은 관원이 지은 죄가 일반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重罪인 경우였으며, 특히 대사면을 맞이한 대규모 告身 還給의 혜택을 어느 범주까지 베풀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대체로 사면이 불가능한 범죄와 관련하여 告身 還給 가능 여부도 결정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주로 贓罪와 綱常罪 관련하여 還給 유무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대사면 등을 통해 告身을 대거 還給하는 사례는 성종조까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나치게 관대하고 광범위한 還給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론이 존재하였다.

1. 告身 還給 배제사유의 변동

조선의 사면 배제 사유는 대체로 《大明律》〈名例〉[常赦所不原]條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常赦所不原]條에서는 十惡·殺人·贓罪 등 여러 중죄에 대하여 일반사면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公罪와 같은 과실범죄 등의 경우는 배제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⁵⁸⁾ 물론 경우에 따라 ‘二罪 이하의 죄수를 석방토록 명하다(命放二罪以下見囚)’⁵⁹⁾와 같이 포괄적인 사면 기준만을 제시하기도 했다.⁶⁰⁾

58) 《大明律》〈名例〉第16條 [常赦所不原]條, “凡犯十惡, 殺人, 盜係官財物 及強盜·竊盜, 放火·發塚, 受枉法·不枉法贓, 詐僞·犯姦·略人略賣和誘人口, 若姦黨及讒言左使殺人, 故出入人罪, 若知情故縱, 聽行藏匿·引送, 說事過錢之類 一應眞犯 雖會赦並不原宥.<謂故意犯事得罪者 雖會赦 皆不免罪.> 其過誤犯罪.<謂過失殺傷人·失火 及誤毀遺失官物之類.> 及因人連累致罪.<謂因別人犯罪 連累以得罪者. 如人犯罪 失覺察·關防·鈐束 及干連·聽使之類.> 若官吏有犯公罪.<謂官吏人等 因公事得罪, 及失出入人罪, 若文書遲錯之類.> 並從赦原.<謂會赦 皆得免罪.> 其赦書 臨時定罪名特免.<謂赦書不言‘常赦所不原’, 臨時定立罪名 寬宥者 特從赦原.> 及減降從輕者.<謂降死從流, 流從徒, 徒從杖之類.> 不在此限.<謂皆不在常赦所不原之限.>

59) 《太宗實錄》卷15, 태종 8년 1월 20일 기사 ①.

60) 《太宗實錄》卷15, 태종 8년 5월 2일 경술 ①.

순번	실록기사	還給 배제 범위
1	태종 16년 5월 20일 신해 ①	十惡
2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⑧	不忠, 不敬
3	세종 5년 4월 28일 무인 ②	無
4	세종 25년 7월 8일 신유 ②	綱常, 贓汚(還給 조처 자체를 세종이 거부)
5	세종 30년 4월 24일 기묘 ④	奸盜, 風俗 관련 죄 및 기타 重罪
6	문종 즉위 2월 22일 정유 ⑥	奸詐·贓汚 중 정상참작 불가능한 경우, 正妻 遺棄, 壓良爲賤으로 인한 永不敍用
7	단종 즉위 윤9월 19일 무인 ⑥	無(綱常·贓汚罪도 還給받음)
8	세조 3년 1월 15일 경진 ②	重罪(구체적 언급 없음)
9	세조 10년 6월 20일 임인 ②	徒流刑으로 安置·付處·充軍된 경우
10	세조 10년 10월 10일 경인 ③	無
11	세조 11년 5월 6일 임자 ①	重罪(구체적 언급 없음)
12	성종 15년 11월 30일 계축 ②	社稷 관련, 綱常, 奸盜, 贓汚
13	성종 21년 7월 2일 임자 ③	綱常, 贓汚

【표 17】 조선 초기 告身 還給 배제사유 범위 관련 주요 실록 기사

위 표는 조선 초기 각 시기별로 告身 還給을 논의하면서 還給 배제 기준을 정한 수많은 사례를 개략적으로 선별하여 정리한 것이다. 國初에는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배제기준이 존재하였으나, 세종조를 기점으로 보다 구체적인 告身 還給 배제기준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단종-세조 시기에는 대체로 國初와 같은 추상적인 기준으로 회귀하거나 심지어 모든 관원에 대한 예외 없는 還給이 시행되었지만, 성종조에는 다시금 綱常·贓汚罪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조선 초기 告身 還給과 관련된 직접적인 배제사유에 대한 기록은 태종 16년 5월 가뭄 대비책으로 의정부와 육조에서 아뢴 24개조의 時務策 중 여섯 번째 항목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十惡을 범한 것 외에 死罪·徒刑·流刑에 처한 자와 더 무거운 죄를 杖罪로 감형한 죄 이하로서 告身을 거두어들인 것은 還給할 것(干犯十惡外, 死罪及徒流者, 原有杖罪以下, 告身收取者還給.)’⁶¹⁾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받아들여졌다. 이로

61) 《太宗實錄》卷31, 태종 16년 5월 20일 신해 ①.

부터 4일 뒤에는 時務策에 따른 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가벼운 죄를 용서하였다. 杖罪를 범하였으나 告身을 還給한 자가 48인, 十惡 특히 謀·故殺人 이외에는 석방하여 용서한 자가 24인이었다.(有輕罪. 犯杖罪, 告身還給者四十八人; 干犯十惡及謀故殺人外, 放宥者二十四人.)’고 되어 있다. 즉, 이 시기 告身 還給의 경우 十惡은 물론이거니와 徒刑 이상의 죄인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년 뒤인 태종 18년 6월에는 가뭄을 염려하여 금주령까지 내려지는 가운데⁶²⁾, ‘不忠·不孝 이외의 범죄자의 職牒을 돌려주도록 명령(命還給不忠不孝外, 犯罪人職牒.)’하였으니 이 역시 2년 전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가뭄에 따른 사면조치로서의 告身 還給에 해당한다.⁶³⁾ 태종 18년의 還給은 2년 전의 그것에 비해 不忠·不孝만을 배제시킴으로서 그 범위가 더욱 넓은 것이 특징이다.

세종조로 넘어가면 적어도 세종 25년 7월 이전까지는 告身 還給의 배제범위를 명확히 드러낸 기사를 찾기는 어렵다. 예컨대 세종 5년 4월의 職牒 還給은 단지 ‘대소관원의 職牒을 還給(還給被罪大小人職牒)’⁶⁴⁾토록 명하였을 뿐이며, 이후의 기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면 세종 25년 7월 예조와 의정부 가뭄 대책을 의논하여 아뢴 항목 중에는 ‘綱常에 관련된 범행과 贓吏 외에는 거두되었던 告身을 生死를 불문하고 모두 다 還給할 것(除關係綱常所犯及贓吏外, 其收告身者, 勿論生沒, 竝皆還給.)’을 청하고 있다.⁶⁵⁾ 물론 세종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 않았으나, 同日 기록에 유익명 등 80여인의 告身을 還給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는 하다.⁶⁶⁾ 아무튼 여기서의 배제사유로는 綱常罪·贓罪가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태종조 단지 十惡 내재 不忠·不孝 云云하던 것에 비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還給 배제요건이 설정되고 있다. 세종 말기에는 推覈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赦宥를 당하는 경우 職牒을 還給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奸盜 및 風俗에 관련된 경우는

62) 《太宗實錄》卷35,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①.
 63) 《太宗實錄》卷35,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⑧.
 64) 《世宗實錄》卷20, 세종 5년 4월 28일 무인 ②.
 65) 《世宗實錄》卷101, 세종 25년 7월 8일 신유 ②.
 66) 《世宗實錄》卷101, 세종 25년 7월 8일 신유 ③.

그대로 배제하였으며, 나머지 죄의 경우에도 輕重을 따져 還給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⁶⁷⁾

문종 즉위년 2월 즉위를 기념하여 職牒을 還給한 기사에서는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인에 한정하여 還給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贓罪·姦詐의 죄인이지만 정상참작이 가능할 정도이거나, 娼妓와 간음한 경우, 正妻를 疏薄하긴 했지만 버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양민을 억압하여 종으로 삼되 永不敍用까지는 이르지 않는 정도의 죄인이 職牒을 돌려받았다.⁶⁸⁾ 일단 이 기사는 살펴볼 점이 많은데, 우선 세종조보다도 還給 조건이 더욱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25년 7월 등 세종조의 기록에서는 단지 綱常·贓汚·奸盜만이 언급되었을 뿐이지만, 여기서는 姦淫·妻에 대한 학대·양민의 奴婢化 등 더욱 구체적인 요건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둘째로는, 비록 위에서는 還給이 가능한 죄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重罪人이라면 還給이 불가능한 배제사유임을 뜻한다. 그러니까 贓罪·姦詐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正妻를 疏薄하여 내쫓는 정도에 이르는 등 罪質이 나쁘다면 告身 還給 대상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다. 단종 즉위년 윤9월에도 吏·兵曹에 분부하여 164명의 告身을 돌려주게 하였는데, 史官은 ‘贓汚·淫穢를 범하여 綱常을 어지럽힌 자들(凡犯贓汚淫穢、毀亂綱常者)’이 연줄을 이용해 告身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⁶⁹⁾ 이 서술은 과도한 告身 還給의 폐해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많지만 일단 다음 항목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贓汚·淫穢·綱常’ 등의 개념이 명시된 것 자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史官의 기록을 신뢰한다면, 단종 즉위를 기념한 이 還給에서 贓汚·綱常罪 관련된 인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還給 기사에서 이름이 밝혀진 이명신·이상항의 경우 소송 중인 노비 여럿을 자신의 소유인 양 함부로 부린 잘못으로 職牒을 거뒀던 자들인데, 본디 罷職에 그칠 것을 거듭 촉구하여 職牒을 거두는 데 이른 것이

67) 《世宗實錄》卷120, 세종 30년 4월 24일 기묘 ④.

68) 《文宗實錄》卷1, 문종 즉위년 2월 22일 정유 ⑥.

69) 《端宗實錄》卷3, 단종 즉위년 윤9월 19일 무인 ⑥.

다.⁷⁰⁾ 때문에 문종 즉위년 2월의 還給 기준이 여기서도 적용되어, 비록 賊汚·綱常과 관련되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還給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조조의 기록에는 告身 還給에 대해 자세한 서술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자와 百官의 하례를 받은 기념으로 사면을 단행한 세조 3년 1월 기록에도 전반적인 사면의 예외사항으로 謀反大逆·謀叛·조부모 및 부모 살해 및 매매·처첩 및 노비의 남편혹은 주인 살해·蠱毒·魘魅·강도 및 절도 등을 분명히 거론하고 있지만, 정작 告身 還給에 대해서는 단지 ‘죄의 輕重에 따라 還給한다(告身收取人, 隨罪輕重還給)’는 표현으로 그치고 있다.⁷¹⁾ 세조 9년 윤7월에도 ‘告身을 追奪한 이들 중 사정이 가없게 여길 만한 (給追奪告身, 而情可矜者四十餘人)’⁷²⁾ 경우에 告身을 還給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등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원각사의 상서로운 기운을 기념한 세조 10년 9월의 사면 역시 職牒의 경우 資級이 강등된 인원들과 더불어 ‘모두 還給하였다(職牒收取人及降資人, 皆還給)’고만 되어 있다.⁷³⁾ 심지어 다음 달인 10월에는 아예 ‘告身을 거둔 자는 모두 還給하라(凡收告身者, 皆還給.)’고까지 하여 결격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광범위한 還給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傳旨를 하였다.⁷⁴⁾ 세조 11년 5월에도 ‘告身을 거두고 資級을 깎은 자들은 죄의 輕重을 따져 還給한다(收告身削資者, 量罪輕重還給)’고 하였으며⁷⁵⁾ 세조 13년 4월의 경우에도 사면 일반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거론하였지 告身 還給은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저 돌려준다는 서술만 있을 뿐이다.⁷⁶⁾

세조 집권기에 還給의 기준이 분명히 드러난 기록은 百官의 賀禮를 기념하여 赦宥한 세조 10년 6월의 기사이다.⁷⁷⁾ 여기서는 ‘職牒이 거뒀진 죄인 중 徒·流刑에 처해져 安置·付處·充軍된 자를 제외하고 還給토록

70) 《文宗實錄》卷9, 문종 1년 9월 13일 무신 ②.

71) 《世祖實錄》卷6, 세조 3년 1월 15일 경진 ②.

72) 《世祖實錄》卷31, 세조 9년 윤7월 16일 계유 ①.

73) 《世祖實錄》卷34, 세조 10년 9월 25일 을해 ①.

74) 《世祖實錄》卷34, 세조 10년 10월 10일 경인 ③.

75) 《世祖實錄》卷36, 세조 11년 5월 6일 임자 ①.

76) 《世祖實錄》卷42, 세조 13년 4월 7일 임인 ① ; 4월 11일 병오 ①.

77) 《世祖實錄》卷33, 세조 10년 6월 20일 임인 ②.

(其徒流安置·付處·充軍人外收職牒者, 還給.)’ 하였으므로, 杖刑에 처해져 追奪된 이들의 職牒만 還給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세조조의 대규모 사면에 의한 還給 기록에서는 세조 10년 6월의 것을 제외하고는 還給의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거론이 없었음은 앞서 살핀바와 같다. 뒤이은 예종조의 還給 기록도 세조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還給의 배제사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성종조에는 세조-예종조에 비해서는 告身 還給의 배제사유에 대한 서술이 보다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성종 7년 11월 元子(훗날의 연산군)가 탄생한 기념으로 사면 대상자를 啓聞토록 하였는데, 여기서 定屬·定役과 더불어 職牒을 거둔 자들까지 모두 아뢰도록 하되 永不敍用된 자들의 경우 대개 贓汚罪에 연루된 자들이니 배제토록 傳敎하였다. 고로 여기서는 贓汚罪가 職牒 還給의 배제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종 15년 11월 기사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면 과정에서 職牒이 追奪된 이들에게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럴 경우 변론하려는 자가 너무 많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社稷·綱常·奸盜·贓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告身을 돌려주는 쪽으로 합의가 되었다.⁷⁸⁾ 마찬가지로 성종 16년 9월에도 禁酒令 해제와 대비의 탄신일을 기념해 追奪된 기한과 관계없이 告身을 還給하면서도 綱常·贓汚罪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혜를 입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⁷⁹⁾, 성종 21년 7월 대궐 안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綱常·贓汚罪는 還給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⁸⁰⁾

성종 18년 3월에는 세자빈이 간택된 것을 기념하되 사면이 그간 너무 많았던 사정을 감안해 職牒 還給의 恩典만을 베풀기로 하였는데, 영의정 윤필상이 ‘徒刑이 아닌 職牒을 거둔 자뿐만 아니라, 徒流·付處된 자 역시 輕重을 따져 풀어줄 것(非徒收職牒者, 徒流付處亦論輕重, 放送何如?)’을 건의하여 이에 따랐다.⁸¹⁾ 여기서도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職牒을

78) 《成宗實錄》卷172, 성종 15년 11월 30일 계축 ②.

79) 《成宗實錄》卷183, 성종 16년 9월 5일 계축 ④.

80) 《成宗實錄》卷242, 성종 21년 7월 2일 임자 ③.

81) 《成宗實錄》卷201, 성종 18년 3월 5일 을사 ④.

거둔 자(收職牒者)의 경우 徒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非徒’를 달아 徒流刑에 처해진 다른 죄인과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職牒 還給은 徒刑 이상의 처벌을 받은 죄인은 제외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물론 성종조에도 告身 還給과 관련하여 성종 16년 5월에는 단지 분간하여 돌려줄 것을 명시하였고⁸²⁾, 19년 6월에도 단지 돌려줄 만한 자들에게 돌려준다고 서술하는 기록이 남아있다.⁸³⁾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還給이 가능한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告身 還給을 감행하였음은 분명하다. 그 결과 國初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告身 還給의 배제기준이 형성되었다.

2. 贓汚·綱常罪에 대한 告身 還給 배제 논의

贓汚·綱常罪는 각각 관료계층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이념으로서의 유교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범죄였다. 앞서 告身 還給 배제사유에 綱常·贓汚罪가 주로 등장하는 것도, 관원이 非理에 연루되어 국익을 그르치거나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관료계층의 일원으로서 오히려 국가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綱常·贓汚罪에 연루된 관원들이 예외적으로 還給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장 세종조의 조말생이 贓吏임에도 職牒을 돌려받았으며, 앞서 살핀 문종조의 기록에서도 贓罪임에도 범한 정도가 무겁지 않다면 還給 대상에 포함시켰음은 이미 다룬 바 있다. 다만 이들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종조에는 贓吏를 告身 還給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正妻에 대한 疏薄을 告身の 還給을 배제시키는 綱常罪로 간주할 것인지의 문제가 모두 논의되었다.

贓吏의 還給 허용 논의는 성종 12년 1월 성종의 傳敎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종은 宋太宗이 郊祀를 지내면서도 탐오한 자들을 사면하지 않자 당시 재상인 조보가 설득하여 사면하게 한 宋代의 사례⁸⁴⁾를 근거로 승

82) 《成宗實錄》卷179. 성종 16년 5월 12일 신유 ③.

83) 《成宗實錄》卷217. 성종 19년 6월 25일 정사 ③.

정원·領敦寧 등으로 하여금 賊吏의 告身 還給 문제를 의논하게 하였고⁸⁵⁾, 6일 뒤에는 당상관들을 불러 동일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당시 대신들의 의견은 둘로 분명히 나뉘었는데, 먼저 정창손 등의 경우 성종이 賊吏의 告身 還給 근거로 내세운 조보의 사례를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며 이전에 결정했던 대로 還給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변수 등은 賊罪를 범하면 永不敍用·子孫禁錮의 중징계를 받는 만큼, 대사면을 내릴 경우 職牒 還給은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성종은 賊吏를 還給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정창손 등의 주장을 인용하였는데⁸⁶⁾, 이는 당초 자신이 인용하였던 《宋史》의 근거에 따른 견해를 철회한 것이다. 이 논의로부터 닷새 뒤 永不敍用된 자들의 職牒을 還給하면서 賊吏는 제외시킨 결정은⁸⁷⁾, 결국 賊罪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여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종 23년 5월 북방 야인 정벌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論功行賞 과정에서도 賊吏에게 告身을 還給하지 말자는 건의가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서는 ‘從軍했다는 이유로 賊吏에게도 告身을 돌려주면 惡을 징계하기 어려울 것(從征賊吏, 亦還告身, 何以懲惡)’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⁸⁸⁾

綱常罪의 경우 세부적으로 어떤 범죄를 ‘告身 還給이 불가능한’ 綱常罪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시되었으며, 특히 正妻를 疏薄한 잘못을 綱常罪로 보아 마찬가지로 還給의 배제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성종 15년 12월에 논란이 있었다. 문종 즉위년 2월에 이미 正妻 疏薄을 還給 배제 사유로 보지 않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지만, 이후에도 正妻를 홀대하고 妾만 아끼거나 娼妓와 國喪 중에 간통하는 등의 추문은 성

84) 자세한 사항은 宋代의 재상인 趙普(922-992) 列傳이 수록되어 있는 《宋史》 卷256 列傳 第15 趙普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조보의 아우 安易와 더불어 조보의 일생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성종이 賊吏에 대한 職牒 還給의 근거로 삼은 내용에 해당하는 구절만 따로 떼어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祖古守郡爲奸利, 事覺下獄, 案劾, 愛書未具. 郊禮將近, 太宗疾其貪墨. 遣中使諭旨執政曰: “郊赦可特勿貸祖吉.” 普奏曰: “敗官抵罪, 宜正刑辟. 然國家苟郊肆類, 對越天地, 告于神明, 奈何以吉而隳陛下赦令哉?” 太宗善其言, 乃止…’

85) 《成宗實錄》 卷125, 성종 12년 1월 5일 경진 ㉔.

86) 《成宗實錄》 卷125, 성종 12년 1월 11일 병술 ㉕.

87) 《成宗實錄》 卷125, 성종 12년 1월 16일 신묘 ㉖.

88) 《成宗實錄》 卷265, 성종 23년 5월 15일 갑신 ㉑.

종조까지도 계속되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했다.

성종 15년 12월의 논의는, 吏·兵曹에서 告身 還給할 명단을 뽑아 아
되는 과정에서 兵曹는 正妻를 疏薄한 죄인까지 포함시킨 반면 吏曹는 배
제하여 이를 승정원이 성종에게 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성종은 兵曹의 결
정에 찬성하였지만, 승지들은 前例에 따르면 正妻에 대한 疏薄이 綱常罪
에 포함되므로 告身 還給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헌부애
서는 ‘남편이 妻의 버리(綱)가 된다(夫爲妻綱)’⁸⁹⁾와 ‘妻는 (남편과) 대등
하다(妻者, 齊也)’⁹⁰⁾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正妻 疏薄을 綱常罪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았다.⁹¹⁾ 5일 뒤 正妻에 대한 疏薄을 毆打한 경우와 아울러
綱常罪에 해당하는지를 대신들과 다시 논의하였을 때에도 의견이 분분하
였다. 정창손 등은 남편이 妻를 疏薄한 것 역시 毆打한 것과 마찬가지로
綱常罪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대 의견은 妻에 대한 남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유로 내세우거나, 홍응의 의견처럼 正妻 疏薄이 綱常罪에 해당
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告身 還給을 영구히 금하는 등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夫가 主가 되는 위계질서의 혼란으로 또 다른 綱常의 문란함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노사신의 경우 疏薄이 아예 綱常罪에 해당
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성종은 홍응의 의견에 따름으로
써 正妻에 대한 疏薄을 告身 還給의 배제사유에서 제외시켰다.⁹²⁾

89) 《大學衍義》卷6, 格物致知之要 明道術 天理之倫之正에서 君爲臣綱·父爲子綱과 더불어 夫爲妻綱을 三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夫爲妻綱을 설명하면서 남편된 자는 스스로를 바르게 하여 아내를 이끌어야 한다고 풀이하였다. 때문에 사간원에서 正妻를 疏薄하는 것을 ‘남편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아내를 이끌지 못하고, 三綱의 윤리도 저버리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告身 還給이 불가능한 綱常罪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구절 원문 일부는 眞德秀 原著, 『譯註 大學衍義』(신승운 등 5인 번역), 전통문화연구회, 248-249면에서 발췌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 卽三綱而言之, 君爲臣綱, 君正則臣亦正矣. 父爲子綱, 父正則子亦正矣. 夫爲妻綱, 夫正則妻亦正矣. 故爲人君者, 必正身以統其臣. 爲人父者, 必正身以律其子. 爲人夫者, 必正身以率其妻. 如此則三綱, 正矣 … .’

90) 이 구절은 《唐律疏議》〈戶婚〉編 [以妻爲妾] 條에서 妻妾의 지위에 대해 규정한 조문의 일부이다. 원문에서는 ‘議曰, 妻者, 齊也, 秦晉爲匹. 妾通賣買, 等數相懸 … .’라 하여 妻를 賣買하여 얻은 妾보다 우월한 신분지위로 두고 있다. 실제 조선전기 正妻에 대한 疏薄 이유는 대개가 妾을 편애하고 妻를 홀대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사간원의 조문 인용은 正妻에 대한 疏薄이 三綱 뿐만 아니라 유교이념에 따른 신분질서에도 어긋나는 행위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

91) 《成宗實錄》卷173, 성종 15년 12월 9일 임술 ①.

92) 《成宗實錄》卷173, 성종 15년 12월 14일 정묘 ②.

정리하면, 正妻 疏薄 행위 자체를 綱常罪로 인지하였지만, 妻妾이 남편을 구타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인식되었으므로 告身을 돌려주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 전기 士族 부녀의 간통죄 처벌은 士族女로서 정절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사대부의 그것에 비해 더욱 무거워졌으며⁹³⁾, 이러한 성차별적인 당대의 분위기가 士族 남성의 正妻 疏薄을 還給 배제사유에서 탈락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3. 告身 還給의 필요성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異論

본 절의 마지막 항목의 還給 추이 통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조선 전기 告身 還給은 성종조에 이르기까지 점차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혜택을 받은 인원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미 일반사면과 관련하여 밝힌 바와 같이 정치적인 갈등 해소 및 민심 수습 등 안정성 확보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還給이 실시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다만 빈번한 還給 조치는 민심 수습을 위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엄정한 법 집행과 징계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도 北宋代의 사마광은 법률에 따른 철저한 처벌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사면의 이로움보다 해악이 더 크다는 이유로 중벌주의를 주장하였으며, 明代의 학자 邱濬·王夫之 역시 亂世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악인을 용서하면 敎化의 효과는 얻지 못하고 세상만 혼란스러워질 뿐이라며 경솔한 대사면 등의 조처에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냈다.⁹⁴⁾

개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세종 27년 5월 심한 가뭄으로 사면을 검토할 때의 下敎에서 지나친 사면의 폐해에 대한 왕의 우려를 읽을 수 있다. 비록 이정녕을 비롯한 백여 명 이상의 告身이 還給되기는 했지만, 세종은 ‘재변이 닥칠 때마다 赦免하면 국가에서 악함을 징계하는 법

93)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304-307면.

94) 張國華, 『중국법률사상사』 (임대희 등 5명 번역), 아카넷, 2003, 507-510·566-568·625-626면.

이 엄하지 못해(每遇災輒赦, 則國家懲惡不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⁹⁵⁾

세종 30년 5월의 가뭄 대책 논의에서도 대대적인 告身 還給에 대한 세종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 우찬성 김종서는 사면령에도 불구하고 죄가 중하다 하여 결국 罷職하거나 職牒을 거두는 경우가 빈번함을 지적하면서, 관원들에게 爵祿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니 赦宥에 해당하면 죄를 막론하고 모두 용서할 것을 청한 바 있다.⁹⁶⁾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세종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셋째, 형벌과 감옥의 일은 해당 관청에서는 법을 엄격히 지키되, 군주는 가급적이면 관대한 법을 적용하며, (죄인에 대한) 은혜는 위(군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지난 몇 해 동안 형벌을 적용할 때엔 내가 항상 감경하고 무겁게 벌하지는 않았다. 군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때문에 사면하고 (다시) 告身을 거두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할 뿐 경솔하게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지금은 나라가 대신을 너무 후하게 대접하여 비록 과직하였더라도 예우는 이전과 같으니, 큰 죄를 지은 대신에게 告身을 돌려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⁹⁷⁾

세종이 제기한 문제는 赦宥 이전의 還給 문제에서도 이미 다른 사항이지만, 還給 그 자체의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용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 본인은 우선 관대한 사면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였지만, 지나치게 사면할 경우 중죄인도 쉽게 용서받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았다. 이 당시 건의한 김종서를 비롯하여 이 문제를 논의한 대신들은 죄의 경중을 왕이 판단하여 너그럽게 처리하면 좋을 것이라는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95) 《世宗實錄》卷108, 세종 27년 5월 11일 갑신 ②.

96) 《世宗實錄》卷120, 세종 30년 5월 11일 을미 ③.

97) 《世宗實錄》卷120, 세종 30년 5월 12일 병신 ②. “… (전략) … 其三, 刑獄之事, 有司固守法度, 君上務從寬厚, 恩自上出, 是固然矣. 故近年以來, 有司所讞, 予常未減, 不依重典. 且爲君之道, 以不失信爲貴, 故赦後追奪告身, 必不得已而後爲之, 不敢輕舉, 但今國家待大臣甚優, 雖已罷職, 儀章如舊, 腰金冠玉, 固自若也. 大臣有大罪者, 輕給朝謝, 無乃不可乎? 其亦何以處之? … (후략) ….”

문종 1년 1월 明으로부터 告命을 받은 기념으로 대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史官이 ‘前年에 이미 즉위하여 사면하였고, 이제 또 사면을 하는데, 즉위하였다는 이유로 加資를 지급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인데도 갑자기 시행하니 비난을 받았다’고 서술하여 사면행위 자체의 남발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⁹⁸⁾ 史官의 비판적인 견해는 告命을 받은 기념으로 告身 還給과 加資 지급 등의 대사면을 단행한 단종 즉위년 윤9월에도 드러나는데, 마찬가지로 특별히 은혜를 베풀만한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告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면을 베푸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 제기이다.⁹⁹⁾

성종 3년 5월에는 장마로 인해 연이어 죄수 석방·京外從便·告身 還給 등의 조치가 있었는데¹⁰⁰⁾, 2개월 뒤인 성종 3년 7월 經筵에서 집의 임사홍이 당시의 赦免·疏決이 너무 관대하여 重罪人이 從便·告身還給·復職 등의 은혜를 입었다는 비판을 가했다. 특히 여기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赦免의 명분이었던 전통적인 災異觀과는 달리, 임사홍은 ‘再變이 발생하는 것은 항상 형벌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災變之作, 恒由刑罰不中)’이며, 지나치게 관대하게 용서한 사례를 해당 인원을 열거하며 관대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덧붙여 그 결과로 ‘죄 지은 사람은 좋아하지만 人心·天心이 따르지 않을 것이며(有罪者雖喜, 人必缺望; 人心不服, 則天意可知)’, 자연재해로 인해 사면을 베푸는 당대의 행위 자체를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임시변통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아름답지 못한 일(姑息施恩, 實非美事)’이라고까지 했다.¹⁰¹⁾ 아이러니하게도 성종 17년 3월에는 연이은 가뭄과 사람이 벼락에 맞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112명의 告身을 한꺼번에 돌려주었는데, 여기서는 임사홍 등의 告身을 還給한 것을 두고 한 달 넘게 반대상소가 이어졌다. 당시 사헌부에서는 임사홍 등이 봉당을 맺은 죄로 追奪당하였고, 이것이 국가에 관계되는 일로 赦宥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한 告身 還給이 ‘公儀에 累를 끼치는 일

98) 《文宗實錄》卷5, 문종 1년 1월 26일 병인 ①. 원문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年既以即位赦, 今又赦, 且即位加資, 無祖宗故事, 而遽行之, 識者譏之 ….”

99) 《端宗實錄》卷3, 단종 즉위년 윤9월 19일 무인 2⑥.

100) 《成宗實錄》卷18, 성종 3년 5월 24일 경신 ②.

101) 《成宗實錄》卷20, 성종 3년 7월 21일 병진 ②.

(累一時之公議)’이라고까지 하였다.¹⁰²⁾ 당시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을 검하여 인사홍 告身 還給을 비판한 홍문관 직제학 김흔 등의 아래 상소 일부는 告身 還給을 포함한 당대 사면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로, 법에 따른 처벌을 꺼리는 문제입니다. 법은 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니 사사로이 더하거나 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사로운 감정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법을 왜곡시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법 적용이 어지러워지면, 비록 성인이라도 (나라를)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 이제 천재지변을 두려워하여 사면을 내리면서 ‘일이 국가에 관계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만, 인사홍은 近臣으로 봉당을 만들어 조정을 어지럽혔으므로 법으로 용서하지 않을 바인데도 특별히 告身을 주어 조정에 다시 참여하게 하였고, 유종생은 일개 백성인데 곧바로 한두 재상을 헐뜯었다 하여 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사면령이 미덥지 않고 형법이 알맞지 않습니까?¹⁰³⁾

아울러 성종 24년 10월에도 告身 還給에 관해서 성종 17년 3월 및 그 이전의 반응과 비슷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는 형벌 부과 및 사면에 있어 자비를 베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사면은 지양하자는 입장이었다. 여기서도 성종은 사면이 죄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징계의 의미가 없음을 이유로 죄가 가벼운 자들을 추려 살피기로 하였다.¹⁰⁴⁾

지금까지 정리한 告身 還給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종합하면, 告身 還給과 같은 조치가 철저한 형벌의 시행을 가로막으며 風俗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의견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비록 성리학적 사회구조에서 恤刑을 강조한 조선 사회였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죄인에 대한 告身

102) 《成宗實錄》卷189, 성종 17년 3월 10일 을묘 ①.

103) 《成宗實錄》卷189, 성종 17년 3월 10일 을묘 ②. “… (전략) … 其三曰謹刑法: 夫法者, 人主所以受於天, 不可以私意輕重低昂之也. 是故我喜可抑, 我忿可窒, 而法不可枉. … (중략) … 法一亂, 則雖聖人, 何能善治? … (중략) … 今遇災而懼, 誕布德音, 有事干國家者, 不在原例, 而任士洪以近臣, 交結朋黨, 濁亂朝政, 王法所不赦; 而特給告身, 復齒朝著. 劉從生市井一小民也, 直以醜詆一二卿相, 而獨不免, 是何赦命不信而刑法之不衷也? … (후략) …”

104) 《成宗實錄》卷283, 성종 24년 10월 27일 무자 ⑤.

還給에는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告身 還給 대상 및 배제 사유가 국왕 별로 일정치 않고 가변적이었던 점과, 國初에 비해 告身 還給 수혜자가 폭증하였던 점 역시 비판론이 등장한 배경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제3절 告身 還給의 추이와 분석

告身 還給 역시 追奪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국왕이 결정하였는데, 追奪과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還給 조치의 適否를 臺諫 등이 논박하였다. 告身은 官員로서의 신분적 지위 및 그에 파생되는 특권적 위치를 상징하였고, 前科者인 前職官員의 敍用에 앞서서 告身을 되돌려주는 절차가 이행되어야 했다. 국왕이 告身の 대대적인 還給에 앞서서 대신들을 위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쳤던 것도 告身の 이러한 성격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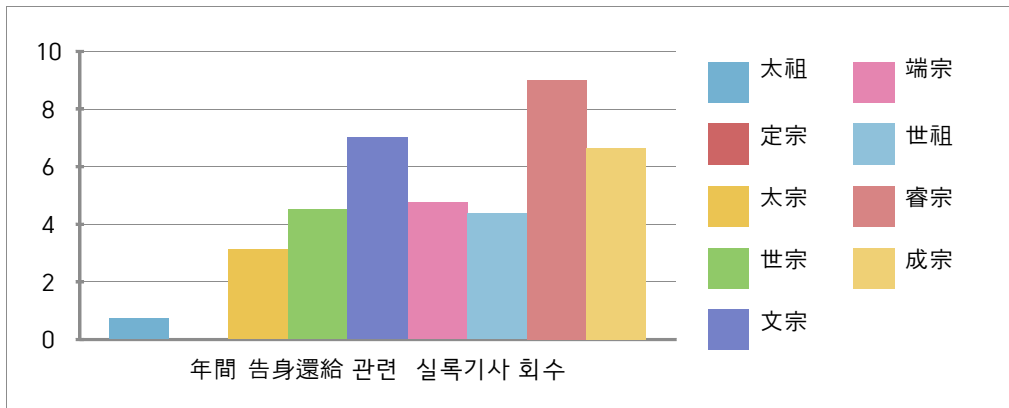
告身 還給의 경우 정기적 還給과 특별한 사유에 따른 비정기적 還給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告身을 追奪당한 인원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還給의 適否를 따져 선별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敍用을 위해 관원 자격을 회복하려면 告身の 還給이 불가피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거나 지연된 일부 사례에도 불구하고 敍用 기한으로 법정된 2년에 준하여 告身の 정기적 還給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비정기적 還給은 왕실 경조사·자연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가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성상 다수를 대상으로 告身 還給 혜택을 베풀었다. 恤刑을 중시하였던 조선에서는 죄수들을 사면하는 등의 조치를 자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告身 還給도 자주 발생하였다. 다만 綱常·贓汚罪의 경우 告身 還給 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였다.

死者의 還給 문제에 대해서는 문종조에 비로소 결정되었다. 동일한 죄를 지은 생존자가 還給받는 것에 비해 死者는 차별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미 죽은 본인에게는 이로움이 없어도 후손들에게 恩澤이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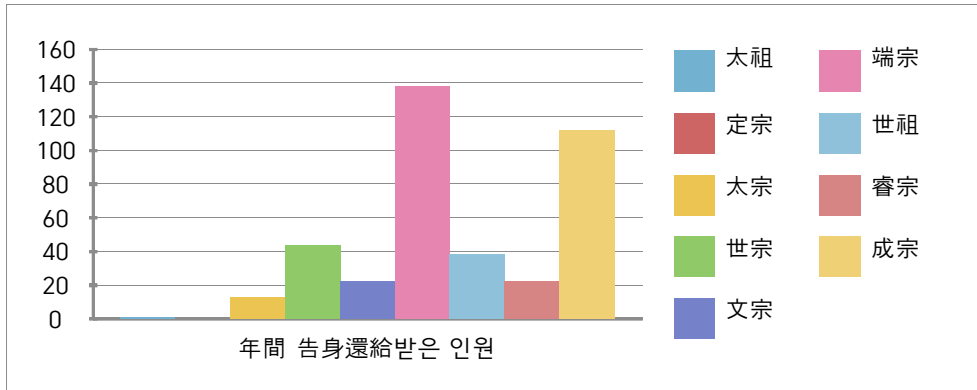
아가므로 還給할 사유가 된다는 점은 死者에게도 告身 還給이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다.

王代	太祖	定宗	太宗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합계
회수(회)	5	、	56	149	21	19	61	18	173	508
인원(명)	8	、	228	1,439	66	551	530	44	2,918	5,784
年間還給 기사회수	0.71	、	3.11	4.52	7	4.75	4.36	9	6.65	4.98
年間還給 인원	1.14	、	12.67	43.61	22	137.75	37.86	22	112.23	56.71

【표 18】 조선 초기 告身 還給 관련 실록 기사 횟수 및 還給 인원 통계



【그림 4】 조선 초기 연간 告身 還給 관련 실록기사 횟수 그래프



【그림 5】 조선 초기 告身 還給 인원 그래프

위 도표와 차트는 조선 太祖朝부터 成宗朝에 이르기까지 告身 還給 관련 실록 기사 및 확실히 還給 받은 것이 분명한 관원의 수효를 통계로 삼은 결과이다. 물론 앞서 강조하였지만 還給받은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還給 가능한 기준만을 설정한 사면 조치도 상당하므로 위 도표 및 차트를 맹신할 수는 없다. 다만 당장 확인 가능한 통계만으로도 대강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으며, 그 나름대로도 가치가 조선 초기 告身 還給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 통계에서 전반적으로 告身 還給의 빈도 및 대상인원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告身 還給 관련 실록기사 빈도를 살펴보면, 태·세종조에는 연간 3~4회에 불과한 告身 還給 관련 기사가 성종조에 이르면 연간 6건이 넘게 등장한다. 단종-세조조에는 계유정난을 전후로 왕권이 불안정하던 시기 대규모 공신 책봉과 더불어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의 告身 還給이 성행하였으며, 성종조는 단종·세조조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告身을 돌려받았다. 그 결과 잦은 사면이 도리어 죄인의 징벌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 및 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還給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告身 還給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한편, 연구 과정에서 미처 보완하지 못한 미비점을 정리하였다. 告身의 追奪 및 還給 조치는, 告身이 단순히 관원에게 벼슬을 수여하였다는 증거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告身을 거두거나 되돌려주는 처분은 관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회복시키는 징계와 사면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亡者에 대한 告身 追奪·還給을 통해, 이러한 처분이 명예형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음을 분석하였다. 告身의 追奪과 관련하여서는 唐代 《唐律疏議》·《唐六典》을 거쳐 《大明律》에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에서는 《經國大典》에서 《大明律》의 체계를 반영하여 실제로 告身을 差等的으로 거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告身 追奪은 奴婢訟事·贓汚·綱常·官員 및 宗親의 殺人·誣告 등 관원의 다양한 범죄 및 고의적인 공무상 범죄인 私罪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드물게는 공무상 착오로 인한 公罪에 대해서도 追奪된 예외를 발견할 수 있다. 告身의 追奪 및 還給 모두 최종적인 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었지만, 민감한 사안이거나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경우 대신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聚合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었다. 그와는 별개로 臺諫을 중심으로 한 탄핵 등의 언론활동 역시 告身 追奪 여부의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告身 追奪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를 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功臣·宗親 등 신분상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거나, 범행이 赦宥 이전에 있어 사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追奪을 면하였다. 그 밖에도 변방에 근무하는 軍士가 기존 告身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참작하여 追奪하지 않기도 하였다. 死者의 생전 과오에 따른 追奪은, 죄의 輕重을 따져 무거운 경우에만 한정하여 追奪하였다. 관원의 아내의 爵牒은 남편인 관원의 신분에 종속되었지만, 아내의 죄에 관원이 연루되어 告身이 거둬진 않았다.

告身 還給 역시 追奪과 마찬가지로 君臣간의 의논을 거쳐 국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주기적으로 告身을 追奪한 인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정기적인 告身 還給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는 달리 告身 還給에 소요된 기한이 2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대 사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정기적인 還給은 대체로 왕실의 각종 경조사·자연재해 등을 맞아 실시한 사면의 한 종류로 이루어졌다. 告身 回收 및 還給과정에서 문제시된 쟁점으로는 死者에 대한 告身 還給 문제가 있었는데, 생존한 同罪人과의 형평성 문제 및 후손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하여 문종조에 還給이 가능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조선 초기 告身の 追奪 및 還給 횟수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追奪의 경우 세조조의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성종조까지 지속적으로 追奪 관련 실록 기사 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告身 還給 역시 그러하다. 특히 還給 대상자를 기록한 실록 기사만을 추려 보았을 때 단종·세조조와 성종조에 대규모 告身 還給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도 還給의 혜택을 받은 관원의 수 역시 증가하였음이 분명하다. 정치적 화합과 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면의 특성을 고려하면, 갈등 무마와 집권 정당성 확보 차원의 사면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인 대규모 告身 還給에 대해서는 治者の 仁德을 드러내며 유교적 道學君主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는 점에서는 명분상 큰 무리는 없었으나, 그러한 대응방식에 대해 敎正的 차원에서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과도한 면이 없잖아 있던 告身 還給과 관련하여 贓汚·綱常罪와 같은 重罪에 대해서라도 告身 還給 대상에서 배제시키고자 한 일련의 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告身の 追奪·還給이 이뤄진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에 주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告身 문서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은 집중하지 못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미 그러한 분야에서는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므로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더불어 告身 追奪·還給 사례의 방대한 분량을 고려

하여, 본 논문에서는 건국 초부터 성종조까지의 기록만을 다루었다. 연구 범위를 조선 초기로 한정된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기는 했지만, 조선 후기 실록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續大典》부터 《大典通編》·《大典會通》에 고루 告身 追奪·還給과 관련된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다만 告身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는 바이다.

참고문헌

I. 사료

- 《經國大典》(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영인본)
《續大典》(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영인본)
《大典通編》(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영인본)
《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定宗實錄》·《太宗實錄》·《世宗實錄》·《文宗實錄》·《端宗實錄》·《世祖實錄》·《睿宗實錄》·《成宗實錄》)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
《高麗史》, 《高麗史節要》(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KOREA/>)
《唐律疏議》(동방미디어주식회사 : <http://www.koreaa2z.com/viewer.php?seq=57>)
《唐六典》(北京 : 中華書局, 1992)
《大明律講解》(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영인본)
《北齊書》(北京: 中華書局, 1997)
《新唐書》(北京: 中華書局, 1975)
《明史》(北京: 中華書局, 1974)
《宋史》(北京: 中華書局, 1985)
《文獻通考》(台北 : 新興書局, 1959)

II. 연구문헌

1. 단행본

- 박병호, 『韓國法制史』, 민속원, 2012, 41-43면
박성호, 『고려말 조선초 왕명문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7. 3., 84-88면
서정민,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 조말생 뇌물사건의 재구성』, 살림, 2008, 13-198면
_____,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민속원, 2013, 45-62 · 215-230 ·

316-337면

신동운·허일태(편저), 『효당 업상섭 형법논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53·212-213면

仁井田陸, 『當令拾遺』, 도쿄대학출판부, 1964, 330-331면

張國華, 『중국법률사상사』 (임대희 등 5인 번역), 아카넷, 2003, 507-510·566-568·625-626면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304-307면

張晉藩·李鐵·蒲堅·張希波, 『중국법제사』 (한기중 등 5인 共譯), 소나무, 2006, 360-369면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 케케묵은 고문서 한 장으로 추적하는 조선의 일상사』, 휴머니스트, 2013, 132-174면

정궁식·田中俊光·김영석, 『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009, 147면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 경인문화사, 2007, 92-94면

지승중,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95, 12-13·283-317면

眞德秀 原著, 『譯註 大學衍義』 (신승운 등 5인 번역), 전통문화연구회, 248-249면

최승희, 『朝鮮初期 言官·言論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236-239·242-309면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와 통치체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8, 97-104면

2. 논문

姜陽, 『朝鮮前期 朝明 使行外交와 交通路 ; ‘조선 사행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학박사학위논문, 2014. 2, 29·34면

권연웅, 「유가 법사상의 역사적 맥락」, 『韓國儒學思想大系Ⅷ : 法思想編』, 한국국학진흥원, 2008. 12, 29-42면

김영석, 『의금부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

- 학박사학위논문, 2013, 163-181면
- 김종명, 「세조의 불교관과 치국책」, 『한국불교학』 58호, 한국불교학회, 2010. 11, 132-144면
- 김택민, 「《唐六典》의 성립과 서술체제 및 판본」, 『역주 唐六典(상)』, 신서원, 2003, 15-21면
- 남지대, 「조선 태종의 권위 확충」, 『규장각』 45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11, 52-58면
- 류창규, 「조선 초기 太宗과 河崙의 天譴論을 빙자한 정국 운영 양상」, 『역사학연구』 45권, 호남사학회, 2012. 1, 82-88면
- 박재우, 「15세기 인사문서의 양식과 성격」, 『역사와 현실』 59, 한국역사연구회, 2006. 3., 31-68면
- _____, 「고려후기 인사행정과 인사문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2013. 9., 253-291면
- 박준호,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1, 한국고문서학회, 2007. 8., 107-127면
- 박홍갑, 「혈연과 가문에 의한 등용, 문음제도」, 『오늘의 동양사상』 18,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8. 4, 106-114면
- 백승아, 「15·16세기 部民告訴禁止法の 추이와 지방통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8, 29-43면
- 변종필, 「사면의 법리와 사면권행사의 범치화국가적 한계」, 『형사법연구』 12호, 한국형사법학회, 1999. 11, 288-293면
- 서정민, 『朝鮮初期 官吏의 汚職犯罪에 관한 研究 : 贓汚罪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4, 10-14·72-109면
- 신소연, 『高麗後期 田民辨整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2015. 2, 202-206면
- 심영환, 「古代 東아시아 任命文書의 性格」, 『泰東古典研究』 제35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5. 12, 69-76면
- _____, 「高麗 景宗元年(975) 金傳告身 分析」, 『서지학보』 제31호,

- 한국서지학회, 2007. 12, 87-113면.
- _____, 「변화와 정착 - 麗末鮮初의 朝謝文書」, 『한국고문서자료총서1 : 변화와 정착 - 麗末鮮初의 朝謝文書』, 민속원, 2011. 10, 18-28면
- 안외순, 「조선 전기 중화주의의 내치, 외교 관계」, 『동방학』 31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4. 8, 45-71면
- 安俊姬, 「朝鮮初期 太宗의 執權過程과 趙思義의 亂」, 『外大史學』 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993. 7, 25-51면
- 양웅렬, 「15세기 王妃 家門의 變遷과 성격」, 『한국학논총』 제36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8, 114-118면
- 유성국, 『유교적 전통사회의 사면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2, 36-95·117-120면
- 유승희, 「조선후기 형사법상의 젠더(gender) 인식과 여성 범죄의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53집, 조선시대사학회, 2010. 6, 260-264면
-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박사학위논문, 2014, 112-168면
- 유현재, 「조선 초기 화폐 유통과 그 성격 : 저화 유통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9호, 조선시대사학회, 2009. 6, 77-91면
- 이상현, 「대역죄인 告身의 殘存事由에 대한 일고찰 - 김종직·정인홍 고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43호, 한국고문서학회, 2013. 8., 101-129면
- 이상호, 「태종대 가뭄 대처 양상에 드러난 유학적 사유 : 『태종실록』의 가뭄 관련 기사와 재이관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3호, 한국국학진흥원, 2013. 12, 533-539면
- 이석호, 「조선사 길라잡이 - 다시보는 조선왕조실록 ⑧ 세종시대의 인물3 - 조선의 방패, 최윤덕」, 『역사&문화』 8호, 역사문화연구회, 2006. 8, 8-12면
- 이육, 「許穆의 災異觀 - 그의 祭儀的 대응을 중심으로」, 『종교학연

- 구』 14호,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5. 12, 162-168 · 547-555면
- 이정주, 「世祖代 후반기의 불교적 祥瑞와 恩典」, 『민족문화연구』 44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6, 247-261면
- 임혜련, 「조선초 원경왕후의 정치적 역할과 생애」, 『아시아여성연구』 43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4. 5, 30-35면
- 전영진, 「譯註 : 『明史』 刑法志 譯註 1 (『明史』 卷 93, 志 第69, 刑法1)」, 『중국사연구』 23권, 중국사학회, 2003. 4, 321-322면
- 정구복, 「고문서 용어풀이 : 告身(告身牒·職牒·官敎·牒紙·空名告身牒·空名帖·敎旨·王旨·敎命·故牒)」, 『고문서연구』 22집, 한국고문서학회, 2003. 2., 297-300면
- _____,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 9집, 한국고문서학회, 1996. 10, 53-65면.
- 정궁식, 「분쟁과 재판」,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한국고문서학회 편, 역사비평사, 2013, 34-40면
- 정혜순, 「여말선초 여흥민씨 가문의 동향」, 『석당논총』 제47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0. 7, 209-219면
- 조윤선,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조선시대사학회, 2009. 3, 214-218면
- 조윤선, 「朝鮮後期 綱常犯罪의 양상과 法的 대응책」, 『법사학연구』 34호, 한국법사학회, 2006. 10, 39-54면
- 차호연, 「조선초기 公主·翁主의 封爵과 禮遇」, 『조선시대사학보』 77호, 조선시대사학회, 2016. 6, 92-95면
- 한상권, 「公罪와 私罪」, 『법사학연구』 53호, 한국법사학회, 2016. 4.
- 홍순민, 「조선왕조 內侍府의 구성과 內侍 수호의 변천」, 『역사와 현실』 52호, 한국역사연구회, 2004. 6, 237-240면

III. 사진 · 사전 · 데이터베이스 · 신문기사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이상연, 「5급 사무관도 대통령 임명장을」, 『법률저널』 2009. 10. 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3>)

【부록】

〈부록 1〉 조선 太祖朝-成宗朝 노비·토지 관련 告身 追奪 관련 기사

1. 노비·토지 告身 追奪 관련 受教 기사

종류	날짜	비 고
소송	태종 5.9.6.	他人 노비 강탈·양인 억압하여 奴婢化·노비소송 관련 誤決 및 誤決 是非의 처벌 수단으로서의 告身 追奪을 의정부에서 올려 윤희를 받아 시행토록 하다
	태종 12.6.5.	後嗣·傳繼 없는 屬公 노비에 대해 거론치 말도록 한 법령을 어기며 소송을 건 자와 이를 접수한 자 모두 처벌토록 하다
	태종 15.2.3.	辨正都監에 限度 이상으로 爭訟하면 '辨正都監의 예에 따라 職牒을 거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論罪할 것을 명함
	태종 16.5.6.	혼미하여 잘못 奴婢訟事를 誤決한 경우에는 告身을 거두지 말도록 처벌 기준을 완화함
	단종 2.12.20.	奴婢訴訟에서의 폐단 시정을 위해 사헌부가 告狀을 받으면 바로 移送시키고, 誤決인 줄 알면서 판결하면 告身을 追奪하고 杖100에 수군에 充軍케 함
장오	태종 14.9.12.	刑曹都官에서 官奴를 몰래 숨기고 사사로이 부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을 아뢰며 職牒 回收·杖80·水軍充軍에 처할 것을 건의하여 따름
	태종 15.12.3.	한성부가 戶口式을 올리며, 양인·公奴婢·타인 노비를 함부로 본인 戶口式에 입력한 경우 謝牒을 거두는 등의 처벌 청함
	태종 17.윤5.6.	各司 노비 쇄권책 14개항 중 노비를 숨겨 사사로이 부린 경우 職牒을 거두고 杖100·水軍充軍 등의 처벌규정 명시
신분	예종 1.6.24.	《經國大典》條文의 修整 작업과 관련하여 영의정 한명회가 중을 계집종과 결혼시켜 부리는 家長은 告身을 거두고 계집종이 낳은 자식은 屬公토록 건의하다
	예종 1.9.4.	예종 1.6.24.한명회가 건의한 '중을 끌어들여 자신의 계집종과 결혼시킨 뒤 부리는 경우'에 대해 告身을 거두는 등의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

2. 노비·토지 告身 追奪 관련 개별 기사

종류	날 짜
위조	태조 6.8.14. / 세종 6.4.14. ; 7.4.2. ; 7.4.3. ; 8.8.11. ; 11.10.3. ; 16.5.6. ; 16.6.20. ; 18.9.2. / 세조 10.3.13. / 성종 10.3.28. ; 10.4.12. ; 17.3.30. ; 21.4.16. ; 21.10.4.
무고	태종 2.5.29. ; 5.11.21. ; 10.1.5. ; 14.8.12. ; 세종 21.4.25. ; 29.4.5. / 세조 8.2.30. / 성종 3.10.28.
오결	태종 4.1.18. ; 11.5.7. ; 14.윤9.5. ; 14.12.5. ; 17.6.12. ; 17.6.16. ; 17.7.11. ; 17.7.27. / 세종 8.3.4. ; 8.3.5. ; 8.3.15. ; 8.3.20. ; 8.10.3. ; 30.1.11. / 성종 10.3.3. ; 11.1.21.
압량	태종 5.9.19. ; 15.9.2. / 세종 6.1.21. ; 15.4.28. / 문종 즉위.5.4. ; 2.3.2. / 성종 14.3.27.

태만	태종 14.8.29.
상속	태종 16.9.9. / 성종 2.6.12. ; 16.10.26. ; 21.2.2.
뇌물	세종 10.11.24. ; 12.11.14.
부당 소유	문종 1.9.13. / 세종 18.9.2. / 세조 7.9.11. / 성종 5.6.22. ; 5.7.18. ; 6.1.11. ; 19.3.2.

〈부록 2〉조선 太祖朝-成宗朝 贓汚罪 관련 告身 追奪 관련 기사

1. 贓汚罪 告身 追奪 관련 受教 기사

종류	날 짜	비 고
奔競	태종 1.5.20.	奔競의 筭을 어길 경우 職牒을 빼앗을 것을 명함
	세종 8.1.24.	兵權을 장악한 고관대신들 간의 사적인 왕래를 태종 1.8.20.奔競을 금지한 예에 따라 職牒을 追奪하는 등의 조치로 방지할 것을 청하나 일단 보류하다
처벌 회피	세종 19.8.7.	贓罪를 범하고 告身을 빼돌려 赦宥가 있기까지 기다렸다가 용서를 받는 便法을 쓰는 자들은 職牒을 回收하고 文案에 기록하여 永不敘用토록 함
貪虐	세조 12.8.22.	수령의 貪汚·侵虐 문제를 논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告身을 회수하도록 정하다

2. 贓汚罪 告身 追奪 관련 개별 기사

종류	날 짜
횡령	태조 6.1.15. ; 6.5.16. ; 7.6.3./ 태종 6.2.5. ; 7.12.29. ; 8.8.15. ; 10.7.12. ; 13.8.17. ; 16.4.13. ; 18.2.29./ 세종 즉위.12.17. ; 2.10.17. ; 4.7.8. ; 8.1.23. ; 8.2.9. ; 10.3.5. ; 10.12.2. ; 13.4.22. ; 14.6.11. ; 14.7.15. ; 19.7.13. ; 19.8.15. ; 21.4.20. ; 23.3.2. ; 28.9.22./ 문종 즉위.12.29. ; 1.4.21. ; 1.8.22./ 단종 즉위.6.5. ; 즉위.6.9. ; 1.3.6. ; 2.7.6. ; 2.7.22./ 세조 2.3.26. ; 8.12.29. ; 12.윤3.4. ; 13.1.11. ; 13.12.23. ; 13.12.25. ; 14.1.20. ; 14.1.22./ 성종 3.7.24. ; 4.1.12. ; 5.윤6.1. ; 6.3.14. ; 7.9.15. ; 9.1.7. ; 9.11.5. ; 10.3.1. ; 13.6.27. ; 16.4.7. ; 25.1.19.
뇌물	태조 6.1.15. ; 7.6.3. ; 10.2.25./ 세종 즉위.11.17. ; 4.2.10. ; 5.9.26. ; 6.5.16. ; 8.3.4. ; 8.3.15. ; 8.4.4. ; 8.4.9. ; 8.12.28. ; 9.1.7. ; 12.11.14. ; 19.9.5. ; 26.3.6. ; 26.4.30. ; 29.4.21. ; 29.윤4.14./ 문종 즉위.5.4. ; 2.2.26./ 세조 2.4.11. ; 3.4.13. ; 4.윤2.11. ; 10.3.13. ; 11.3.15. ; 11.10.2. ; 14.5.15./ 예종 1.5.28. ; 1.6.20. ; 3.8.12./ 성종 1.7.6. ; 1.12.26. ; 성종 8.3.27. ; 8.4.4. ; 9.12.11. ; 9.6.22. ; 10.1.8. ; 12.8.24. ; 13.5.12. ; 15.4.19. ; 15.4.19. ; 16.1.10. ; 16.1.27. ; 20.9.15. ; 21.6.17. ; 21.6.20.
사역	태조 6.5.16./ 세종 7.4.16.
강탈	태종 1.2.7./ 세종 4.2.10. ; 8.6.6. ; 8.10.3. ; 10.2.19./ 단종 2.7.22./ 세조 2.3.17. ; 2.3.26. ; 2.3.30. ; 3.1.22. ; 3.5.22. ; 3.6.10. ; 10.8.23. ; 12.11.20./ 성종 2.4.25. ; 4.1.12. ; 4.2.19. ; 4.11.7. ; 5.5.24. ; 5.9.12. ; 7.3.29. ; 7.4.1. ; 성종

	8.1.23. ; 8.9.28. ; 9.11.28. ; 17.11.3. ; 19.3.2. ; 23.5.14.
밀수	태종 8.3.9./ 세종 5.10.29. ; 5.11.25. ; 8.1.23. ; 15.11.9./ 성종 8.4.25. ; 16.4.12.
부실 관리	태종 9.6.9.
절도	태종 14.윤9.8./ 세종 5.2.17. ; 7.10.21./ 성종 11.5.11. ; 12.5.11.
위폐	태종 17.11.3.
기타	세종 30.1.2./ 문종 즉위.3.16./ 세조 4.윤2.25. ; 4.8.26./ 성종 22.10.1.

〈부록 3〉조선 太祖朝-成宗朝 綱常罪 및 儒教倫理 관련 告身 追奪 관련 기사

1. 綱常罪 및 儒教倫理 告身 追奪 개별 기사(受教 없음)

종류	날 짜
不忠	태조 2.1.12. ; 5.9.13. / 태종 1.7.11. ; 3.윤11.15. ; 4.1.4. ; 4.5.12. ; 8.4.24. ; 9.12.25. ; 11.2.6. ; 11.6.29. ; 11.11.26. ; 12.1.12. ; 12.2.15. ; 12.3.30. ; 12.7.25. ; 12.12.10. ; 15.3.2. ; 17.1.11. ; 17.2.15. ; 17.10.3. ; 18.2.23. / 세종 즉위.9.9. ; 1.3.7. ; 1.12.2. ; 2.4.26. ; 2.11.3. ; 3.8.30. ; 4.1.19. ; 4.7.6. ; 4.10.2. ; 4.10.21. ; 4.12.12. ; 5.5.15. ; 7.7.17. ; 9.5.9. ; 11.2.15. ; 14.4.8. ; 16.3.29. ; 16.5.21. ; 18.4.16. ; 18.10.23. ; 19.10.19. ; 18.7.6. ; 20.6.2. ; 20.6.28. ; 21.2.21. ; 21.5.3. ; 23.7.7. ; 23.8.12. ; 23.12.15. ; 24.4.23. ; 24.5.3. ; 26.2.27. ; 26.5.26. ; 27.9.28. ; 28.4.1. ; 28.10.9. ; 28.10.15. ; 30.1.11. ; 30.1.20. ; 30.5.28. ; 30.6.3. ; 30.6.14. ; 31.3.20. ; 31.3.26. ; 31.4.3. ; 31.6.10. ; 31.12.23. / 문종 즉위.3.19. ; 즉위.7.16. ; 1.1.10. / 단종 즉위.5.17. ; 즉위.7.15. ; 즉위.7.25. ; 1.3.6. ; 1.6.20. ; 2.1.23. ; 2.3.26. ; 2.4.23. ; 2.8.17. ; 2.10.29. / 세조 2.3.25. ; 3.4.13. ; 4.2.13. ; 4.5.17. ; 4.10.30. ; 4.12.25. ; 5.8.2. ; 8.5.12. ; 10.1.6. ; 10.11.23. ; 11.3.12. / 예종 1.2.11. ; 1.7.23. ; 1.9.3. ; 1.10.1. / 성종 즉위.12.1. ; 1.11.11. ; 2.3.24. ; 2.4.9. ; 2.11.10. ; 3.7.25. ; 4.3.24. ; 4.3.27. ; 4.6.11. ; 4.8.23. ; 5.윤6.1. ; 5.윤6.1. ; 5.윤6.1. ; 5.8.6. ; 5.12.11. ; 5.12.11. ; 6.8.7. ; 6.9.27. ; 6.10.3. ; 8.윤2.21. ; 10.10.27. ; 11.12.18. ; 11.12.29. ; 12.7.1. ; 13.3.16. ; 13.4.21. ; 13.4.28. ; 13.4.30. ; 13.8.12. ; 13.11.18. ; 14.2.11. ; 14.5.19. ; 14.5.22. ; 14.8.7. ; 14.12.29. ; 15.2.28. ; 15.9.26. ; 15.11.28. ; 16.2.1. ; 17.6.4. ; 18.4.12. ; 18.6.12. ; 19.1.9. ; 20.12.26. ; 21.1.16. ; 21.5.6. ; 23.5.16. ; 24.4.25. ; 25.1.24. ; 25.7.16. ; 25.9.12.
간통	정종 1.6.15. / 태종 1.2.2. ; 6.5.3. ; 10.8.10. ; 17.9.2. / 세종 9.2.19. ; 9.8.18. ; 9.8.20. ; 15.12.4. ; 21.1.27. ; 21.5.3. ; 21.5.13. ; 21.8.19. ; 28.9.22. ; 28.9.27. / 문종 즉위.12.17. / 세조 3.4.5. ; 3.4.26. ; 3.5.18. ; 4.윤2.11. ; 4.4.12. / 성종 2.7.26. ; 4.4.25. ; 5.3.8. ; 7.4.20. ; 7.8.30. ; 9.2.19. ; 11.7.9. ; 11.7.11. ; 13.2.1. ; 14.5.14. ; 16.11.16. ; 17.2.23. ; 20.5.11.
取妾	태종 6.12.19. / 세종 10.9.1. ; 21.5.3. / 성종 3.1.6. ; 4.4.27. ; 5.1.7.
질투	태조 6.7.25. / 세종 21.1.27. ; 21.2.6. / 성종 5.11.1.
소박	세종 8.2.20. ; 12.7.22. ; 21.윤2.4. ; 21.6.8. ; 25.5.2. ; 27.5.6. / 단종 2.9.6. / 세조 3.6.26. ; 3.7.15. ; 3.7.23. ; 4.7.29. ; 4.12.8. ; 5.6.7. ; 5.9.18. ; 5.11.4. ; 8.6.14. ; 10.7.16. ; 12.4.10. / 성종 2.4.19. ; 2.5.25. ; 7.9.5. ; 7.10.9. ; 10.1.1. ; 10.4.24. ; 10.6.1. ; 11.6.5. ; 11.7.29. ; 13.9.8. ; 21.3.9.
강간	세종 20.3.16. / 세조 3.6.24. / 성종 3.4.13.

무고	성종 3.3.15. ; 8.7.17. ; 8.8.18.
중혼	세조 12.6.14.
强婚	성종 14.12.14.
기타 부부 관련	세종 21.6.6. ; 세조 10.5.25.
불효	태조 7.3.29. / 태종 4.5.18. ; 6.3.19. ; 11.1.6. ; 13.12.8. ; 15.4.17. ; 16.1.30. ; 17.6.4. / 세종 10.10.20 ; 12.8.10. ; 16.5.2. ; 21.9.10. ; 29.4.4. ; 31.3.10. ; 31.5.6. / 문종 1.11.19. / 단종 1.12.7. ; 3.4.12. / 세조 1.윤6.25. ; 2.9.8. ; 3.4.9. ; 7.1.22. ; 10.8.1. ; 11.1.24. ; 11.10.21. ; 11.12.19. ; 14.6.14. / 예종 1.8.1. / 성종 2.6.12. ; 2.11.17. ; 4.4.3. ; 5.3.22. ; 6.12.3. ; 9.9.6. ; 11.12.16. ; 13.8.28. ; 13.윤8.15. ; 18.4.4. ; 18.11.13. ; 19.4.8. ; 21.2.2. ; 21.6.27.
신분	태종 5.11.18. / 세종 4.11.22. ; 31.2.22. / 세조 10.5.25.
친족	세조 5.6.23. ; 8.6.14. / 성종 16.10.13.
우애	세종 20.6.21. / 세조 7.1.22. ; 11.10.21. ; 12.6.20. / 성종 5.2.4. ; 5.6.20. ; 8.9.22. ; 15.7.22. ; 16.3.9. ; 16.10.26. ; 17.11.8. ; 23.10.25.
불교	세종 7.11.8. ; 16.7.7. / 성종 20.2.19.
미신	세종 11.7.20.
기타 綱常	성종 19.3.2.
정치	태조 7.9.21. / 태종 1.2.7. ; 3.9.3. ; 3.11.20. ; 4.10.24. ; 7.11.11. ; 8.7.20. ; 8.9.24. ; 8.10.19. ; 9.5.20. ; 9.9.10. ; 9.10.16. ; 15.4.17. ; 15.5.19. ; 15.6.8. ; 16.6.21. ; 16.11.20. ; 16.11.22. ; 16.12.2. ; 17.12.4. ; 18.5.12. ; 18.5.13. / 세종 즉위.9.9. ; 즉위.12.20. ; 즉위.12.23. ; 즉위.12.27. ; 1.5.22. / 단종 1.10.17. ; 1.10.24. ; 2.1.24. ; 3.2.27. ; 3.3.1. ; 3.3.19. / 세조 1.윤6.11. ; 1.11.9. ; 2.6.26. ; 2.6.27. ; 2.7.7. ; 2.7.12. ; 5.5.25. / 예종 즉위.10.27. ; 즉위.10.28. ; 즉위.10.28. ; 즉위.11.2. ; 즉위.11.15. / 성종 1.1.14. ; 1.3.4.

〈부록 4〉조선 太祖朝-成宗朝 殺人 관련 告身 追奪 관련 기사

1. 殺人 관련 告身 追奪 개별 기사(受教 없음)

종류	날 짜
근친	정종 1.5.21.
일반	태종 3.윤11.19. ; 5.7.25. / 세종 2.8.18. ; 9.6.21. ; 25.5.14. ; 29.10.3. / 단종 즉위.7.21. / 세조 14.3.5. / 성종 1.4.8. ; 4.2.19. ; 7.10.12. ; 9.9.9.
남형	태종 5.11.16. ; 7.7.14. ; 16.1.17. / 세종 12.6.13. ; 12.11.20. ; 12.윤12.10. ; 13.6.12. / 문종 1.8.22. ; 2.2.26. / 단종 즉위.8.14. / 세조 3.6.10. ; 5.6.9. ; 5.6.17. ; 7.9.27. / 예종 1.8.23. / 성종 4.4.4. ; 7.6.12. ; 7.9.15. ; 7.12.29. 9.2.10. ; 11.1.21. ; 11.5.7. ; 14.9.26. ; 14.10.13. ; 19.6.20. ; 24.4.18.
奴主	태종 16.4.14. / 세종 9.9.3. ; 16.6.3. ; 22.6.18. / 단종 3.4.12.
과실	세조 14.3.7.

〈부록 5〉조선 太祖朝-成宗朝 직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告身 追奪 관련 기사

1. 직무상 과실·태만·기강해이 등 告身 追奪 관련 受教 기사

종류	날 짜	비 고
과실	태종 2.7.3.	各道 官員이 貢賦를 제 때 바치지 못한 죄가 심하면 職牒을 거두도록 하다
직역 회피	태종 16.4.7.	수령·교수관 등 특정 職任을 기피하는 경우 職牒 還收하게 함
	세종 1.2.18.	허위로 직위를 사칭하여 병역을 면하려 한 보충병들의 告身을 다시 거두어들여 본래 상태로 되돌리다
	세종 5.8.2.	수령·교수·역승·도승·염장 등 특정 職責의 赴任을 회피하다 다른 差任을 노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赴任 후 기피행위로 罷免된 경우 職牒을 回收하도록 함 ; 태종 16.4.7.기사
	세종 15.1.29.	兩界 敎道 등이 20개월 내에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 원래는 장부에 기록하고 6개월간 敍用치 않았지만, 앞으로는 아예 告身을 거두도록 하다
	성종 24.5.5.	軍役 회피 목적으로 訓導에 제수된 자의 경우 考講하여 미흡한 자는 削除하고 告身을 거둬 軍役을 치르도록 하다
	성종 3.6.10.	外教授로 임명된 자가 연고가 없는데도, 혹은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으면 모두 告身을 거두도록 하다
기강 해이	세종 7.2.21.	軍士의 父母가 病 중이면 휴가를 허용하는데, 이것이 허위이면 職牒을 빼앗고 水軍에 充軍토록 함
	세종 11.3.26.	牌內의 군인이 도주하거나 나타나지 않은 경우 職牒을 거두고 船軍·皂隸 등 賤役에 종사하게 하고, 牌頭도 책임자로서 처벌하게 하다
	세종 11.5.27.	新甲士에 取才된 이들 중 탈 수 있는 馬를 신고하도록 한 律에 대해, 남의 馬를 빌려 등록하는 편법을 써 통과하고 敍用된 자들의 職牒을 거두게 함
	세조 7.9.9.	皮甲·鐵甲을 사사로이 서로 빌려주는 軍士의 경우 告身을 거두고 充軍토록 하다
	예종 1.2.14.	벼슬을 청탁하는 경우 職牒을 거두고 永不敍用하도록 함
신분 위조	세종 11.8.7.	還俗한 승려가 자신의 官敎를 다른 승려에게 轉賣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還俗한 경우 官敎를 吏曹로 바로 보내고 숨기는 자는

		처벌하게 하다
	세종 14.9.7.	직업 없이 橫行하는 중들 중 兩宗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職牒을 거두되, 속하지 않더라도 실제 官職이 있으면 제외하게 하다
태만	세종 1.8.14.	飢民 救濟에 힘쓰지 않은 지방관 일부의 職牒을 빼앗되, 일부는 救濟 실적이 심각하게 나쁘지는 않으므로 追奪하지는 않다
	세종 24.5.1.	한 해마다 司譯院 講肄官에 대해 시험을 쳐 한 해 성적이 나쁘면 1등을, 두 해 성적이 나쁘면 2등, 3년 연속이면 告身 모두를 追奪토록 하여 학업을 권장하도록 하다.
	세종 25.1.2.	외방에서 보충하는 감사의 경우 取才 도중 부정행위·능력미달 등이 식별되면 職牒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職牒을 박탈하고 水軍 充軍하게 함
	세조 8.1.27.	선전관·진무·부장 등 武官의 取才 시험 때 兵書 점수가 낮으면 告身을 거둬 2년간 敍用치 말도록 하다
	세조 8.2.14.	醫書 習讀官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告身을 거둬 出仕시킴으로서 징계하도록 하다
	세조 9.5.22.	醫書 講論 후 성적이 저조하면 告身을 거두고 醫司使令으로 격하시키도록 함
	성종 3.3.14.	醫書 習讀을 게을리하는 習讀官 및 생도들의 告身을 거두는 등의 징계를 통해 학업에 정진토록 함
	성종 24.3.19.	四學 관원들을 考講하여 부적격인 경우 職牒을 거두고 充軍시킬 것을 조문숙이 건의하다
불복	세조 8.4.17.	각 도에 事目을 두고 파견한 分巡御史에 의한 규찰 및 推覈 과정에서, 이에 정상이 명확함에도 불복하는 수령의 경우 告身을 거두고 鞫問토록 함

2. 직무상 과실·태만·기강해이 등 告身 追奪 관련 개별 기사

종류	날 짜
태만	태조 5.5.8. ; 6.6.2. ; 7.8.9. / 정종 1.5.16. / 태종 2.5.4. ; 8.4.28. ; 10.2.20. ; 16.1.30. / 세종 1.6.23. ; 6.6.14. ; 7.11.6. ; 9.1.10. ; 13.2.27. ; 13.4.8. ; 21.1.22. ; 22.1.14. ; 26.6.10. ; 31.1.26. / 문종 1.5.19. / 세조 3.8.14. ; 4.8.24. ; 4.9.18. ; 4.10.5. ; 5.6.27. ; 5.9.26. ; 6.10.17. ; 7.6.5. ; 10.1.10. ; 10.6.5. ; 10.8.12. ; 10.12.4. ; 11.1.8. ; 11.4.22. ; 11.10.15. ; 14.11.20. / 예종 즉위.10.16. / 성종 8.10.16. ; 11.2.24. ; 11.2.28. ; 20.2.22.
기강	태종 4.5.15. ; 7.12.22. ; 11.4.7. ; 16.9.14. / 세종 1.4.9. ; 1.4.17. ; 1.12.3. ; 4.2.29. ; 6.3.21. ; 6.3.22. ; 8.3.7. ; 8.6.17. ; 10.8.13. ; 12.4.26. ; 12.6.18. ; 12.8.21. ; 12.8.25. ; 13.1.26. ; 16.3.29. ; 16.8.5. ; 21.3.17. ; 24.12.13. ; 26.7.13. ; 28.1.21. ; 29.8.28. ; 29.9.7. ; 30.3.26. ; 30.6.5. / 단종 1.4.12. / 세조 2.2.27. ; 2.4.11. ; 2.4.21. ; 3.7.15. ; 4.9.19. ; 8.11.15. ; 10.2.6. ; 10.4.18. ; 11.2.29. ; 11.5.19. ; 11.7.8. ; 11.10.2. ; 11.10.20. ; 12.9.19. / 예종 1.8.7. / 성종 1.5.25. ; 4.5.22. ; 5.1.5. ; 6.9.12. ; 7.4.1. ; 7.7.23. ; 7.8.23. ; 8.2.4. ; 8.7.16. ; 8.10.28. ; 8.12.20. ; 9.6.20. ; 9.11.22. ; 13.1.16. ; 13.3.18. ; 14.11.25. ; 15.5.20. ; 16.8.10. ; 20.12.10. ; 21.2.2. ; 21.2.26. ; 21.4.6. ; 21.6.9. ; 22.5.11.
방어 실패	태조 6.6.17. / 세종 1.6.19. ; 3.4.7. ; 8.6.11. ; 15.2.15. ; 15.5.21. ; 28.12.2. / 성종 4.2.17. ; 6.3.12. ; 6.3.17. ; 17.2.10. ; 18.10.17. ; 18.10.26. ; 18.11.21. ; 20.7.10. ; 21.1.5. ; 22.2.25. ; 24.12.23. ; 25.9.12. ; 25.10.12. ; 25.10.19. ; 25.10.22.

보고 누락	세종 17.6.13. / 세조 7.4.23. ; 7.4.23. / 성종 8.2.12. ; 9.2.9. ; 10.12.19. ; 21.3.16. ; 22.3.16. ; 24.12.9.
군 기강	세조 9.9.18. ; 9.9.24. / 예종 1.7.21 ; 1.8.25. ; 1.8.26.
기타 군사	세종 1.8.8. ; 16.10.22. ; 26.1.18. ; 23.4.9. / 성종 6.9.29. ; 13.7.27.

〈부록 6〉조선 太祖朝-成宗朝 誣告 관련 告身 追奪 관련 기사

1. 誣告 告身 追奪 관련 개별 기사(受教 없음)

종류	날 짜
무고	정종 2.6.20. / 태종 2.5.29. ; 4.1.4. ; 4.5.12. ; 5.11.21. ; 10.1.5. ; 12.3.22. ; 16.1.17. / 세종 12.3.26. ; 21.4.25. ; 28.4.21. / 단종 즉위.8.14. / 세조 8.3.6. / 성종 3.1.27. ; 3.3.15. ; 8.7.17. ; 8.8.18. ; 13.3.18. ; 16.3.9. ; 24.윤5.28. ; 25.9.20.

〈부록 7〉기타 告身 追奪 관련 기사

1. 기타 告身 追奪 관련 受教 기사

종류	날 짜	비 고
정정	태조 3.11.26.	高麗朝에 濫發된 職牒을 본래대로 回收하도록 하다
정책	태종 2.5.24.	楮貨 사용 장려를 위해 五升布 사용을 금하고, 어기면 職牒을 거두게 함
	세종 31.3.6.	의정부에서 楮貨를 통용시킬 방안을 강구하면서 米布 등 잡물을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功臣 및 그 자손의 경우 告身을 收奪토록 하다
금혼령	태종 8.7.3.	明에 보낼 貢女를 선발하기 위한 금혼령을 어기면 가산몰수와 함께 職牒 回收할 것을 공고하다
부인	세종 13.11.1.	職牒을 回收한 官員의 부인의 爵牒도 함께 回收토록 하다
사초	세종 31.3.2.	춘추관 사관으로서 사초를 훔치거나 내용을 누설하는 등의 경우 斬刑 등 무겁게 처벌하며, 赦宥에 해당하거나 죽었더라도 告身을 거두도록 방침을 정하다
절차	세조 8.10.15.	종래 刑曹가 전담하였던 軍士의 告身 追奪 문제를, 兵曹가 軍務를 총괄하는 만큼 앞으로는 兵曹가 鞫問·科罪한 뒤 追奪토록 변경하다
	성종 5.9.17.	벼슬을 받은 軍士 중 6개월이 넘도록 告身을 准하지 않은 경우 追奪할 것인지를 논의 ; 관찰사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성종 9.5.29.	雜織과 달리 東西班은 去官한 자를 제외하고는 收贖하지 않고 決杖한 뒤 告身을 거두기로 정함
종친	성종 25.1.4.	科擧에서 代述한 자에 대한 처벌이 刑典은 杖100 徒3년에 告身을 모두 거두지만 禮典에는 停擧 2회로 다른 점을 유송조가 아뢰다
	예종 1.7.27.	奴婢의 말만 믿고 경솔히 소란을 피운 宗親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한 경우 告身을 거두는 등 조치하도록 하다
	성종 2.5.25.	宗親의 각종 범죄를 科罪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한 경우엔 職牒을 거두도록 하다

도축	성종 8.1.16.	소·말을 불법으로 잡은 자를 의탁시킨 경우 杖100에 처하고 告身을 거두며 永不敍用할 것을 사헌부가 건의하니, 그대로 따르다
----	------------	---

2. 기타 告身 追奪 관련 개별 기사

종류	날 짜
訂定	태조 3.8.2. / 태종 11.11.14. / 세종 8.7.29. ; 8.8.6. ; 8.8.26. ; 18.11.4. / 단종 1.11.28. / 성종 1.5.24.
내시	세종 4.3.7. ; 4.7.8. ; 14.10.20. ; 28.7.21. ; 10.2.15. ; 10.6.26. ; 11.12.20. ; 13.9.17. / 예종 즉위.11.7. ; 1.9.9. ; 1.9.15. ; 1.9.26.
未詳	세조 3.12.22. ; 4.12.22. ; 6.7.21. ; 10.12.8. ; 11.2.19. ; 11.7.19. ; 12.11.10. / 성종 2.윤9.9.
언론	세조 9.6.22. / 성종 9.4.28. ; 18.12.18.
정무	태종 12.7.9.
기타	태조 6.7.25. / 태종 7.7.19.

<부록 8>조선 太祖朝-成宗朝 身分에 따른 告身 追奪 면책 기사

종류	날 짜
기강	정종 1.6.1. / 태종 14.10.21. / 세종 10.1.24. ;
노비	태종 3.5.21. ; 14.8.25. ; 17.6.12. / 세종 8.3.20. ; 10.3.22. ; 22.5.11.
贓汚	태종 18.2.29. / 세종 11.11.13. ; 12.11.14. ; 26.6.5. ; 26.6.10.
대납	세종 13.4.20. ; 13.4.21. ; 13.4.22.
태만	세종 3.4.7. ; 24.4.23. ; 24.4.25.
불충	정종 2.4.18. ; 2.6.2. / 태종 8.11.1. / 성종 5.1.27.
기타	태조 4.1.8. ; 5.5.18. / 정종 2.2.4. / 태종 1.3.20. ; 7.12.2. ; 10.4.10. ; 11.윤12.1. / 세종 7.4.19. ; 18.10.16. ; 18.10.18.

〈부록 9〉조선 太祖朝-成宗朝 赦宥 이전 범행에 대한 告身 追奪 면책 기사

1. 赦宥 이전 범행 告身 追奪 면책 관련 受教 기사

종류	날 짜	비 고
수교	세종 13.11.5.	赦免 이후에도 赦宥 이전의 죄를 推嚴하여 職牒을 追奪하는 폐단에 대해 논의하고, 司憲府가 미처 해당 법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하다

2. 赦宥 이전 범행 告身 追奪 면책 관련 개별 기사

종류	날 짜
강탈	세조 12.2.3. / 성종 20.3.11. ; 24.2.29. ; 24.2.30.
횡령	세종 4.1.25. ; 31.4.15. / 세조 3.2.22. / 성종 16.5.5.
토지	세종 2.4.7. / 성종 7.6.20.
기타	태종 8.8.7. ; 8.9.29. / 세종 15.5.14. ; 15.5.15. ; 16.7.29. / 문종 1.1.26. ; 1.2.19. / 단종 즉위.윤9.20. ; 즉위.윤9.22. / 성종 4.1.4. ; 4.5.8. ; 5.6.9. ; 7.1.26. ; 7.1.27.

〈부록 10〉조선 太祖朝-成宗朝 기타 告身 追奪 면제된 실록 기사

1. 기타 告身 追奪 면제 관련 受教 기사

종류	날 짜	비 고
절차	세종 27.3.11.	職에 임명된 자가 취임 전에 遞職된 경우 마땅히 거둬야 할 告身이 吏·兵曹의 소홀한 관리로 거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吏·兵曹로 하여금 대상자로부터 告身을 즉각 받아 태워 파기하고 장부에도 기록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
科擧	세조 11.1.27.	朝士로서 다시 과거에 합격한 경우 告身을 거둬 9품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도록 하려다가, 유생들이 동요할 것을 염려하여 명을 거두다

2. 기타 告身 追奪 면제 관련 개별 기사

순번	날 짜
노비·토지	태종 15.10.29. / 세조 1.12.21. ; 14.5.3. ; 23.6.12. / 성종 10.12.11. ; 11.7.8.
性倫理	세종 11.6.16. ; 20.3.21. ; 21.4.18. ; 21.12.4 ~ 17. / 문종 1.1.17. / 단종 즉위.10.6. / 세조 1.8.12. ; 3.10.7. / 성종 11.12.3. ; 11.12.28. ~ 12.1.5. ; 13.9.14. ; 20.5.3. ; 25.11.29.
疏薄	성종 4.5.26. ; 5.1.24. ; 10.2.6 ~ 13. ; 11.7.27. ; 11.10.23. ;
贓汚	태조 2.1.9. ; 7.2.18 ~ 23. / 태종 2.6.11. ; 5.10.22. ; 12.3.9. ; 15.11.19. / 세종 즉위.11.14. ; 3.11.15. ; 8.8.28. ; 12.4.14. ~ 5.5. ; 13.12.6 ~ 10. ; 14.12.10 ~ 19. ; 26.7.29. ;

	26.윤7.10. / 문종 즉위.4.20. ; 즉위.9.18. ; 1.2.3. ; 1.9.21. ; 2.5.1. / 단종 즉위.10.3. ; 즉위.11.23. ; 즉위.11.27 ~ 12. 3. ; 즉위.12.29. ; 1.9.20. / 세조 1.8.12. ; 11.7.4. / 성종 2.5.13 ; 3.11.12 ~ 21. ; 4.8.25 ~ 26. ; 4.11.13. ; 4.12.22 ~ 23. ; 7.5.8. ; 8.1.16. ; 10.1.13. ; 11.12.8. ; 16.4.11. ; 19.12.1. ; 21.3.24. ; 21.6.17. ; 21.7.11 ~ 17. ; 22.8.21. ; 24.12.7. ; 25.10.22.
不忠 · 不敬	태조 1.7.26. / 정종 2.7.25 / 태종 1.2.2. ; 태종 2.4.5. ; 13.1.16. ; 3.3.5. ; 4.5.3. ; 5.3.6. ; 7.10.23. ; 7.7.14 ~ 29. ; 7.11.1. ; 7.11.11. ; 8.1.18. ; 8.5.19. ; 8.9.22. ; 8.9.5 ~ 25. ; 9.10.5. ; 9.10.27. ; 9.12.1. ; 13.11.19. ; 14.2.14. ; 14.4.24 ~ 7.2. ; 15.10.29. ; 16.1.20. ; 18.4.11 ~ 13. / 세종 즉위.9.3. ; 3.8.29. ; 4.1.20 ~ 25. ; 4.2.1. ; 9.5.4. ; 10.2.17. ; 10.3.5. ; 19.3.21 ~ 24. ; 20.11.12. ; 세종 21.11.22 ~ 23. ; 31.6.19. / 문종 1.1.5. ; 1.7.25. / 단종 즉위.윤9.12. ~ 24. ; 즉위.11.11. ; 1.3.18 ~ 4.4. / 예종 1.1.27. / 성종 즉위.12.5. ; 5.1.24 ; 5.8.17. ; 7.5.27. ; 8.8.17. ; 8.12.13. ; 12.11.18 ~ 24. ; 17.8.14. ; 20.11.6.
不孝	성종 11.11.1. ; 22.10.23 ~ 25. / 세조 1.8.12. / 성종 11.2.26. ; 21.6.1.
佛敎	태종 5.9.20. / 세종 16.5.21. / 문종 즉위.7.11 ~ 17. / 성종 4.7.27. ; 4.8.8.
정치	태조 7.10.3. / 정종 2.7.2. / 태종 3.1.16. ; 3.4.20. ; 5.3.6. ; 7.7.14 ~ 10.27. ; 8.5.19. ~ 9.5. ; 14.4.24 ~ 26. ; 9.12.1. ; 14.7.2. ; 15.10.29. ; 16.1.20. ; 18.4.11 ~ 13. / 세종 즉위.9.3. ; 19.3.21 ~ 24. ; 20.11.12. / 문종 1.7.25. / 단종 1.10.12 ~ 22. ; 3.3.1 ~ 16. / 세조 1.윤6.13 ~ 22. ; 1.8.17 ~ 22. ; 5.5.8 ~ 11. / 예종 1.1.27. ; 1.3.25.
살인	태종 10.7.17. ; 10.9.27. / 세종 9.8.24. / 성종 9.10.5 ~ 6.
濫刑	태종 17.10.4 ~ 16. / 세종 13.6.13. / 문종 1.8.15.
과실	태조 2.12.27. ; 7.12.29. / 태종 12.4.6. / 세종 1.12.21 ; 4.8.19. ; 4.10.9. ; 17.12.19. ; 32.윤1.9. / 문종 즉위.7.4 ~ 8. / 단종 2.2.21 ~ 3. 16. / 성종 4.6.18 ~ 19. ; 6.11.10 ; 8.5.7. ; 9.4.8. ; 20.6.18. ; 20.12.27.
직무태만 · 기강해이	정종 2.12.1. ; 2.12.22. / 태종 1.1.25. ; 1.8.13. ; 2.2.15. ; 3.8.29. ; 7.10.4. ; 8.1.18. ; 10.4.1. ; 10.5.14. ; 14.1.19. ; 15.7.25. ; 16.6.4. ; 18.2.7. / 세종 4.2.1. ; 4.2.29. ; 10.3.5. ; 21.4.24. ~ 27 ; 23.2.16. ; 29.9.16. / 문종 즉위.4.6. ; 1.10.15. / 성종 7.6.17. ; 7.7.16 ~ 20. ; 10.1.6 ~ 7. ; 12.4.7. ; 13.6.30. ; 20.4.13. ; 20.7.16. ; 22.5.28. ; 24.10.5.
防備	태조 6.5.2 ~ 8. / 성종 4.5.25. ; 6.5.27. ; 성종 8.7.5 ~ 8. ; 13.8.4 ~ 8. ; 22.9.2. ; 24.12.13.
허위	태종 12.6.1. / 세종 9.5.7. / 성종 9.2.11. ; 11.7.8. ; 13.3.4. ; 18.6.12.
언론	태종 3.윤11.19. ; 11.12.3. / 문종 즉위.7.17. / 성종 7.7.23. ; 9.5.6. ; 9.11.1. ; 13.7.23. ~ 8.2. ; 16.6.14. ~ 17.3.9. ; 20.5.26.
人事	문종 즉위.7.4 ~ 8. / 성종 12.4.7. ; 12.11.15. ; 18.10.23. ; 20.10.27. ; 22.8.13.
청탁	정종 2.12.1. / 성종 11.10.26. ; 11.1.7. ; 21.3.24.
폭행	세조 8.4.13. / 성종 4.6.26 ~ 27.
기타	태종 2.9.19. ; 14.2.9. / 세종 25.2.25. / 문종 1.1.15 ~ 16. / 세조 4.9.1. / 성종 3.7.21. ; 4.5.27. ; 5.1.24. ; 5.12.7 ~ 8. ; 20.6.9. ; 20.6.18. ; 20.7.15. ; 22.4.23. ; 24.10.12. ; 24.12.19.

<부록 11>왕실 慶弔事에 따른 太祖朝-成宗朝 告身 還給 관련 실록 기사·인원

1. 왕실 慶弔事 告身 還給 관련 受教 기사

종류	날 짜	비 고
誕辰	성종 7.11.8.	元子が 전날 태어났는데, 赦宥文에 미처 언급치 못한 인원을 대상으로 赦宥를 검토 ; 貪汚한 자를 제외하고 前例에 따르도록 정하다
誕辰	성종 7.11.16.	형조·이조·병조·의금부·사헌부에서 定屬·定配된 죄인과 더불어 告身 追奪된 인원 명단을 승정원에 넘겨 검토하도록 하다
國喪	성종 16.5.12.	정희왕후의 神主를 陞附하고 영녕전에 攝享한 뒤 賀禮를 받자 이를 기념하여 告身을 거뒀던 자들을 분간하여 돌려주게 하다

2. 왕실 慶弔事 告身 還給 관련 개별 기사

종류	날 짜
誕辰	태조 3.10.11.(4) / 세종 3.5.16.(56) / 성종 5.11.11.(24) ; 7.11.29.(132) ; 11.3.14.(13) ; 11.3.20.(58) ; 16.9.8.(17)
즉위 책봉	태종 18.5.23.(25) / 문종 즉위.2.22.(??) / 단종 2.2.19.(158) ; 3.1.30.(169) ; 3.2.28.(37) / 예종 1.11.28.(??) / 성종 즉위.11.28.(??) ; 성종 7.8.11 ~ 23(53)
賀禮	세종 15.5.8.(33) ; 15.5.26.(13) / 세조 3.1.15.(??) ; 10.6.20.(??) / 성종 1.12.16.(??)
告命	문종 1.1.29.(40) / 단종 즉위.윤9.19.(164)
3년상	태종 10.8.10.(28)
社稷 祭	세조 1.8.7 ~ 22.
간택	성종 18.3.5.(??)
吉兆	예종 즉위.10.23.(??) / 세조 10.10.10.(48) ; 10.9.25.(??) ; 13.4.7.(??) ; 11.5.6.(??)
질병	태종 8.1.20.(??) ; 8.5.2.(35) / 세종 28.3.19.(??) / 세조 14.7.21.(42) / 성종 5.4.12.(??) ; 5.4.14.(42)
승하	성종 5.4.26.(80)
追慕	성종 6.2.14·15(90) ; 15.12.10.(156) ; 16.5.12.(??)

<부록 12>자연재해에 따른 太祖朝-成宗朝 告身 還給 관련 실록 기사·인원

1. 자연재해 告身 還給 관련 受教 기사

순번	날 짜	비 고
가뭄	태종 16.5.14.	가뭄 대책 중 하나로 杖罪로 인해 職牒 환수된 인원 중 公罪로서 科田을 특별히 용서받아 還給받았다면 2/3으로 절감하지 말고 전부 還給토록 함
	태종 16.5.20.	가뭄 대책 논의하면서 十惡은 배제하고 死·徒·流罪 및 重罪에서 杖罪로 감형된 경우 告身을 還給토록 청함
	세종 25.7.8.	가뭄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綱常罪·賊罪 외에는 生死를 不問하고 모두 告身을 돌려주도록 하다.

	세종 30.5.11.	우찬성 김종서가 가뭄 대책을 내면서, 赦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職牒이 회수되는 등 爵牒이 깎이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들어 더욱 너그러운 赦宥를 청함
	성종 8.12.26.	죄 지은 자가 많아 용서하고,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온 것을 기념한 赦宥의 와중에 告身 還給 대상자를 아뢰도록 하다
	성종 12.6.22.	가뭄 대책 논의 중 職牒을 還給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성종이 자연 재해와 職牒 還給이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부정하다
	성종 12.6.23.	영의정 정창손·우의정 홍응 등이 재차 가뭄을 맞이하여 職牒 還給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該司로 하여금 명단을 작성하여 아뢰도록 하다
	성종 13.7.4.	가뭄으로 인한 대책 논의 중 徒流·付處 및 散官·職牒 追奪者の 명단을 보고하도록 하다
	성종 13.7.6.	領敦寧으로 하여금 徒流·付處 및 散官·職牒 追奪者の 명단을 보고하도록 하다
	성종 13.8.4.	가뭄을 맞이하여 告身を 還給하는 등 獄事에 원통한 마음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살인·불효 사건이 잇따르는 것을 염려하다
	성종 13.8.4.	가뭄을 맞이하여 告身を 還給하는 등 獄事에 원통한 마음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살인·불효 사건이 잇따르는 것을 염려하다
	성종 15.11.30.	천재지변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와중에 기존 방식대로 綱常·臧汚를 범한 죄인을 제외하고 告身を 돌려주도록 하다
	성종 16.5.30.	告身を 還給할 인원에 대해 논의 ; 임사홍·박효원 등 논란이 되는 인물을 주로 심사하다
벼락	세조 14.5.27.	환관 백충현이 벼락을 맞자, 하늘의 노여움이라 여겨 職牒·資級을 거둔 자 및 永不赦用한 자들을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다
	성종 24.10.27.	벼락이 치고 비가 오는 등 재해가 그치지 않자 영년령 이상 및 의정부로 하여금 徒流·付處 및 職牒을 거둔 자들 중 용서할 만한 자들을 의논하다
	성종 25.10.11.	작년과 마찬가지로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赦宥를 고려하면서 職牒 還給도 검토하다
	성종 21.7.2.	대궐 뜰에서 벼락이 내리치자 職牒을 거둔 朝士 중 綱常·臧汚를 제외하고 職牒을 돌려주고 赦用케 하다
장마	세종 16.8.10.	자연재해로 인해 徒罪 이하의 죄는 모두 용서하여 職牒을 還給토록 한 결과 근거 없이 還給 등을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치는 폐해가 있었음

2. 자연재해 告身 還給 관련 개별 기사

순번	날 짜
가뭄	태종 14.5.6.(4) ; 14.6.9.(??) ; 15.6.5.(??) ; 16.5.24.(48) / 세종 5.4.28.(??) ; 8.5.28.(68) ; 9.6.11.(18) ; 9.6.12.(27) ; 10.윤4.20.(??) ; 13.5.19.(16) ; 17.7.30.(36) ; 17.8.6.(13) ; 17.8.7.(68) ; 18.5.25.(19) ; 20.7.9.(19) ; 25.7.8.(80) ; 26.7.13.(106) ; 27.5.11.(100) ; 30.4.29.(10) ; 31.5.24.(70) ; 31.6.7.(26) / 성종 3.2.9.(60) ; 6.5.14.(70) ; 10.7.1.(64) ; 13.7.23.(45) ; 13.7.7.(107) ; 16.6.1.(106) ; 16.9.5.(??) ; 17.3.6.(112) ; 19.6.25.(??) ; 21.7.7.(689)
벼락	성종 17.3.6.(112) ; 21.7.7.(689) ; 25.10.17.(17)

장마	세종 16.7.23·4.(334) / 성종 3.5.24.(30) ; 7.6.18.(162) ; 24.7.12.(150) ; 24.10.29.(85)
병충해	태종 18.6.22.(??)
역병	성종 3.2.9.(60)
기상 이변	성종 15.12.1.(43) ; 15.12.16.(59) ; 25.10.17.(17)

〈부록 13〉 정치적 목적에 따른 太祖朝-成宗朝 告身 還給 관련 기사

1. 정치적 목적 告身 還給 관련 受教 기사

순번	날 짜	비 고
반역	성종 3.5.23.	이전에 亂逆에 관계되어 告身을 빼앗긴 인원의 還給을 논의하였는데, 신숙주가 이미 해당 인원들이 이전에 放免되었음을 이유로 가벼운 죄인과 失農한 책임이 있는 軍士 위주로 還給할 것을 청하여 따르다
공신	세조 1.12.27.	原從功臣인 경우 告身이 거둬진 상태이면 모두 돌려주도록 하다

2. 정치적 목적 告身 還給 관련 개별 기사

종류	날 짜
高麗 遺臣	태조 7.5.26.(??) ; 7.6.5.(2) / 태종 12.1.24.
癸酉 靖難	단종 1.10.16.(1) ; 1.11.22.(1) / 세조 5.1.18.(3) ; 5.5.7.(1) / 예종 1.3.19.(1) ; 1.3.20.(1) / 성종 2.2.3.(16) ; 2.3.24.(1) ; 3.2.14.(4)
공신	태종 5.9.30. ; 5.10.2.(1) ; 6.윤7.12 ~ 26.(1) / 세종 3.12.25.(3) ; 7.6.19.(1) / 성종 2.8.25.(1)
南怡 역모	예종 1.1.24.(1) ; 1.1.25.(1) ; 1.2.12.(1) / 성종 1.9.15.(2)
단종 복위	세조 12.7.17.(1) / 예종 1.2.14.(1) / 성종 2.2.3.(16)
明使 접대	세종 15.11.9.(1) / 문종 즉위.9.7.(1)
戊寅 定社	태종 16.6.26.(1) ; 16.7.25.(3)
외척	태종 8.12.2.(1) ; 9.2.17.(1) / 세종 1.2.19.(1) ; 4.1.26.(1) / 문종 1.7.22.(1) / 세조 3.2.6.(1)
趙思 義亂	태종 12.8.8.(1) ; 14.5.6.(4) / 세종 8.6.2.(10) ; 19.3.20.(1) ; 19.12.9.(2) / 세조 4.11.16.(1)

<부록 14>기타 太祖朝-成宗朝 告身 還給 관련 기사

1. 기타 告身 還給 관련 受教 기사

순번	날짜	비고
공신	성종 13.7.22.	유자광 등의 職牒을 돌려주는 문제를 두고 신하들과 의논하게 하였고,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공을 감안하여 還給할 뜻을 내비치다
科擧	태종 9.2.7.	과거 응시하기 위해 參上官이 제출한 告身을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돌려줘 학문 연마를 장려토록 함
군사	세종 16.9.25.	職牒을 거둔 인재들 중 외적 방어에 유용한 인재들이 있으니 이들의 職牒을 還給할 것을 우의정 최윤덕이 청하다
	성종 10.윤10.18.	건주여진에 대한 토벌작전 계획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 차원의 武臣에 대한 還給 등의 赦免 조치
	성종 11.1.4.	어진 정벌에 종사한 인원 중 職牒을回收당한 인원이 있다면 1품계를 더 하여 敍用토록 하다
	성종 13.윤8.5.	重罪로 告身이 거뒀던 이들 중 自願者에 한하여 평안도 등 변방 방어에 참여토록 하는 대책을 논의하다
	성종 23.5.15.	어진 정벌에 참여한 자들을 포상하는 과정에서 賊吏로 追奪당한 자의 告身을 還給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復戶·下賜로도 충분하다는 김승경의 의견에 성종이 동의하다
還給 기준 논의	세종 8.1.12.	세종 7.12.19.大明律 체제에 맞게 告身の 追奪 기준이 바뀐 것을 참작하여, 기준 이상으로 追奪한 경우에는 還給토록 하다
	세종 8.8.23.	직임을 받고 謝恩하기 전에 行公하고 죽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의 告身の 지급 문제 ; 대간에서 褫經하여 吏·兵曹에 도달하였으면 지급하고, 褫經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돌려주지 않게 함
	세종 17.8.7.	職牒 受取 현황을 보고할 때 死者는 제외하고 보고토록 하다
	세종 20.7.19.	劾問할 때 승복하지 않으면 職牒을 거두도록 하는데, 죄가 정해진 이후에도 差等的으로 거두지 않고 모두 거두는 문제가 있어 差等的으로 거둔 것 외에는 모두 還給토록 함
	세종 26.2.10.	私罪를 범해 職牒을 差等的으로 거둔 甲士의 경우, 세종 20.3.15.軍士에 대해 적용한 것과 같이 敍用하고, 還屬 요건도 더 엄격히 하다
	세종 30.6.9.	告身이 追奪된 후 죽은 사람의 告身을 死後에 還給하는 문제 및 개간된 땅을 묵은 땅으로 잘못 고한 경우 告身을 追奪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문종 1.11.11. ~ 13.	死者의 追奪된 告身 還給을 두고 논의 끝에, 死者도 赦免이 불가능한 죄를 제외하고는 還給기로 결정하다. 그에 따라 吏·兵曹에 死者의 追奪된 告身에 대해서도 심사하다.
	성종 1.6.27.	告身 法令의 변화로 褫經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거 追奪되었던 이들의 告身을 성종 1.4.14.제기된 문제를 검토하여 다시 還給하다
	성종 1.4.14.	告身法이 바뀌어 準하지 않은 告身은 거두도록 하였는데, 현실적인 문제점 및 혼란 우려·褫經에 따른 보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대사간 김수녕이 도로 돌려줄 것을 청하니 대신들과 의논하겠다고 하다
	성종 9.6.25.	私罪를 범해 罷職된 경우 2년이 지나면 敍用하지만, 告身이 追奪되면 敍用 年限이 없었는데, 告身을 收奪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敍用토록 하다
성종 12.1.5.	승정원·영돈녕 이상 신료들이 賊吏의 告身을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 논	

		의하였는데, 의견이 크게 둘로 나뉜다
	성종 12.1.11.	臧吏의 告身을 還給하는 문제에 대해 전혀 돌려주지 말기로 합의하다
	성종 13.윤8.15.	職牒이 거뒀진 자가 두 번 赴防하면 還給토록 하다
	성종 15.12.14.	논의 끝에 正妻 疏薄은 綱常罪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告身 還給 불가 사유에서 배제되다
	성종 15.12.9.	正妻 疏薄이 告身 還給의 배제 사유인 綱常罪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다
	성종 21.10.15.	散官·三年喪을 치른 자 및 牒紙를 거둔 자들의 이름을 재상들에게 보이고, 추천할 만한 자를 고르도록 하다
절차	태종 8.11.27.	죄인 중 용서할 만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 徒·流刑 외에 職牒 追奪된 자의 명단을 매월 초하루마다 기록하여 啓聞하게 함.
	세종 30.4.24.	죄인의 推覈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赦免되면 奸盜·風俗 관련 죄를 제외하고는 輕重을 따져 還給하도록 하다
	단종 즉위.윤9.13.	告身 還給 대상자에 대해 수양대군이 의견을 제시하자 대신들의 대상자들에 대해 논의하다
	세종 26.윤7.24.	범죄인의 職牒 追奪 후 吏·兵曹에 바로 보내지 않아 관리상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여, 收奪된 職牒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다
종친	성종 17.10.21.	전일 잔치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조의 이성사촌 및 정희왕후 및 두 대비의 동성·이성 육촌 이내 친족을 加資·代加하고, 告身이 削奪된 자는 도로 돌려주도록 하다

2. 기타 告身 還給 관련 개별 기사

순번	날짜
未詳	태조 6.6.20.(1) / 태종 6.4.1.(2) ; 6.7.19.(15) ; 8.2.14.(2) ; 8.8.4.(1) ; 9.1.18.(1) ; 9.12.28.(2) ; 10.5.14.(1) ; 11.4.7.(7) ; 12.2.21.(1) ; 12.3.24.(9) ; 12.5.28.(1) ; 12.7.21.(6) ; 12.10.29.(1) ; 13.4.10.(1) ; 13.4.17.(1) ; 13.5.10.(1) ; 13.7.3.(1) ; 13.12.8.(2) ; 14.4.24.(1) ; 15.1.12.(1) ; 16.6.10.(2) ; 16.10.1.(1) ; 17.8.26.(1) ; 17.9.2.(2) ; 17.9.26.(2) ; 18.6.18.(3) / 세종 1.11.25.(1) ; 2.9.29.(1) ; 2.12.15.(4) ; 4.2.20.(1) ; 4.10.27.(1) ; 4.11.3.(7) ; 5.7.19.(5) ; 6.6.1.(2) ; 6.6.18.(1) ; 7.1.14.(5) ; 7.6.28.(4) ; 7.7.3.(2) ; 7.8.20.(2) ; 7.10.24.(1) ; 8.1.21.(1) ; 8.4.15.(1) ; 8.7.9.(1) ; 9.3.22.(1) ; 9.3.28.(1) ; 9.5.4.(1) ; 9.10.24.(2) ; 9.11.8.(4) ; 10.4.24.(1) ; 10.6.13.(1) ; 11.1.4.(1) ; 11.2.3.(2) ; 11.7.21.(2) ; 12.4.13.(1) ; 12.윤12.1.(2) ; 13.1.12.(1) ; 13.10.3.(2) ; 13.11.17.(3) ; 13.12.14.(1) ; 13.12.26.(1) ; 13.3.10.(1) ; 14.1.13.(1) ; 14.3.14.(2) ; 15.1.29.(1) ; 15.11.7.(3) ; 15.5.16.(1) ; 15.8.13.(6) ; 16.8.9.(2) ; 16.8.30.(1) ; 17.8.3.(1) ; 17.8.5.(1) ; 19.10.5.(1) ; 19.7.27.(1) ; 20.3.7.(1) ; 20.3.18.(??) ; 20.6.26.(1) ; 20.8.9.(2) ; 20.10.6.(1) ; 21.1.3.(1) ; 21.1.17.(2) ; 21.7.9.(1) ; 22.10.15.(1) ; 21.11.7.(1) ; 22.3.5.(1) ; 23.10.10.(2) ; 23.2.1.(1) ; 23.2.5.(1) ; 23.2.28.(1) ; 25.5.5.(2) ; 25.5.7.(2) ; 25.5.12.(1) ; 26.5.9.(2) ; 26.6.21.(1) ; 26.10.6.(1) ; 27.2.12.(1) ; 30.7.23.(1) ; 30.9.1.(1) ; 30.11.28.(1) ; 32.윤1.5.(2) / 문종 즉위.4.5.(2) ; 즉위.7.3.(1) ; 즉위.8.22.(8) ; 1.2.5.(1) ; 1.3.4.(1) ; 1.3.6.(??) ; 1.4.7.(1) ; 1.4.12.(1) / 단종 즉위.11.4.(1) ; 즉위.11.21.(1) ; 1.10.19.(2) ; 2.1.25.(1) ; 2.2.28.(1) ; 2.3.3.(1) ; 2.3.13.(1) ; 3.5.18.(9) / 세조 2.2.6.(2) ; 2.12.3.(2) ; 3.6.24.(2) ; 3.10.3.(1) ; 3.10.26.(1) ;

	4.1.28.(1) ; 4.2.18.(1) ; 4.2.19.(1) ; 5.1.22.(3) ; 5.2.19.(1) ; 5.12.7.(1) ; 5.4.3.(1) ; 5.4.10.(2) ; 6.3.23.(3) ; 6.4.16.(2) ; 6.11.5.(2) ; 6.11.9.(2) ; 6.4.25.(1) ; 6.6.17.(6) ; 6.7.8.(1) ; 7.1.16.(2) ; 7.4.16.(1) ; 8.12.5.(1) ; 8.6.27.(1) ; 8.9.18.(4) ; ; 9.9.24.(5) ; 10.1.16.(3) ; 10.2.13.(2) ; 10.4.1.(1) ; 10.5.30.(1) ; 10.7.26.(1) ; 10.8.26.(??) ; 10.9.8.(3) ; 10.10.10.(48) ; 11.2.15.(6) ; 12.1.9.(1) ; 12.12.6.(11) ; 13.9.30.(2) ; 14.6.4.(1) ; 14.7.5.(10) / 예종 즉위.9.7.(3) ; 즉위.11.9.(12) ; 1.4.9.(4) ; 1.8.14.(1) ; 1.9.10.(1) ; 1.9.15.(1) ; 1.9.18.(1) ; 1.9.30.(2) ; 1.10.1.(13) / 성종 1.1.21.(9) ; 1.5.27.(1) ; 1.9.20.(1) ; 1.12.25.(1) ; 2.9.13.(1) ; 2.윤9.3.(1) ; 2.12.4.(1) ; 3.2.24.(2) ; 3.5.3.(2) ; 3.8.13.(1) ; 3.11.18.(1) ; 4.5.25.(3) ; 4.12.21.(1) ; 5.윤6.2.(6) ; 5.7.27.(2) ; 6.1.10.(1) ; 6.3.24.(16) ; 6.7.1.(1) ; 6.8.10.(2) ; 6.11.17.(1) ; 6.11.19.(1) ; 6.11.29.(1) ; 7.1.17.(25) ; 7.5.2.(1) ; 7.5.3.(3) ; 7.6.6.(1) ; 7.6.17.(28) ; 7.6.18.(6) ; 7.9.10.(1) ; 8.4.4.(1) ; 8.11.26.(1) ; 8.12.22.(1) ; 9.10.9.(1) ; 9.2.3.(1) ; 9.4.6.(1) ; 9.11.20.(1) ; 9.12.2.(1) ; 9.6.19.(16) ; 9.6.26.(36) ; 9.9.11.(1) ; 10.1.26.(75) ; 10.9.13.(1) ; 10.11.1.(3) ; 11.4.1.(1) ; 11.12.11.(1) ; 11.12.23.(1) ; 12.1.12.(50) ; 12.1.16.(??) ; 12.2.1.(2) ; 12.4.2.(6) ; 12.7.24.(3) ; 12.8.28.(5) ; 12.9.17.(3) ; 12.9.21.(1) ; 12.11.15.(6) ; 13.3.6.(2) ; 13.7.14.(1) ; 13.7.16.(6) ; 13.11.4.(1) ; 14.3.19.(23) ; 14.5.16.(1) ; 14.8.2.(5) ; 14.10.4.(1) ; 14.11.4.(1) ; 15.3.8.(1) ; 15.4.15.(1) ; 15.7.2.(6) ; 15.7.3.(3) ; 15.10.4.(1) ; 15.11.23.(9) ; 15.12.7.(1) ; 15.12.19.(1) ; 16.4.11.(3) ; 18.7.3.(1) ; 18.12.23.(4) ; 19.윤1.6.(2) ; 19.5.7.(1) ; 19.6.26.(4) ; 20.7.1.(2) ; 20.11.5.(2) ; 21.4.24.(10) ; 21.7.1.(2) ; 21.7.2.(1) ; 21.7.5.(1) ; 21.9.17.(33) ; 21.윤9.4.(9) ; 22.4.13.(1) ; 22.6.22.(16) ; 24.윤5.2.(1) ; 24.6.30.(54) ;
정무 판단	세종 19.7.27.(2) ; 20.3.21.(1) ; 21.4.29.(1) ; 24.12.24.(1) ; 29.1.3.(1) / 문종 즉위.9.22.(1) ; 1.1.10.(2) / 성종 1.3.18.(1) ; 6.1.28.(1) ; 8.8.21.(1) ; 10.12.20.(1)
정상 참작	세종 7.8.25.(1) ; 9.9.4.(1) ; 12.2.9.(1) ; 12.10.1.(1) ; 14.1.2.(1) ; 14.2.7.(1) ; 14.8.16.(1) ; 16.3.12.(1) ; 16.7.27.(1) ; 17.7.30.(1) ; 19.4.1.(1) ; 25.3.14.(2) / 단종 즉위.11.19.(1) ; 1.2.13.(1) ; 1.12.28.(1) ; 2.4.11.(1) ; 3.6.28.(1) ; 3.3.9.(1) / 세조 8.4.9.(1) / 성종 1.5.9.(1) ; 3.11.11.(1) ; 6.5.24.(2) ; 9.윤7.16.(40) ; 10.2.5.(1) ; 10.12.9.(2)
功勳 고려	세종 7.11.20.(3) ; 8.2.2.(1) ; 9.12.21.(1) ; 17.3.12.(1) ; 17.9.18.(1) ; 21.4.14.(1) / 성종 1.3.18.(1) ; 1.10.1.(1) ; 11.1.5.(2)
왕실 관련	태종 11.9.8.(1) ; 13.10.22.(1) / 세종 13.12.5.(1) ; 14.2.1.(2)
대신 예우	세종 21.11.4.(2) / 문종 1.2.2.(1)
死後 禮遇	세종 30.8.30.(1) ; 31.7.10.(1)
질병	세종 21.11.4.(2) / 성종 9.10.4.(1)
명 사신	성종 11.4.3.(1)
赦宥 이전	문종 1.1.25.(3)
축하	태조 2.5.3.(1)

Abstract

The Study on the Deprivation and Return of the Gosi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Lee, Seung Hyeon

Graduate School of Law / History of Korean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Gosin, certificates of appointment for the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ad been related to the process of punishing or forgiving officials by depriving or returning Gosin. When looking back to the Chinese-Tang dynasty, there were rules about depriving Gosin in 《Dang-ryulsoui(唐律疏議)》·《Dang-yukjeon(唐六典)》. In Ming Dynasty, [Munmukwan-beomsajoe(文武官犯私罪)] clause in the 《Daemyeongryul(大明律)》 had expressed clearly that Gosin of the guilty officials must be taken away, depending on their nature of crimes. This legal system continued to the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early Joseon's code. According to the record of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Joseon Dynasty compared the kinds of crime and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and deprived Gosin. Therefore, it is proper to consider

that depriving or returning Gosin as a disciplinary measure or amnesty for guilty officials.

Depriving Gosin was punishment for officials' various crimes or misconducts. Lawsuit about slavery, bribery, sin about the whole duty of man in Confucian society, killing by severe punishment, false accusation ; these were typical reasons of depriving Gosin. Despite the ban of 《Daemyeongryul》, officials who made mistakes from public services seldomly suffered deprivation. Vassals of merit, kindred of the king, military officers in the outer area, however, escaped from deprivation. Moreover, crimes before amnesty, husband of the female criminal were also subject to the exemption.

Periodic returning of the Gosin probably happened in early Joseon dynasty, as list of deprivation was regularly reported to the king. Although there were a few of exceptions, returning of Gosin might be generally enforced within 2 years, considering the 2-year-term of reappointment legalized in *Gyeong-gukdaejeon*. Returning of the Gosin by remission was held in celebration or funeral of the royal families. As it were an agrarian society, Joseon Dynasty often returned the Gosin in response to the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 monsoon, etc.

Both depriving and returning of the Gosin was discussed with king and his officials, and finally decided by the king. Dae-gan(臺諫), the official adviser of the kingdom, also argued against false depriving or returning of the Gosin. Dead officials who had been deprived Gosin in his lifetime, could get back them. On the other hand, the decedent could be taken his certificates after his death with every regard to his nature of a crime.

Even though the number of reports about depriving Gosin increased as time passes, occasional returning of the Gosin also caused lots of

beneficiaries. Tradition about calamity and tolerant punishment in confucianism made monarchs to give back guilty officials' Gosin. Some criticisms in those eras usually focused on disability of strict law enforcement due to the returning of Gosin. This shows that returning of Gosin was done under constant state of tension between political harmony and strict order of law.

**keywords : Gosin(告身), Deprivation, Return, Disciplinary Action, R
emission, Accessory Penalty, Penalty of Honor**

Student Number : 2015-22992